

「韓國個人資料保護法制因應 GDPR 施行之
調適」委託研究計畫
結案報告

委託單位：國家發展委員會

受託單位：達文西個資暨高科技法律事務所

中華民國 109 年 6 月

**「韓國個人資料保護法制因應 GDPR 施行之
調適」委託研究計畫
結案報告**

受委託單位：達文西個資暨高科技法律事務所
研究主持人：葉奇鑫
研究期程：中華民國 109 年 3 月至 109 年 6 月
研究經費：新臺幣 34 萬 8 千元

**國家發展委員會 委託研究
中華民國 109 年 6 月**

（本報告內容純係作者個人之觀點，不應引申為本機關之意見）

摘要

韓國政府為通過歐盟 GDPR 之適足性認定，於 2020 年 1 月由韓國國會通過新修正之「個人情報保護法」、「信用情報法」及「情報通信網法」，並於 2020 年 8 月 5 日正式施行。此次修法以「個人情報保護法」作為明定個人資料之具體判斷基準，並將個人情報保護委員會提升為中央行政機關，使其具有獨立監督個人資料色彩，藉此達到 GDPR 對於個資監管機關獨立性之要求，再參考 GDPR 假名化而引進「假名情報」的概念，特別的是無須當事人同意之「假名情報」得被運用於科學研究中，韓國各界認為此次修法將有助於促進新技術之開發，使韓國商業發展更加活絡；而「情報通信網法」及「信用情報法」均刪除與「個人情報保護法」相似或重複之規定，其中「個人情報保護法」中增訂「情報通信服務提供者處理個人情報」特別篇作為專章，「信用情報法」則同步引進假名情報的概念，使信用業者在處理個人資料上與「個人情報保護法」相互配合。由於本次修法整合了韓國過去對於個資保護過於混亂的現象，預期未來韓國對個資的保護更具有效性、統一性。鑒於我國現正積極申請通過歐盟 GDPR 適足性認定，有必要深入了解正在申請適足性認定之國家的作法，據此，國家發展委員會以韓國本次修正之「個人情報保護法」全文作為研析標的，將其翻譯為中文供未來我國修正個人資料保護法及後續與歐盟洽談適足性認定之參考。

Abstract

To obtain an GDPR adequacy decision from the European Union (EU),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adopted, in January 2020, amendment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the IT Networks Act), and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CIUPA), all taking force on 5 August 2020. This round of amendment clearly set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IPA.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IPC) is upgraded to an independent authority under the central government, one that is dedicated to the super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mpliance, thereby meeting the GDPR's requirement of "independent supervisory authority". Drawing reference from the GDPR, the concept of "pseudonymous information" is introduced, to the effect that pseudonymised information may be used for scientific research purposes without the information subject's consent. It is widely recognized in South Korea that such changes would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while also vitalising South Korea's commerce. Meanwhile, coherence of the three laws are improved. The amended IT Networks Act and CIUPA see the removal of provisions that are similar to or overlapping with the PIPA. The PIPA acquires a special chapter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b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The CIUPA is aligned with the PIPA on the use of pseudonymous information. Having integrated the formerly fragmented personal information legislation, this round of amendment is expected to enhance the efficacy and unification of South Kore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actice. Given that Taiwan is also engaging in GDPR adequacy negotiations with the EU, insights into measures taken by other countries going through the same process would be necessary. Based on such understanding, the National Development Council takes the amended PIPA of South Korea as a research subject, and provides full text Chinese translation as a reference for Taiwan's future amendments of personal data legislation and adequacy talks with the EU.

目錄

壹、評析韓國個人情報保護法之修法	1
一、前言	1
二、數據 3 法簡介	3
三、個人情報保護法提案理由暨內容	6
四、個人情報保護法修法重點項目	8
五、情報通信網法配合個人情報保護法之修法內容	21
六、信用情報法配合個人情報保護法之修法內容	22
七、未來展望	24
八、結論	25
貳、韓國個人情報保護法翻譯對照	26
第 1 章 總則	26
第 1 條（目的）	26
第 2 條（定義）	26
第 3 條（個人情報保護原則）	29
第 4 條（情報當事人的權利）	30
第 5 條（國家等之責務）	31
第 6 條（與其他法律之關係）	31
第 2 章 個人情報保護政策的樹立等	32
第 7 條（個人情報保護委員會）	32
第 7 條之 2（保護委員會的組成等）	33
第 7 條之 3（委員長）	34
第 7 條之 4（委員之任期）	35
第 7 條之 5（委員的身分保障）	35
第 7 條之 6（禁止兼職等）	35
第 7 條之 7（缺格事由）	36
第 7 條之 8（保護委員會的所管事務）	37
第 7 條之 9（保護委員會的審議・議決事項等）	38
第 7 條之 10（會議）	40
第 7 條之 11（委員的除斥・忌避・迴避）	40
第 7 條之 12（小委員會）	41
第 7 條之 13（事務處）	42
第 7 條之 14（運作等）	42
第 8 條 刪除	42
第 8 條之 2（個人情報侵害要因評價）	42

第 9 條（基本計畫）	43
第 10 條（施行計畫）	44
第 11 條（資料提出要求等）	44
第 12 條（個人情報保護指引）	45
第 13 條（自律約束的促進暨支援）	45
第 14 條（國際合作）	46
第 3 章 個人情報的處理	47
第 1 節 個人情報的蒐集、利用、提供等	47
第 15 條（個人情報的蒐集・利用）	47
第 16 條（個人情報的蒐集限制）	48
第 17 條（個人情報的提供）	49
第 18 條（限制個人情報之目的外利用・提供）	50
第 19 條（限制個人情報接收者之利用・提供）	53
第 20 條（告知自情報當事人以外蒐集個人情報之蒐集出處等）	54
第 21 條（個人情報之銷毀）	55
第 22 條（同意取得之辦法）	56
第 2 節 個人情報處理限制	58
第 23 條（敏感情報的處理限制）	58
第 24 條（限制固有識別情報之處理）	58
第 24 條之 2（住民登錄號碼處理之限制）	60
第 25 條（限制影像情報處理機器之設置・運作）	61
第 26 條（於委託處理個人情報業務之限制）	63
第 27 條（限制營業讓渡等個人情報之移轉）	65
第 28 條（監督個人情報經辦者）	66
第 3 節 關於假名情報處理之特別規定	67
第 28 條之 2（假名情報的處理等）	67
第 28 條之 3（假名情報的結合限制）	67
第 28 條之 4（對於假名情報的安全措施義務等）	68
第 28 條之 5（處理假名情報時之禁止義務等）	68
第 28 條之 6（對處理假名情報課賦課徵金等）	68
第 28 條之 7（適用範圍）	69
第 4 章 個人情報的安全管理	70
第 29 條（安全措施義務）	70
第 30 條（個人情報處理方針之樹立暨公開）	70

第 31 條（個人情報保護責任者之指定）	71
第 32 條（個人情報檔案之登錄暨公開）	73
第 32 條之 2（個人情報保護認證）	75
第 33 條（個人情報影響評價）	76
第 34 條（個人情報洩漏通知等）	78
第 34 條之 2（課徵金等）	79
第 5 章 情報當事人的權利保障	81
第 35 條（個人情報之閱覽）	81
第 36 條（個人情報之更正・刪除）	82
第 37 條（個人情報之停止處理等）	83
第 38 條（權利行使的方法與程序）	85
第 39 條（損害賠償責任）	86
第 39 條之 2（法定損害賠償的請求）	87
第 6 章 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之處理個人情報等特例	88
第 39 條之 3（對於同意個人情報的蒐集・利用等特例）	88
第 39 條之 4（個人情報洩漏等之通知・申告相關特例）	90
第 39 條之 5（個人情報之保護措施相關特例）	91
第 39 條之 6（個人情報之銷毀相關特例）	91
第 39 條之 7（使用者之權利等相關特例）	91
第 39 條之 8（個人情報利用內容之通知）	92
第 39 條之 9（損害賠償的保障）	92
第 39 條之 10（被洩漏之個人情報的刪除・阻斷）	93
第 39 條之 11（國內代理人之指定）	93
第 39 條之 12（國外移轉個人情報的保護）	94
第 39 條之 13（互惠主義）	95
第 39 條之 14（對於放送事業者等之特例）	96
第 39 條之 15（課徵金之課徵等相關特例）	96
第 7 章 個人情報紛爭調停委員會	100
第 40 條（程序暨組成）	100
第 41 條（委員的身分保障）	102
第 42 條（委員之除斥・忌避・迴避）	102
第 43 條（調停之聲請等）	103
第 44 條（處理時間）	103

第 45 條（資料的請求等）	104
第 46 條（調停前協議勸告）	104
第 47 條（紛爭之調停）	104
第 48 條（拒絕調停與中止）	105
第 49 條（集體紛爭調停）	105
第 50 條（調停程序等）	107
第 8 章 個人情報團體訴訟	108
第 51 條（團體訴訟的對象等）	108
第 52 條（專屬管轄）	109
第 53 條（訴訟代理人之選任）	109
第 54 條（訴訟許可聲請）	109
第 55 條（訴訟許可條件等）	110
第 56 條（確定判決的效力）	110
第 57 條（「民事訴訟法」之適用等）	111
第 9 章 補則	112
第 58 條（部分適用除外）	112
第 58 條之 2（適用除外）	113
第 59 條（禁止行為）	113
第 60 條（秘密維持等）	114
第 61 條（意見提出暨改善勸告）	114
第 62 條（侵害事實之申告等）	115
第 63 條（資料提出要求暨稽查）	116
第 64 條（糾正措施等）	118
第 65 條（告發暨懲戒勸告）	119
第 66 條（結果之公布）	120
第 67 條（年度報告）	120
第 68 條（權限之委任・委託）	121
第 69 條（罰則適用時之公務員擬制）	122
第 10 章 罰則	123
第 70 條（罰則）	123
第 71 條（罰則）	123
第 72 條（罰則）	125
第 73 條（罰則）	126
第 74 條（兩罰規定）	126
第 74 條之 2（沒收・追徵等）	127
第 75 條（過怠料）	127

第 76 條（適用過怠料相關規定之特例）	132
附則 133	
第 1 條（施行日）	133
第 2 條（有關委員任期過渡措施）	133
第 3 條（因權能調整而有關所管事務等過渡措施）	133
第 4 條（有關保護委員會過渡措施）	134
第 5 條（有關個人情報保護之管理體系及認證機關等過渡措施）	134
第 6 條（有關權限委任・委託過渡措施）	135
第 7 條（有關罰則暨過怠料過渡措施）	135
第 8 條（有關課賦課徵金過渡措施）	136
第 9 條（其他法律之修正）	136
第 10 條（與其他法律之關係）	137
參、韓國個人情報保護法之新法及修正重點對照表	138
附表	199
附錄：參考文獻	201

壹、評析韓國個人情報保護法之修法

一、前言

韓國向來對數據資料的應用及保護上，係以包含「個人情報保護法」¹、「情報通信網法」²、「信用情報法」³等，統稱為「數據3法」⁴之三部法典作為應用數據資料之主要遵循指引；然而第4次工業革命的到來，使韓國國內各大團體開始意識到過去的「數據3法」已不足以保護個人資料⁵及促進數據之利用，要求修法完善個人資料保護的聲浪逐漸湧現。

2018年5月25日歐盟（European Union）施行一般資料保護規則（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數據經濟儼然成為世界各國貿易的一環，依GDPR第45條規定，若第三國、第三國內領域或特定部門，或國際組織等取得歐盟個人資料保護委員會（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EDPB）認定個資保護已達與歐盟之保護程度實質相當時，即可自由傳輸歐洲經濟區之個資至該取得適足性認定之第三國或國際組織。因此為求提升韓國在全球的貿易地位及競爭力，韓國政府將通過GDPR適足性認定此一任務視為當務之急⁶。

在韓國政府積極推動下，韓國國會於2020年1月9日通過「數據3法」之修正案，此次修法將「個人情報保護法」的內容作了大幅

¹ 原文為「개인정보보호법」，漢字為「個人情報保護法」，即個人資料保護法。

² 此為「情報通信網利用促進暨情報保護等相關法律」（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之簡稱，原文為「정보통신망법」，漢字為「情報通信網法」。

³ 此為「信用情報之利用暨保護相關法律」（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之簡稱，原文為「신용정보법」，漢字為「信用情報法」。

⁴ 原文為「데이터 3법」，「데이터」是外來語即data，本報告譯為「數據3法」。

⁵ 中文的個人資料若以韓文漢字直譯為「個人情報」，惟因我國主要使用個人資料一詞，因此本報告在撰擬時，若屬研究敘述之文句則使用個人資料，若主要引用韓國法律條文時，為維持漢字語的原意，將使用個人情報以示區別。

⁶ 歐盟GDPR於2018年施行後，時任韓國放送通信委員長李孝成（音譯）即提出修法構想以促進通過GDPR之適足性認定，詳參<https://www.yna.co.kr/view/AKR20180615116600017>（最後瀏覽日2020.06.08）。

調整，使其成為「數據3法」中就個人資料保護最重要之法規範，「情報通信網法」及「信用情報法」兩部法典則配合「個人情報保護法」而進行調整，主要修法方向係刪除與個人情報保護法重複之條文，並保留與其相異或特別之規定⁷。

韓國個人情報保護法之修正條文於2020年2月4日經大統領令⁸公布，並訂於2020年8月5日生效，主要內容將個人情報保護委員會⁹提升為中央行政機關，使其具有獨立監督個人資料色彩，藉此達到GDPR對於個資監管機關獨立性之要求，並參考GDPR假名化而引進假名情報¹⁰的概念，使個人情報處理者¹¹在兼顧資料運用與維護個人資料安全前提下，允許其得利用個人資料進行統計編制、科學研究或保存公益紀錄等，使個人資料的保護得以更加落實，而韓國政府亦堅信本次「數據3法」修正案在施行後，將奠定第4次工業革命發展之基石¹²。

鑒於我國此刻正辦理向歐盟申請GDPR適足性認定事宜，同時考量我國部分政府機關與民間團體亦有GDPR之適用，均有需要進一步瞭解已取得或正在申請適足性認定之國家的作法，是本報告將以韓國本次修正之個人情報保護法為核心，分析本次修法重點並研析新舊法之差異，以作為未來我國修正個人資料保護法及後續與歐盟洽談適足性認定之參考。

⁷ 例如「信用情報法」涉及金融交易，則雖屬信用情報卻明顯與個人資料保護無關之規定則會被保留於「信用情報法」中。

⁸ 韓國的總統稱為大統領（대통령），每次修法後由大統領頒布大統領令（대통령령）公布法律，開始施行日通常會於大統領令公布六個月後。韓國的大統領令相當於我國的總統令，新的法律命令由大統領以大統領令公布施行之。

⁹ 原文為「개인정보 보호위원회」，漢字為「個人情報保護委員會」。

¹⁰ 原文為「가명정보」，類似GDPR的假名化。

¹¹ 原文為「개인정보 처리자」。

¹² 參韓國行政安全部官方網頁2020年1月21日新聞稿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374（最後瀏覽日2020.06.08）。

二、數據 3 法簡介

(一) 個人情報保護法

「個人情報保護法」的前身為「公共機關之個人情報保護相關法¹³」，係為因應各種電腦犯罪對人民隱私的侵害加劇，於 1995 年 1 月 8 日開始施行；爾後該法被廢止並重新於 2011 年 3 月 29 日通過「個人情報保護法」，同年 9 月 30 日施行，將對個人資料的保護重點放在未經資料當事人同意時，不得將其個人資料對第三方提供，如有違反則科處 5 年以下有期徒刑，及 5 千萬韓圓以下之罰金。

然而新法律的施行初期難以普及化，縱使韓國政府倡導一年多，仍無法輕易改變大眾對隱私的保護意識，如社區家庭理髮之客戶名簿屬「個人情報保護法」的適用對象，卻難以讓家庭理髮經營者知悉該客戶名簿必須被確實保管避免個人資料外流，抑或是社區炸雞店客人訂購炸雞時，老闆未遵循「個人情報保護法」之規定，逕自取得客戶的住民登錄號碼隨意使用等，此類行為都因「個人情報保護法」開始施行後被視為違法行為，但因該等行為普遍存在，欲對渠等予以處罰變得困難¹⁴。

新法施行前之「個人情報保護法」，其主管機關為行政安全部¹⁵，雖主要執行個人資料之保護等相關業務，但實際上卻因為個人資料之保護相關規定不僅限於「個人情報保護法」，於「情報通信網法」及「信用情報法」兩部法典亦有重複規定，故在實際操作個人資料保護上容易衍伸主管機關為何及法律適用等問題，使保護個人資料無法明確及完整。

鑒於現行「數據 3 法」對個人資料保護過於模糊，並因應歐盟

¹³ 原文為「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¹⁴ 參見韓國情報通信技術協會(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於 2013 年 2 月 5 日發表之 ICT 시사용어 30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87055&cid=59277&categoryId=59280> (最後瀏覽日 2020.06.08)。

¹⁵ 原文為「행정안전부」，漢字為「行政安全部」，相當於我國的內政部。

GDPR 的施行，韓國新修正之個人情報保護法將於 2020 年 8 月 5 日正式上路，新的「個人情報保護法」整合過去「數據 3 法」過於混亂的保護系統，推行「一元化」保護原則，此次大變革將使韓國個人資料保護進入新的紀元¹⁶，未來值得持續關注。

（二） 情報通信網法

「情報通信網法」前身為「電算網普及擴張與利用促進相關法律」¹⁷，此係 1986 年間韓國政府開始發展電信網路技術，為了推動電信網路以及活用數據資料，特別制定此法典；然而當時之立法尚未有對於個人資料的保護意識，僅簡略於該法第 25 條規定「任何人以電算進行處理、保管、傳送均不得侵害或洩漏他人之秘密。」¹⁸，除此之外則未見對個人資料之保護有更細節性之規範。

爾後，電信網路在韓國蓬勃發展，逐漸重視使用者個人資料之保護，1999 年 5 月 4 日韓國國會正式通過修正案並更名，該次修法引進資料保護之精神，包含個人情報之蒐集暨取得¹⁹、利用暨提供之限制、使用者管理等均明定於條文中；2001 年 1 月 16 日修法增設紛爭調停機制，當使用者之個人資料被侵害時得藉由「個人情報紛爭調停委員會」²⁰作為中間人予以調停，使情報通信網法的核心不再僅限於電信網路的技術開發，更希望藉由相關的保護措施使利用電信網路者不再有資料被洩漏等資安疑慮，可安全地使用電信網路²¹。

¹⁶ 相關新聞詳參 <https://m.etnews.com/20200109000353>（最後瀏覽日 2020.06.08）。

¹⁷ 原文為「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¹⁸ 舊情報通信網法第 25 條原文「누구든지 전산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¹⁹ 原文為「개인정보의 수집 및 취급」，此為法條用語，本報告譯為個人情報之蒐集暨取得。

²⁰ 原文為「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漢字為「個人情報紛爭調停委員會」。

²¹ 立法目的規定於情報通信網法第 1 條「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亦即「本法以促進情報通信網之利用及保護情報通信網使用者之個人資料，創設健全且安全使用情報通信網之環境，藉此提升國民生活、增進公共福利為目的。」。

為配合「個人情報保護法」修正，「情報通信網法」於2020年2月4日由大統領令公布修正案，並於同年8月5日起施行，其仍持續貫徹建構完善的電信網路使用環境以保護使用者個人資料之立法目的。

（三）信用情報法

「信用情報法」係韓國國會於1995年1月5日通過，依大統領令定於1995年7月6日施行之法律，如同該法之名稱，其立法目的旨在培養得有效利用信用情報並建構系統性之信用業者²²，使隱私秘密等得受到健全的保護，防止信用情報被誤用、濫用，並建立完善的信用秩序²³。是以，信用情報法在立法初期即將信用情報之保護納入法典中以條文明文化。

韓國的「信用情報」自字面解釋似可看出該資料之些微端倪，其主要內涵係用於金融交易時，得判斷他方信用評價之必要資訊，例如信用評分、交易能力、交易內容等，與我國的聯徵信用往來紀錄相似，常被運用於商業交易中。為配合「個人情報保護法」修正，「信用情報法」亦於2020年2月4日由大統領令公布修正案，並於同年8月5日起施行，整部法典就信用情報之蒐集、調查、處理、流通、利用、管理等均有詳盡的規範；此外，在信用情報當事人的權利保障上，包含公告、取得同意、閱覽權、更正權、刪除權等亦定有明文。因此「信用情報法」就信用情報的使用上，其保護相較於「情報通信網法」更為完善。

²² 信用情報業者依信用情報法第4條所規定，泛指任何與信用情報有關之事業，例如以追蹤信用業者（신용조회업），或是調查信用業者（신용조사업）、收取債權之業者（채권추심업）等，不限於金融業者，但各該業者都必須取得金融委員會（금융위원회）之許可。

²³ 信用情報法第1條「이 법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中譯為「本法旨在有效利用與系統性管理信用情報以健全並培養信用情報事業，對被誤用·濫用之隱私等為適度性的保護，以確立健全之信用秩序做出貢獻。」。

三、個人情報保護法提案理由暨內容

(一) 提案理由²⁴

第4次工業革命的開展，雖帶來了人工智慧(AI)、雲端(Cloud)、物聯網(IoT)等新技術，使數據的運用更為靈活，然而舊法政策係以個人情報保護委員會(以下稱保護委員會)、行政安全部及放送通信委員會²⁵等三個部門為個人情報的保護之主要監督機關，而適用法律除了「個人情報保護法」外，亦有「情報通信網法」、「信用情報法」等相關法律，是以，在數個監督機關及各別適用法律之情形下，難以明確個人情報的概念，個人情報之保護規範亦過於分散。

為此，本次修法係期望透過修補現行法之缺失，對數據應用建立對策及基準，使數據資料得以活用致作為開發技術、商品、服務之相關產業亦得利用假名情報進行科學研究、統計編制、保存公益紀錄等目的，並藉由對個人情報處理者賦予各種義務及引進違反義務時之「課徵金」²⁶處分等強化個人情報處理者之責任，使個人情報概念得以更明確，個人情報之保護亦得以制度化。

在修法提案中，保護委員會將作為個人情報保護之唯一監督機關，過去被視為相似或重複的法律將透過新修正之個人情報保護法予以「一元化」，不僅明確個人情報的概念，更可提升相關產業的競爭力。

(二) 修法重點

根據行政安全委員會²⁷提出之議案內容，本次修法有四個主要

²⁴ 詳參韓國行政安全委員會所提之議案全文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Y9A1T1D2G5C1D8U1C3A3N5L7A6C1，頁2(最後瀏覽日 2020.06.05)。

²⁵ 原文為「방송통신위원회」，漢字為「放送通信委員會」，相當於我國的國家通訊傳播委員會。

²⁶ 「과징금」漢字為「課徵金」，即違反行政法上一定義務而被課以之費用，相當於我國的罰鍰，若屬本報告敘述之文句使用罰鍰。

²⁷ 韓國行政安全會是韓國國會的委員會組織，由國會議員組成，與我國立法院內政委員會相似，主要負責監督韓國行政安全部、人事革新處、中央選舉管理委員會、地方自治

重點，茲說明如下²⁸：

1. 明確個人情報概念與指定專門機關連結²⁹假名情報

本次修法明確區分個人情報、假名情報、匿名情報等，使個人資料之概念更具體；此外，為了使各個人情報處理者³⁰所保有之假名情報能充分的運用在統計編制、科學研究及保存公益紀錄等特別領域上，特別增訂由大統領指定之專門機關得將各個人情報處理者所保有之假名情報予以連結，使各該領域之發展仍可透過連結假名情報進行數據分析，不至於因本次修法而對特定領域造成衝擊。

2. 假名情報處理紀錄與違反之罰則

設置安全維護措施以編制及保管處理假名情報時之相關紀錄，並嚴格禁止可得辨別特定個人之行為，當違反本法有關假名情報之相關規定時，不僅有刑事處罰，亦有裁處行政罰鍰³¹等相關罰則。

3. 保護委員會中央行政機關化

將保護委員會之位階提升為直接隸屬於國務總理³²之中央行政機關，另將現行法中原分別由行政安全部及放送通信委員會所職司之個人情報保護權責移轉至保護委員會，使其成為個人資料保護之總體負責機關，以強化個人資料之保護。

團體等組織。

²⁸ 同前註 24，頁 4-5。

²⁹ 原文使用的文字應翻為「結合」較為恰當，惟本報告敘述中使用「連結」一詞以便於閱讀。

³⁰ 根據個人情報保護法第 2 條第 2 款就處理的定義為「指個人情報的蒐集、產生、連結、連動、紀錄、儲存、保留、加工、編輯、檢索、輸出、更正、回復、利用、提供、公開、銷毀，及其他相似行為」。

³¹ 條文用字為「課徵金」，詳見註 26，本報告敘述使用「罰鍰」一詞以便於閱讀。

³² 韓國國務總理相當於我國的行政院長，負責統籌內閣閣員的工作，並執行總統的決策。

4. 與其他法之關係

除有關向國外移轉使用者情報時之保護措施、向國外再移轉時、國內代理人、損害保險等與新修正之個人情報保護法有相異規定或情報通信網法中有特別規定外，情報通信網法中與個人情報保護有關之規定均予以刪除。

(三) 少數意見³³

本次修法雖被視為得為韓國數據資料產業帶來新的發展，然而本法案在修正通過前仍有部分少數意見，尤以假名情報之應用範圍上，少數意見認為將「統計編制、研究、保存公益紀錄等」作為得使用假名情報進行資料處理，此概念仍過於模糊，應將「此統計編制包含市場調查等具商業性目的、研究亦包含商業性研究等」於法律條文中明定，以避免適用上混亂。

另一少數意見則認為未經情報當事人同意，而因特種目的使用假名情報之情形仍可能會使情報當事人受到侵害，是以，持續追蹤該個人資料被保護與應用之狀況是極為必要的。

四、個人情報保護法修法重點項目

(一) 個人情報保護委員會

1. 舊法概述

依新法施行前之個人情報保護法第 7 條規定，個人情報保護委員會由 15 名委員組成，為直接隸屬於大統領之委員會³⁴，各委員均具政務官身分，委員長由大統領自不具公務員中之委員任命之³⁵，委員會依其權限獨立執行職務³⁶。

³³ 同註 24，頁 6。

³⁴ 舊個人情報保護法第 7 條第 2 項「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 명, 상임위원 1 명을 포함한 1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³⁵ 舊個人情報保護法第 7 條第 3 項「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其中「위촉」的漢字為「委囑」，即將一定的事務託付他人之意，

保護委員會主要職責為審議或議決與個人資料保護有關之事項，該等受審議或議決事項被規定在第 8 條³⁷，包含審核個人情報侵害事項、個人情報保護相關政策及法令等改善、公共機關間關於處理個人情報之調停、有關個人情報保護法律之分析及運用、個人情報之利用或提供等相關事項、影響評估結果、提出意見、勸告設置措施、結果發布、編制年度報告書及提出、其他依大統領令定之事項等。因此，依現行法就保護委員會的性質主要係審議或議決與個人情報保護有關之事項，縱本法對違反行為有刑事罰則之規定，該裁處權限仍非保護委員會之職責範圍。

2. 增修內容

本法在修正後，保護委員會除了原有對個人情報之保護相關事項有審議或議決功能外，更多了調查及裁處行政罰等權限，其中最受關注的是該保護委員會本身的機關地位，本次修法將保護委員會變更為中央行政機關，直接隸屬於國務總理，負責獨立執行個人情報保護之相關事務³⁸，由 9 名委員組成，其中委員長及副委員長為常任委員，具有政務官身分³⁹。

以下將概述本次增修條文中，有關保護委員會組織、權限、職責等內容：

(1) 委員

與我國委任相似，本報告於敘述時為貼近我國用語，故使用「任命」一詞，若係翻譯韓國法律條文或引用條文時，為維持漢字語的原意，將使用「委囑」以示區別。

³⁶ 舊個人情報保護法第 7 條第 1 項「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³⁷ 新修正之個人情報保護法已將第 8 條全部條文刪除。

³⁸ 詳參新個人情報保護法第 7 條第 1 項「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³⁹ 詳參新個人情報保護法第 7 條之 2 第 1 項「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 명(위원장 1 명, 부위원장 1 명)을 포함한 9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本次修法將過去有關保護委員會之部分條文刪除⁴⁰，新增第 7 條之 2 至第 7 條之 14，其中第 7 條之 2 至第 7 條之 7 主要係就保護委員會的組成及委員身分適格與否、任期等為相關規定，其中第 7 條之 5 透過法律明文，保障委員身分不得任意免職⁴¹並賦與各委員有獨立執行職務之權⁴²。

(2) 保護委員會職責

至於保護委員會的所管事務則透過第 7 條之 8 為例示規定，除擴大保護委員會所管事務外，亦以授權立法的方式將與保護委員會相關事務空白授權給其他法令規定，以此種方式使個人資料保護制度得以更完善，主要內容如下：

- i. 有關改善個人情報保護法令之事項⁴³；
- ii. 有關樹立・⁴⁴執行個人情報保護政策・制度・計畫之事項⁴⁵；
- iii. 有關對情報當事人的權利侵害調查及其處分之事項⁴⁶；
- iv. 有關個人情報處理之陳情處理・權利救濟及個人情報相

⁴⁰ 如舊法第 7 條第 3 項以下均刪除、第 8 條刪除。

⁴¹ 詳參新個人情報保護法第 7 條之 5 第 1 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장기 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의7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⁴² 詳參新個人情報保護法第 7 條之 5 第 2 項「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⁴³ 詳參新個人情報保護法第 7 條之 8 第 1 款「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⁴⁴ 韓文寫作與臺灣相同，有直書與橫書兩種方式，現今多以橫書為主（包含檢定或國家作文考試），而直書與橫書在標點符號的應用有差別，橫書時已由逗號取代頓號，並使用間隔號以區別逗號，相當於中文「或」的概念，本報告在翻譯本法時將保留原文的樣貌，維持間隔號的使用。

⁴⁵ 詳參新個人情報保護法第 7 條之 8 第 2 款「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계획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⁴⁶ 詳參新個人情報保護法第 7 條之 8 第 3 款「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關之紛爭調停⁴⁷；

v. 為保護個人情報而與國際機構或國外個人情報保護機構交流・合作⁴⁸；

vi. 調查・研究，教育及宣傳與個人情報保護相關之法令・政策・制度・實態⁴⁹等相關事項⁵⁰；

vii. 對有關個人情報保護技術開發之支援⁵¹・推廣暨專門人才養成之相關事項⁵²；

viii. 依本法及其他法令所定屬保護委員會事務之事項⁵³。

(3) 保護委員會之權能

另同法第7條之9亦就保護委員會之審議及議決事項為例示規範，除現行法已明文規定之得審議及議決事項外，更多了行政裁處之權能，使保護委員會之決議不再如同過去僅有勸告改善的功能，而多了行政罰鍰的裁處權，似可藉此提升一定之威嚇效果。

(4) 設置小委員會

第7條之12增訂小委員會的設置，由3名委員組成，針對個人資料受侵害程度較輕微或反覆可能發生之事項等，明文規定得以小委員會予以審議或決議，該決議視為保護委員會之

⁴⁷ 詳參新個人情報保護法第7條之8第4款「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⁴⁸ 詳參新個人情報保護法第7條之8第5款「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협력」。

⁴⁹ 「실태」的漢字為「實態」，即實際狀態之意。

⁵⁰ 詳參新個人情報保護法第7條之8第6款「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정책・제도・실태 등의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⁵¹ 「지원」的漢字為「支援」，除了支持的意思外，包含提供幫助，以下同。

⁵² 詳參新個人情報保護法參第7條之8第7款「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⁵³ 詳參新個人情報保護法第7條之8第8款「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決議，使個人資料保護得更有效執行，避免保護委員會之無法立即召開且審議事項過於繁瑣。

(5) 其他規定

本次修法除前揭相關職責或權能，亦將過去屬行政安全部所管事項移至保護委員會，如保護委員會得對個人情報處理者或相關機關、團體等實施管理水準暨實態掌握之調查，以促進個人資料保護政策或成果評價⁵⁴；另過去由行政安全部訂定之保護指引則移轉為保護委員會負責，個人情報處理者得遵守該指引以降低個人情報受侵害風險⁵⁵；至於過去由行政安全部提供保護個人資料之教育或推廣等⁵⁶，亦一併於修正新法中改由保護委員會執行。

(二) 提出個人情報之判斷基準⁵⁷

新法施行前對於個人資料係以「某一情報雖無法特定個人，但是可以透過結合其他情報輕易辨識特定個人之情報」作為基準⁵⁸，然而卻被詬病條文內所謂「結合其他情報輕易辨識」之範圍無法界定，適用法律將變得困難；因此本次修法於第 2 條第 1 款以「獲得其他情報的可能性」⁵⁹作為個人資料之區分基準，使企業或相似機關在處理個人資料時有更明確的基準可循。

⁵⁴ 詳參新個人情報保護法第 11 條，本次新法修正第 2 項條文，主要係賦與保護委員會調查權。

⁵⁵ 詳參新個人情報保護法第 12 條，本次新法修正第 1 項條文，主要係將行政安全部變更為保護委員會。

⁵⁶ 詳參新個人情報保護法第 13 條。

⁵⁷ 韓國網際網路振興院月刊，KISA REPORT 2020 VOL.2, 데이터 3 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전망, 頁 16。

⁵⁸ 舊個人情報保護法第 2 條第 1 款「"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中譯為「與自然人有關之姓名、住民登錄號碼，及藉由影像而可得辨識個人之情報（包含某一情報雖無法特定個人，但是可以透過結合其他情報輕易辨識特定個人之情報）」，可見此個人情報的定義極為模糊。

⁵⁹ 原文為「정보의 입수 가능성」，直譯為「情報到手的可能性」，亦即取得情報的困難度。

至於「匿名情報」此一詞彙雖然沒有出現在新修正之個人情報保護法中，但是根據第 58 條之 2「以合理之時間・費用・技術予以評估，當使用其他情報也無法識別個人之情報，即不適用本法。」⁶⁰所定，此條文即帶有「匿名情報」之色彩，可資為辨別處理何種資料得不受個人情報保護法之拘束。

（三） 假名情報的制度化

1. 假名情報的概念

新法第 2 條第 1 款第 3 目，內容為「屬前揭 1、2 目之個人情報並依本條 1 之 2 款進行假名處理⁶¹，且不使用・結合其他供還原識別之額外資訊，即不再能夠辨識特定個人之情報（以下稱假名情報）⁶²」，其中前揭 1、2 目係以傳統個人情報為主要內容，如姓名、住民登錄證號碼、可得辨識特定個人之其他情報等。

由於第 2 條第 1 款係個人情報的定義，而假名情報規定在該款之第 3 目，因此我們可以從條文上的編排及條文的文字推知韓國的假名情報係以歐盟 GDPR 的假名資料(pseudonymous data) 作為參考，亦即當傳統的個人資料進行假名化(pseudonymisation)後，其仍屬個人資料，而有被保護之必要。

2. 假名處理

假名處理規定於第 2 條第 1 之 2 款「假名處理：指藉由除去部分個人情報，或取代個人情報之一部、全部等方法，在沒有其他額外情報之情形下，就無法識別特定個人而為之情報處

⁶⁰ 詳參新個人情報保護法第 58 條之 2「이 법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⁶¹ 原文為「가명처리」。

⁶² 詳參新個人情報保護法第 2 條第 1 款第 3 目「가목 또는 나목을 제 1 호의 2 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理」⁶³。韓國行政安全部亦透過例示⁶⁴ 說明何謂正確的假名處理，以及其與匿名處理的差異⁶⁵：

(1) 原始情報

개인(원본)정보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직장전화	자택전화	주소	직업	가족	예금 평균잔액	대출액
홍길남	67년 1월 3일	010-9999-3333	055-747-0088	055-2345-6789	경남 창원시 마산구 합포동 123	국회의원	배우자 아들 1 딸 1	4,567,900원	45,896,789원

本例示提供之原始情報由左而右包含【姓名、出生年月日、手機號碼、公司電話、住家電話、地址、職業、家庭成員、儲蓄平均餘額、貸款總額】等資訊，可清楚辨識此情報所代表的特定個人為洪吉南（音譯）、出生年月日為 1967 年 1 月 3 日、手機號碼為 010-9999-3333、公司電話為 055-747-0088、住家電話為 055-2345-6789、地址為慶尚南道昌原市馬山區合浦洞 123 號、職業為國會議員、家庭成員有配偶、兒子 1 名、女兒 1 名、儲蓄平均餘額為 456 萬 7,900 元整、貸款總額為 4 千 589 萬 6,789 元整。

(2) 錯誤的假名處理

(잘못된) 가명정보 예시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직장전화	자택전화	주소	직업	가족	예금 평균잔액	대출액
- * 삭제	- * 삭제	ajeijkc93 * 암호화	- * 삭제	- * 삭제	경남 창원시 마산구 * 범주화	국회의원	배우자 아들 1 딸 1	4,567,900원	45,896,789원

※ 이름, 생년월일 등을 삭제하고 핸드폰 번호를 암호화하였으나, '창원시 마산구에 주소를 둔 국회의원'이라는 극소수 사람에 관한 정보로 개인 식별 가능

本例示中刪除了【姓名、出生年月日、公司電話、住家電話】等資訊、手機號碼編碼加密，並將地址部分進行範圍化，再藉由剩餘的資訊我們可得出之情報為「住在慶尚南道昌原市馬山區的國會議員」，由於符合「住在慶尚南道昌原市馬山區

⁶³ 詳參新個人情報保護法第 2 條第 1 之 2 款「"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⁶⁴ 同註 12，新聞稿中例示的詳細譯文請見附表。

⁶⁵ 同註 12。匿名處理及匿名情報在個人情報保護法中並未入法化，但可見於「信用情報法」定義為無法再被識別為特定信用情報當事人，因此可任意的使用該匿名情報。

的國會議員」身分之人極為稀少，因此仍可能透過此剩餘資訊辨識出特定個人為何，此種假名處理有其他額外情報可辨識特定個人，屬錯誤的假名處理。

(3) 正確的假名處理

(제대로 된) 가명정보 예시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직장전화	자택전화	주소	직업	가족	예금 평균잔액	대출액
-	-	ajeelkc93	-	-	경남 창원시 마산구	-	배우자	4,567,900원	45,896,789원
* 삭제	* 삭제	* 암호화	* 삭제	* 삭제	* 범주화	* 삭제	아들 1 딸 1		

※ 사실상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식별 불가능. 다만, 핸드폰 번호 암호화 알고리즘을 알면 복원가능하므로 가명정보에 해당

本例示中刪除了【姓名、出生年月日、公司電話、住家電話、職業】等資訊、手機號碼編碼加密，並將地址部分進行範圍化，而在職業被刪除後，僅存家庭成員、儲蓄平均餘額、貸款總額等資訊可供判斷，由於符合此揭的情報當事人範圍甚廣，難以藉由剩餘情報辨識出特定個人，此即為正確的假名處理。

然而，本例示雖被視為正確的假名處理，仍須留意當本例示的手機號碼編碼加密被解開後即有還原辨識特定個人的可能，因此經過假名處理的假名情報仍被視為個人情報而有受保護之必要，此即屬假名情報與無法還原辨識特定個人之匿名情報間最大的不同。

(4) 匿名情報

익명정보 예시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직장전화	자택전화	주소	직업	가족	예금 평균잔액	대출액
-	-	-	-	-	경남 창원시 마산구	-	가족 3명	400만원 ~5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범주화	* 삭제			

※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음

本例示中刪除了【姓名、出生年月日、手機號碼、公司電話、住家電話、職業】等資訊、家族成員欄位改為「親屬 3 名」、地址部分進行範圍化，而儲蓄平均餘額及貸款總額分別以區間標示，使獲得此匿名情報之人仍無法直接藉由各項目所示內容以辨識出特定個人，即屬匿名情報，得被拿來任意運用。

3. 其他特別規定

假名情報入法化後，雖可藉由假名處理而使個人資料的處理相對安全，但因其仍可透過額外情報以還原至可辨識特定個人之情報，因此為避免假名處理產生個人情報被侵害之風險，韓國個人情報保護法第 28 條之 2 至第 28 條之 7 即針對假名情報之處理有特別規定，例如需要符合特定使用目的、指定專門的執行機關，以及設置必要安全措施等，並明文規定違反禁止義務者得對其課賦鉅額罰鍰。

(1) 符合特定使用目的

第 28 條之 2 規定「①未經情報當事人的同意，個人情報處理者為統計編制、科學研究、保存公益紀錄等，得依假名情報處理。②個人情報處理者對第 3 方提供前項假名情報時，不得包含可被用於識別特定個人之情報。⁶⁶」；因此，假名情報若未經情報當事人同意，則僅限於為統計編制、科學研究、保存公益紀錄等特定使用目的可逕為處理，如不符合前揭特定使用目的且未取得情報當事人同意時則不得為之。

(2) 假名情報的結合限制

第 28 條之 3 規定「①即便有第 28 條之 2 之規定，為結合不同個人情報處理者基於統計編制、科學研究及保存公益紀錄等目的處理之假名情報，應由保護委員會或相關中央行政機關首長指定之專門機關執行。②個人情報處理者欲將執行機關結合之情報對外輸出，應以假名情報或依第 58 條之 2 處理情報後，取得專門機關負責人的批准。③第 1 項之結合程序與方法、專門機關的指定及取消指定之標準・程序、管理・監督，第 2

⁶⁶ 詳參新個人情報保護法第 28 條之 2 規定「①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 1 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項之輸出暨批准基準·程序等必要事項，依大統領令定之。⁶⁷」；本條文特別指出，如欲連結不同個人情報處理者因統計編制、學術研究、保存公益紀錄等特定使用目的下所處理之假名情報時，應由政府指定之專門機關來執行，且連結後的情報欲對外輸出時，更需要經過專門機關的負責人批准。

(3) 建構安全措施⁶⁸

第 28 條之 4 規定「①個人情報處理者在處理假名情報時，應依大統領令設置技術上·管理上及物理上之必要安全措施，將可還原辨識特定個人之額外情報分別保管·管理等，以防止該額外情報有遺失·竊取·洩漏·變造或毀損等情事。②個人情報處理者欲處理假名情報時，應根據大統領令規定之事項，填載就假名情報處理之目的、向第 3 方提供時的接收者等相關紀錄並保管，以管理假名情報的處理內容。⁶⁹」；本規定用於假名情報處理時，除就可供還原辨識特定個人之額外情報應分

⁶⁷ 詳參新個人情報保護法第 28 條之 3 規定「①제 28 조의 2 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 58 조의 2 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 1 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절차, 관리·감독, 제 2 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⁶⁸ 韓國新修正之個人情報保護法施行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於 2020 年 3 月 31 日公布，該施行令第 29 條之 5 對假名情報的安全維護措施有更具體之規定，包含將假名情報與額外情報分別管理，以及應紀錄假名情報處理目的、保存期間、銷毀等事項。由於本條文在假名情報之安全措施用詞上並未加入「維護」（확보），但是施行令則加入「維護」一詞，本報告為更貼切本法用語，因此在翻譯本法及撰擬本報告時未加入維護之用詞。有關施行令公布之新聞稿詳參 <https://m.blog.naver.com/mopaspr/221881239138>（最後瀏覽日 2020.06.09）。

⁶⁹ 詳參新個人情報保護法第 28 條之 4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 3 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別存放並設置必要安全措施外，亦要求假名情報的處理均需詳實填載應紀錄事項等，避免個人情報被侵害。

(4) 處理假名情報之禁止義務

第 28 條之 5 規定「①任何人均不能以識別特定個人為目的而處理假名情報。②個人情報處理者在處理假名情報過程中，產生可識別特定個人之情報時，應即時中止該情報之處理，並應立即將該情報毀損・銷毀。⁷⁰」；本規定特別就處理假名情報過程中設立禁止義務，其中違反第 1 項規定之個人情報管理者更可能被處以鉅額之罰鍰。

(5) 違反禁止義務應課以罰鍰

第 28 條之 6 規定「①個人情報管理者違反第 28 條之 5 第 1 項規定，有以識別特定個人為目的而處理情報時，保護委員會得對其課賦整體銷售總額百分之三以下之課徵金。但無整體銷售總額或計算顯有困難時，得依大統領令規定，以 4 億韓圓或資本額百分之三，課賦兩者之最高金額以下之課徵金。②有關課徵金之課賦・徵收等必要事項，準用第 34 條之 2 第 3 項至第 5 項的規定。⁷¹」；本規定即專就個人情報管理者違反第 28 條之 5 第 1 項規定，以識別特定個人為目的而處理情報時，由保護委員會對其裁處相當之罰鍰，而裁處罰鍰及徵收等必要事項，諸如逾罰鍰繳納期間滯納金之計算、催繳及徵收滯

⁷⁰ 詳參新個人情報保護法第 28 條之 5「①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과기하여야 한다.」。

⁷¹ 詳參新個人情報保護法第 28 條之 6「①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28 조의 5 제 1 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 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 억원 또는 자본금의 100 분의 3 중 큰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 34 조의 2 제 3 항부터 제 5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納金等，均準用第 34 條之 2 第 3 項至第 5 項的規定⁷²。

(6) 假名情報不適用範圍

第 28 條之 7 規定「假名情報不適用於第 20 條、第 21 條、第 27 條、第 34 條第 1 項、第 35 條至第 37 條、第 39 條之 3、第 39 條之 4、第 39 條之 6 至第 39 條之 8。⁷³」；假名情報之處理與傳統個人情報相較更為安全，因此在適用上亦可縮小其被限制之範圍，不須遵循部分要求，例如告知自情報當事人以外蒐集個人情報之蒐集出處等⁷⁴、保存期間經過之銷毀⁷⁵、個人情報處理者之經營全部或一部讓渡⁷⁶或合併⁷⁷而生之移轉個人情報限制⁷⁸、個人情報被洩漏之通知⁷⁹、個人情報閱覽之請求⁸⁰、個人情報更正與刪除之請求⁸¹、個人情報處理停止之請求⁸²、關於情報通信服務提供者蒐集或利用其使用者之個人情報之特別規定⁸³、關於情報通信服務提供者其服務使用者的個人情報被洩漏後之通知與申告之特別規定⁸⁴、關於情報通信服務提供者銷毀所屬利用者之個人情報之特別規定⁸⁵、關於情報通信服務提供者所屬利用者之撤回同意及閱覽等權利之特別

⁷² 新個人情報保護法第 34 條之 2 第 3 項規定逾罰鍰繳納期限加計滯納金之計算、第 4 項規定未繳納之催繳及國稅局徵收滯納金、第 5 項則補充其餘未定事項依大統領令定之；此處的滯納金在條文為「과태료」，漢字為「過怠料」，本處因為研究之敘述，故以滯納金一詞以便於閱讀。

⁷³ 詳參新個人情報保護法第 28 條之 7 「가명정보는 제 20 조, 제 21 조, 제 27 조, 제 34 조제 1 항, 제 35 조부터 제 37 조까지, 제 39 조의 3, 제 39 조의 4, 제 39 조의 6 부터 제 39 조의 8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⁷⁴ 新個人情報保護法第 20 條。

⁷⁵ 新個人情報保護法第 21 條。

⁷⁶ 原文為「양도」，漢字為「讓渡」，即轉讓之意。

⁷⁷ 原文為「합병」，漢字為「合併」，即併購之意。

⁷⁸ 新個人情報保護法第 27 條。

⁷⁹ 新個人情報保護法第 34 條第 1 項。

⁸⁰ 新個人情報保護法第 35 條。

⁸¹ 新個人情報保護法第 36 條。

⁸² 新個人情報保護法第 37 條。

⁸³ 新個人情報保護法第 39 條之 3。

⁸⁴ 新個人情報保護法第 39 條之 4。

⁸⁵ 新個人情報保護法第 39 條之 6。

規定⁸⁶、情報通信服務提供者對所屬利用者其個人情報被利用內容之通知⁸⁷等。

（四）於蒐集目的內擴大合理運用之範圍

本次修法除了以保護情報當事人之個人資料為主要重點外，亦考慮到個人情報處理者在處理個人資料時得活用各資料之立場，特別在第 15 條加入第 3 項「個人情報處理者得依大統領令所定，考量是否對情報當事人產生不利影響、是否採取加密等安全維護必要措施等，於最初蒐集目的有關之合理範圍內，未經情報當事人同意，使用該情報當事人之個人情報。」⁸⁸之規定，使個人資料得在與蒐集目的有關之合理範圍內，於一定條件下縱未經情報當事人同意仍可予以利用；並於第 17 條第 4 項「個人情報處理者得依大統領令所定，考量是否對情報當事人產生不利影響、是否採取加密等安全維護必要措施等，於最初蒐集目的有關之合理範圍內，未經情報當事人同意，向第 3 方提供該情報當事人之個人情報。」⁸⁹規定於與第 15 條第 3 項在相同要件下，縱未經情報當事人之同意仍得對他人提供該個人情報。

（五）增訂情報通信網法特別專章

本次修法以特別專章將新法施行前之「情報通信網法」有獨立規定，或與「個人情報保護法」規定相異者，包含個人情報之蒐集與利用、洩漏通報暨通知、同意撤回權、損害賠償、國內代理人、國外移轉個人情報、互惠主義等規定、以及課徵金及刑事處罰等，

⁸⁶ 新個人情報保護法第 39 條之 7。

⁸⁷ 新個人情報保護法第 39 條之 8。

⁸⁸ 詳參新個人情報保護法第 15 條第 3 項「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⁸⁹ 詳參新個人情報保護法第 17 條第 4 項「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規定在新修正之「個人情報保護法」第 6 章以下，標題為「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之處理個人情報等特例」⁹⁰。

此乃專為情報通信服務提供者而設，是其保護對象為「使用者」而非「情報當事人」，亦即使用該情報通信服務提供者之服務者之個人情報方得適用本章特例之規定，此與「個人情報保護法」中之通常保護對象不同。

（六） 修法小結

自前揭新增條文可知，本次修法為使個人資料得以活用，當蒐集個人資料之目的非常完善且可清楚知悉時，縱新附加之個人情報其利用或提供未經情報當事人同意，只要該利用與提供合於最初蒐集目的有關之合理範圍內時，仍是被視為合法的⁹¹。

五、情報通信網法配合個人情報保護法之修法內容

（一） 刪除與「個人情報保護法」相似或重複之規定

新法施行前之「情報通信網法」第 4 章以下有關個人情報保護之規定因與舊「個人情報保護法」包含個人情報之定義、敏感情報、住民登錄號碼處理限制、個人情報處理委託、安全措施義務、指定個人情報保護責任者、情報當事人之管理、損害賠償、個人情報保護認證等相關規定，均有相似或重複之情形，因此在本次修法為配合個人情報保護一元化，均被刪除。

（二） 仍保留於「情報通信網法」之規定

另新法施行前之「情報通信網法」中，有同意連接終端設備、指定處理住民登錄號碼相關機關等規定，其等與個人情報保護無直接關係，具備通信事業色彩，故屬放送通信委員會主要業務，於本次修法時即特別保留而未予以刪除。

⁹⁰ 原文為「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⁹¹ 同註 57，頁 16。

六、信用情報法配合個人情報保護法之修法內容

（一）明確普通法與特別法關係

「個人情報保護法」就有關個人信用情報之處理、處理信用情報之業務委託，以及信用情報當事人之保護等有關金融領域為通常規定，屬普通法，而「信用情報法」則為特別法，本次修法明確何者得適用普通法，何者得適用特別法；而新修正之「信用情報法」就與「個人情報保護法」相似或重複之規定，於個別條文內將「準用個人情報保護法」之字句入法化⁹²，此作法相較於舊法當可使個人情報保護之體系更具效率。

（二）引進假名情報的概念

本次修法配合「個人情報保護法」，於「信用情報法」第2條第15款及第16款中亦將假名情報及處理的概念引進信用情報中，亦於第32條第6項第9款之2及第9款之4明定編制統計（包含編制市場調查等具事業性目的之統計）、研究（包含產業性研究）、以及為了保存具公益性之紀錄等，各該假名情報縱未經信用情報當事人同意亦得被利用或提供，是在「信用情報法」中，假名情報與處理與個人情報保護法之規定幾近雷同。

此外，「信用情報法」在本次修法時，由金融委員會指定之數據專門機關對各金融公司所有之數據資料庫相互連結之「匿名處理」進行適當的評價後，使金融公司得對於無法再辨別特定個人之「匿名處理」情報予以活用，適度解決過去利用情報之不確定性⁹³。

⁹² 例如新修正之「信用情報法」（以下同）第2條第2項個人信用情報之定義、第15條第1項及第2項信用情報蒐集時之除外、第17條第1項及第6項信用情報處理業務之委託、第17條第5項信用情報管理暨保護人之業務等，於本次修法時均將「準用個人情報保護法」予以入法。

⁹³ 詳參新信用情報法第2條第17款匿名處理、第26條之4數據專門機關指定與職責，及第40條之2第3項金融公司就是否已完成匿名處理得向金融委員會要求審查、第4項金融委員會確認業已完成之匿名處理應視為已無法辨識該信用情報當事人、第5項金融委員之審查得委託大統領令公布之專門機關等規定。

（三）充實同意情報運用制度

在告知同意部分，依新修正之「信用情報法」第 34 條之 2 規定，將運用個人信用情報等之相關同意原則予以入法，尤以將經篩選後之摘要情報對信用情報當事人告知該情報的運用並取得同意最為重要⁹⁴；此外，金融委員會審酌隱私之秘密與自由被侵害之危險性、信用情報當事人得取得之有利事項等，設置同意情報運用等級⁹⁵，使金融公司得以透過該等級向信用情報當事人告知情報運用並取得同意，而信用情報當事人亦得輕易得知其自身同意被運用之情報為何。

（四）賦與信用情報當事人新的請求權

具自然人身分之信用情報當事人欲將與自身相關之信用情報自金融公司、政府或公共機關等傳送至本人、管理本人之信用情報公司或其他金融公司時，該信用情報當事人具有傳送請求權，本次修正之「信用情報法」第 33 條之 2 即將前揭之請求權入法化，賦與信用情報當事人新的請求權。

而具自然人身分之信用情報當事人亦得向金融公司提出請求說明自動評價實施與否暨自動評價結果、主要基準、評價基礎資料等權利，使信用情報當事人對於信用自動評價結果得提出有利判斷之情報，請求更正或刪除基礎資料，請求再產出新的自動評價結果等，以保障信用情報當事人有積極對應自動評價的權利⁹⁶。

（五）規制信用情報相關產業體系之變更

引進「個人事業者信用評價業」⁹⁷，主要營業內容為蒐集評估個人事業者信用狀態之必要情報，並以一定方式評價後向第三方提

⁹⁴ 詳參新信用情報法第 34 條之 2 以下規定；本條文雖已公布，施行日為 2021 年 2 月 4 日，即公布後一年始施行。

⁹⁵ 詳參新信用情報法第 34 條之 3 以下規定；本條文雖已公布，施行日為 2021 年 2 月 4 日，即公布後一年始施行。

⁹⁶ 詳參新信用情報法第 36 條之 2 以下規定。

⁹⁷ 原文為「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供該評價結果，以判斷該個人事業者之信用⁹⁸。藉由此項規定欲改善過去個人信用評價公司、企業信用調查公司、其他信用卡業者等以兼營方式而承辦個人事業者之信用危險管理業務，並對個人事業者之發展提供援助使其得以拓展⁹⁹。

七、未來展望

2020 年初韓國國會通過「數據 3 法」修正案後，韓國國內專家學者及相關機關無不歡欣鼓舞，其最重要的原因在於假名情報及假名處理的運用，將使數據資料得以被活用於商業領域，特別是無須情報當事人同意之假名情報得被運用於科學研究，此將有助於新技術的開發，對於未來韓國商業性的發展都是大大的助力。

過去韓國「個人情報保護法」對何謂個人資料缺乏具體判斷基準，使得個人情報處理者無法隨心所欲的處理資料，甚至經常發生不合理的狀況¹⁰⁰，致個人資料的處理與個人資料的保護間難以取得平衡，本次「個人情報保護法」修正案通過後，在第 2 條已明定個人資料之具體判斷基準，個人情報處理者處理個人資料時將不再無所適從。

此外，在符合特定使用目的下已不再需要情報當事人的同意即可任意使用假名情報，此特點使得包含人工智慧科技、區塊鏈、物聯網、5G 等第四代新產業可大幅減低數據資料處理的限制¹⁰¹，並且在從事相應技術研發時亦可同步做到對個人情報有更周到之保護¹⁰²。因此，假名情報可謂本次修法之要角，韓國政府對於假名情報入法後得帶來的加成效果相當期待¹⁰³。

⁹⁸ 詳參新信用情報法第 2 條第 8 款之 2、第 5 條第 2 項、第 6 條第 2 項第 1 款之 2 等規定。

⁹⁹ 同註 57，頁 18。

¹⁰⁰ 同註 57，頁 19。

¹⁰¹ 有報導顯示韓國的 3 大通訊集團已開始企劃新興科技產業，期待個人情報的活用將為產業研發增加助力，特別是使用大數據的人工智慧將會有極大的成長，詳參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78391>（最後瀏覽日 2020.04.09）。

¹⁰² 同註 12。

¹⁰³ 同註 12。

末以，雖有假名情報與假名處理為活用數據資料帶來助益，本次修法透過集中職責於「個人情報保護委員會」，使個人資料的保護不再是分散式管理，各有監督機關的情形，而是透過直接隸屬於國務總理並具有中央行政機關位階之委員會，以獨立執行所管事務之方式進行，此種「一元化」制度，預期新法施行後，韓國個人資料保護將更有效性、統一性¹⁰⁴。

八、結論

由於過去韓國個人資料保護之監督機關與適用法律過於分散，因此在研析韓國「個人情報保護法」時，常需搭配「信用情報法」及「情報通信網法」以對照，特別是通訊服務提供者對於其服務之使用者的個人資料進行蒐集、處理、利用、對第三方提供等甚為常見，因此「情報通信網法」經常被拿來作為個人資料保護的討論。本次修法特別將此種分散的現象縮減，將現行「情報通信網法」中有關個人資料保護之相關事項特別在「個人情報保護法」中以特別篇作為專章，此也代表通訊服務提供者之使用者其等之個人情報保護的主管機關不再是放送通信委員會，而是個人情報保護委員會，如此作法確實可以減少過去因監督機關及適用法律過於繁瑣而無法統一法律見解之缺失。

至於本次修法不斷被吹捧的假名情報與假名處理，實際上係參考歐盟 GDPR 的假名化而來，韓國行政安全部在其發布的即時新聞稿中亦不諱言「此次的修法將有助於申請 GDPR 適足性認定，只要通過適足性認定，即可自由的在國內移轉歐盟市民的個人情報，而不需要其他特別條件，此將有助於企業在歐盟進出時得活用數據資料。」、「歐盟向行政安全部傳達我國個人情報保護法修正案通過後易使適足性認定在初期被決定。」等¹⁰⁵，足見假名情報及假名處理的使用對韓國不僅是國內數據的活用或是對於通過歐盟適足性認定上都具有一席之地。

¹⁰⁴ 同註 57，頁 19。

¹⁰⁵ 同註 12。

貳、韓國個人情報保護法翻譯對照

翻譯說明

- 一、為遵守信雅達原則，本報告在不影響閱讀下，將盡可能於翻譯時保留韓國漢字語。
- 二、韓國法律條文書寫方式如列：單項次不冠數字，數項次冠以① ② ③；款次冠以 1. 2. 3.（數字右方加具頓號）；目次原文為가. 나. 다.，中文為甲、乙、丙，為閱讀便利性，譯文冠以(1)、(2)、(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 16930 호, 2020. 2. 4., 일부개정]

個人情報保護法

【施行 2020.8.5】【法律第 16930 號，2020.2.4.，一部修正】

제 1 장 총칙

第 1 章 總則

제 1 조(목적)

第 1 條（目的）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本法規範個人情報¹⁰⁶之處理與保護相關事項，以保護個人自由與權利，體現個人尊嚴與價值為目的。

제 2 조(정의)

第 2 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本法用詞，定義如下：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¹⁰⁶ 我國個人資料保護法將可識別特定個人之相關資訊稱為「資料」，而在韓國則為「정보」一詞，其漢字為「情報」。

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個人情報：指與自然人有關之情報且符合下列任一目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1) 姓名、住民登錄號碼¹⁰⁷，及藉由影像而可得辨識個人之情報。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即使某一情報無法特定個人，但可透過結合其他情報輕易識別者。此情況需合理考量可否輕易結合其他情報、獲取其他情報之可能性等，識別個人所需要的時間、費用、技術等。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 1 호의 2 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3) 屬前揭 1、2 目之個人情報並依本條 1 之 2 款進行假名處理，且若不使用，結合其他可供還原識別之額外資訊，就無法識別特定個人之情報（以下稱「假名情報」）。

1 의 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 之 2. 假名處理：指藉由除去部分個人情報，或取代個人情報之一部、全部等方法，在沒有其他額外情報之情形下，就無法識別特定個人而為之情報處理。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2. 處理：指個人情報的蒐集、產生、連結、連動、紀錄、儲存、保留、加工、編輯、檢索、輸出、更正¹⁰⁸、回復、利用、提供、公開、銷毀¹⁰⁹，及其他相似行為。

¹⁰⁷ 「주민등록번호」直譯為住民登錄號碼，是韓國住民登錄證「주민등록증」上所記載之號碼，可指涉特定個人，相當於我國的身分證統一編號。

¹⁰⁸ 「정정」的漢字如原文所示為訂正，為便於閱讀在此譯為「更正」。

¹⁰⁹ 「파기」的漢字如原文所示為破棄，為便於閱讀在此譯為「銷毀」。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3. 情報當事人：指藉由處理之情報得識別特定之人，且可為該情報當事人之人。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4. 個人情報檔案：指為便於檢索個人情報而按照一定規則排列或組成之個人情報集合物。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5. 個人情報處理者：指以運用個人情報檔案為目的，自己或透過他人處理個人情報之公共機關¹¹⁰、法人、團體及個人。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6. 公共機關：指下列各目所示之機關：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 (1) 國會、法院、憲法裁判所、處理中央選舉管理委員會行政事務之機關、中央行政機關（包含隸屬於大統領與國務總理之機關）暨其轄下之機關、地方自治團體。
 -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2) 其餘依大統領令而定之國家機關及公共團體。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 影像情報處理機器：指在特定空間設置並持續拍攝人及事物之影像，或該影像透過有線·無線網路傳送，而以大統領令所定之裝置。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8. 科學研究：指技術研發與實證、基礎研究、應用研究暨民間投資研究等，適

¹¹⁰ 「공공기관」의漢字為「公共機關」，即我國的公務機關。

用科學方法之研究。

제 3 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第 3 條（個人情報保護原則）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① 個人情報處理者應明確個人情報之處理目的，並應在該目的之必要範圍內，適法且正當地蒐集最小限度之個人情報。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個人情報處理者應在個人情報處理目的之必要範圍內適當地處理個人情報，不得將個人情報於目的外使用。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個人情報處理者應在個人情報處理目的之必要範圍內保障個人情報的準確性、完整性及最新性。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④ 個人情報處理者應考量情報當事人權利受侵害之可能性與危險程度，依個人情報之處理方法及種類等，安全地管理個人情報。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⑤ 個人情報處理者應公開包含個人情報處理方針等與個人情報處理有關事項，並保障包含閱覽請求權¹¹¹等情報當事人之權利。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⑥ 個人情報處理者應以對情報當事人隱私最小侵害之方式處理個人情報。

¹¹¹ 「청구」의漢字為「請求」，本條文在此指閱覽請求權，但本法在其他條文規定情報當事人閱覽權時，多以「요구」即「要求」此一詞，本報告為順應原條文，後續將依各條文之原始用詞進行翻譯。

-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個人情報處理者藉由匿名或假名處理個人情報即可達成個人情報之蒐集目的時，得以匿名處理時應以匿名處理，而匿名處理仍無法達成目的時，應盡可能以假名處理。
-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⑧ 個人情報處理者應遵守並落實本法及相關法規所定之責任與義務，致力於獲得情報當事人之信賴。

제 4 조(정보주체의 권리)

第 4 條 (情報當事人的權利)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情報當事人關於其個人情報處理，享有下列各項權利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1. 取得與個人情報之處理之相關情報的權利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2. 選擇及決定關於個人情報處理之同意與否、同意範圍等權利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3. 請求確認個人情報處理與否及閱覽（包含提供複本，以下相同）個人情報之權利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4. 請求個人情報之停止¹¹²處理，更正・刪除及銷毀之權利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5. 因個人情報處理而造成之損害，有迅速且公正程序之救濟權利

¹¹² 「정지」의漢字為「停止」，意思與中文相同。

제 5 조(국가 등의 책무)

第 5 條（國家等之責務¹¹³）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① 國家及地方自治團體應發展維護個人尊嚴與隱私之施策¹¹⁴，以避免個人情報有目的外蒐集、誤用・濫用暨無差別監視・追蹤等衍生之危害。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 4 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國家及地方自治團體為保護情報當事人根據第 4 條所享有之權利，應推行改善法令等必要之施策。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 ③ 國家及地方自治團體為改善關於個人情報處理之不合理社會慣例，應尊重與促進・支援個人情報處理者之自發性個人情報保護活動。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國家及地方自治團體制定或修改關於個人情報處理的法律或條例時，應合乎本法目的。

제 6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第 6 條（與其他法律之關係）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有關個人情報保護，除其他法律另有規定外，依照本法規定。

¹¹³ 「책무」의漢字為「責務」，即責任與義務。

¹¹⁴ 「시책」의漢字為「施策」，即採取措施、施行政策之意。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第2章 個人情報保護政策的樹立¹¹⁵等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第7條 (個人情報保護委員會)

-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① 個人情報保護委員會（以下稱「保護委員會」）由國務總理管轄，以獨立執行個人情報保護之相關事務。
- ②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依「政府組織法」第2條規定，保護委員會為中央行政機關。但符合下列各款事項時，不適用「政府組織法」第18條規定。
1. 제7조의8제3호 및 제4호의 사무
1. 第7條之8第3款與第4款之事務。
2. 제7조의9제1항의 심의·의결 사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2. 第7條之9第1項審議、決議事項中符合第1款者。
- ③ 삭제
- ③ 刪除¹¹⁶
- ④ 삭제
- ④ 刪除
- ⑤ 삭제
- ⑤ 刪除
- ⑥ 삭제
- ⑥ 刪除
- ⑦ 삭제
- ⑦ 刪除
- ⑧ 삭제
- ⑧ 刪除
- ⑨ 삭제

¹¹⁵ 「수립」의漢字為「樹立」，即建立、制定之意，韓文中常與政策或制度一起使用。

¹¹⁶ 第7條第3項至第9項於本次修法時刪除。

⑨ 刪除

제 7 조의 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第 7 條之 2 (保護委員會的組成等)

①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保護委員會置委員 9 人，其中常任委員 2 名（委員長 1 名、副委員長 1 名）。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 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 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 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保護委員會之委員自符合下列各款具有個人情報保護豐富經驗與專業知識之人中，由國務總理提名委員長及副委員長，由委員長提名 2 名委員，由大總統所屬政黨或與所屬政黨結盟之團體推薦 2 名委員，由其他結盟團體推薦 3 名委員，再由大總統任命或委囑之。

1.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 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1. 現在承辦個人情報保護業務之 3 級以上公務員（包含隸屬於高階公務員團¹¹⁷之公務員），或過去曾承辦該職務之人

2.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 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現任或曾任法官、檢察官、律師之職務 10 年以上者

3. 공공기관 또는 단체(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에 3 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3 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

3. 在公共機構或團體（包括由個人情報處理者組成的團體）任職 3 年以上，或曾在該機關或團體承辦個人情報保護業務 3 年以上並獲得機構或團體推薦之人

4.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 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¹¹⁷ 高階公務員團是源自韓國公務員的制度，稱為「高階公務員團制度」，將高階公務員與中低階公務員區別，由高階公務員作為主要政策執行與管理的核心，以達成適當利用人才，擴大政策及強化責任等強而有力的政府。

4. 現在或曾在「高等教育法」第2條第1款所定之學校擔任副教授以上職位或相當職位5年以上，且具備個人情報領域專門知識之人。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③ 委員長與副委員長被任命為政務職公務員¹¹⁸。
- ④ 위원장, 부위원장, 제7조의13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 ④ 即使無政府組織法第10條¹¹⁹之適用，委員長、副委員長、以及根據第7條之13設立之事務處處長，仍屬政府委員¹²⁰。

제7조의3(위원장)

第7條之3(委員長)

- ① 위원장은 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 ① 委員長代表保護委員會，主持保護委員會會議，並統籌所管事務。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委員長因不得已之事由而無法執行職務時，由副委員長代行職務，委員長·副委員長皆因不得已之事由而無法執行職務時，由委員會事先指定之委員代行委員長之職務。
-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 ③ 委員長就關於保護委員會之所管事務，得出席國會並陳述意見，若國會要求時，應出席並為報告或答辯。
-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¹¹⁸ 「정무직 공무원」直譯為「政務職公務員」，透過選舉產生或政治性任命而擁有特別權力之高階公務人員，相當於我國政務官。

¹¹⁹ 政府組織法第10條內容係特定哪些機關首長為政府委員，因該法僅列出屬於國務調整室(국무조정실)之各部門主管，以及科學技術情報通信部(과학기술정보통신부)、行政安全部(행정안전부)、產業通商資源部(산업통상자원부)等，而無保護委員會內的長官，故在本法特別規定。

¹²⁰ 政府委員相當於我國的政務官。

- ④ 委員長得出席國務會議並發言，並得就所管事務向國務總理提出議案。

제 7 조의 4(위원의 임기)

第 7 條之 4 (委員之任期)

- ①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① 委員任期為三年，得連任一次。
-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② 委員缺位時，應盡速任命或委囑新委員，不得拖延。受任命或委囑之新委員，其任期將重新起算。

제 7 조의 5(위원의 신분보장)

第 7 條之 5 (委員的身分保障)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 ① 委員除符合下列任一款情形外，不得違反其意願予以免職或解職。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長期身心障礙致無法執行職務之情形
 2. 제 7 조의 7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符合第 7 條之 7 缺格事由¹²¹之情形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依本法或他法有職務上義務違反之情形
- ②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② 委員依法律與良心¹²²而獨立執行職務。

제 7 조의 6(겸직금지 등)

第 7 條之 6 (禁止兼職等)

-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委員在職期間不得兼任下列各職或從事與職務有關之營利業務。

¹²¹ 「결격사유」의漢字為「缺格事由」，即喪失資格之事由，例如國會議員受禁治產宣告即喪失擔任國會議員之資格。

¹²² 「양심」의漢字為「良心」，與中文的良心意思相同，與道德的意思不同，與善心意思相近。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1. 國會議員或地方議員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2. 國家公務員¹²³或地方公務員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3. 其他依大統領令所定之職位
- ② 제 1 항에 따른 영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與第 1 項有關之營利業務依大統領令而定。
- ③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委員不得參與政治活動。

제 7 조의 7(결격사유)

第 7 條之 7 (缺格事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① 符合下列任一款者，不得擔任委員。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1. 非大韓民國國民
 2.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符合「國家公務員法」第 33 條所定之任一款者
 3. 「정당법」 제 22 조에 따른 당원
 3. 根據「政黨法」第 22 條之黨員
- ② 위원이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에서 당원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제 2 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법 제 33 조제 5 호는 「형법」 제 129 조부터 제 132 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 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2 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355 조 또는 제 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② 委員符合前項任一款情形時，當然解職。但於「國家公務員法」第 33 條第 2

¹²³ 「국가공무원」直譯為「國家公務員」，指從事與國家公務有關之公務人員，包含在行政、立法、司法等機關任職之人員，根據韓國憲法第 7 條規定，國會議員及法官屬廣義國家公務員。

款僅限受破產宣告之人未依「債務人回生暨破產相關法律¹²⁴」於免責期間內提出免責聲請，或被判定不予免責，或確認免責後被取消者適用；或同法¹²⁵第 33 條第 5 款僅限有依「刑法」第 129 條至第 132 條、「性暴力犯罪之懲罰等相關特例法」第 2 條、「兒童・青少年之性保護相關法律」第 2 條第 2 款，以及因職務上相關而犯「刑法」第 355 條及第 356 條等各該條文所定之罪，並限於受緩刑以上刑之宣告者。

제 7 조의 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第 7 條之 8 (保護委員會的所管事務)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保護委員會執行下列各款之所管事務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1. 有關改善個人情報保護法令之事項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계획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2. 有關樹立·執行個人情報保護政策·制度·計畫之事項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3. 關於對情報當事人的權利侵害調查及其處分之事項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4. 有關個人情報處理之陳情處理·權利救濟及個人情報相關之紛爭調停¹²⁶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협력
5. 為保護個人情報而與國際機構或國外個人情報保護機構交流·合作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정책·제도·실태 등의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調查·研究，教育及宣傳與個人情報保護相關之法令·政策·制度·實態等相關事項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¹²⁴ 「회생」의 漢字為「回生」，即為我國更生之意；整部法典名稱若譯為「債務人更生與破產法」應會更容易了解，這邊為符合韓國法典的全貌，仍順應原文用字順序進行翻譯。

¹²⁵ 指國家公務員法。

¹²⁶ 「조정」的漢字為「調停」，即調解之意，因後面條文內容將出現「調停」此一漢字詞，故在此統一譯為調停。

7. 對有關個人情報保護技術開發之支援・推廣暨專門人才養成之相關事項
8.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8. 依本法及其他法令所定屬保護委員會事務之事項

제 7 조의 9(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第 7 條之 9 (保護委員會的審議・議決事項等)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保護委員會審議・議決下列各款事項。

1. 제 8 조의 2 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1. 關於第 8 條之 2 評價個人情報侵害要因¹²⁷之事項。
2. 제 9 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 10 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關於第 9 條基本計畫與第 10 條施行計畫之事項。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與個人情報相關之政策、制度暨有關修正法令之事項。
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4. 個人情報處理之相關公共機關間的意見調整事項。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
5. 有關個人情報保護法令的解析・運用等相關事項
6. 제 18 조제 2 항제 5 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6. 依第 18 條第 2 項第 5 款有關利用・提供個人情報之相關事項
7. 제 33 조제 3 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7. 依第 33 條第 3 項影響評價結果之相關事項
8. 제 28 조의 6, 제 34 조의 2, 제 39 조의 15 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8. 依第 28 條之 6、第 34 條之 2、第 39 條之 15 課賦¹²⁸課徵金之相關事項
9. 제 61 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9. 依第 61 條提出意見暨勸告改善之相關事項
10. 제 64 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10. 依第 64 條糾正¹²⁹措施等相關事項

¹²⁷ 「요인」的漢字為「要因」，即主要原因之意。

¹²⁸ 「부과」的漢字為「賦課」，即裁處之意，本報告為便於閱讀及維持原文本意，譯為課賦，以下同。

¹²⁹ 「시정」的漢字為「是正」，即對不足或潛在缺陷提出改正手段，本報告便於閱讀及維持原文本意，譯為糾正，以下同。

11. 제 65 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11. 依第 65 條告發暨懲戒勸告之相關事項
 12. 제 66 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12. 依第 66 條公布¹³⁰處理結果之相關事項
 13. 제 75 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3. 依第 75 條課賦過怠料¹³¹之相關事項
 14. 소관 법령 및 보호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4. 制定·修訂暨廢止所管法令暨保護委員會規則之相關事項
 15.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 명 이상
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15. 由保護委員會委員長或委員 2 名以上於會議中提交與個人情報保護之關
聯事項
 1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
는 사항
 16. 另依本法或其他法令所定之由保護委員會審議·議決之事項
- ② 보호위원회는 제 1 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保護委員會為審議·議決第 1 項各款之事項，於必要時得採行下列各款措施
。
1.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
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1. 關係公務員¹³²向具備個人情報保護專門知識者或市民社會團體暨相關事
業者聽取意見
 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2. 要求關係機關¹³³提出資料或調查事實
- ③ 제 2 항제 2 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

¹³⁰ 「공표」의漢字為「公表」，即公開發表、公開發布之意，為便於閱讀而譯為公布。

¹³¹ 「과태료」의漢字為「過怠料」，乃公法上對怠於履行義務之人處罰之罰鍰，即滯納金或怠金。

¹³² 「관계 공무원」直譯為「關係公務員」，即與某種領域有關聯之公務人員，英文為 relevant public official，於本法主要係指與個人情報保護有關聯之公務人員。

¹³³ 「관계 기관」直譯為「關係機關」，即與某種領域有關聯之機關，英文為 the organs concerned，於本法主要係指與個人情報保護有關聯之機關。

- ③ 依第 2 項第 2 款被要求之關係機關，如無其他特別事由即應遵循。
- ④ 보호위원회는 제 1 항제 3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保護委員會有審議·議決第 1 項第 3 款之事項時，得對關係機關為改善勸告。
- ⑤ 보호위원회는 제 4 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⑤ 保護委員會得審查第 4 項之勸告內容是否已履行

제 7 조의 10(회의)

第 7 條之 10 (會議)

- ①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 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① 於委員長認有必要時，或現任委員 4 分之 1 以上要求時，由委員長召集保護委員會之會議。
- ② 위원장 또는 2 명 이상의 위원은 보호위원회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 ② 委員長或 2 名以上委員得向保護委員會提出議案。
- ③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保護委員會之會議，以過半數現任委員出席進行開議，並以出席委員過半數之贊成為議決。

제 7 조의 11(위원의 제척·기피·회피)

第 7 條之 11 (委員的除斥¹³⁴·忌避¹³⁵·迴避¹³⁶)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① 委員符合下列各款之一者，應自審議·議決中除斥。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1. 該事案¹³⁷當事人為委員或其配偶或曾為配偶者，或與該事件¹³⁸有關之共

¹³⁴ 「제척」의漢字為「除斥」，即排除之意，於韓國法常見於民刑事訴訟中，法官、法院職員、公證人等與案件具有特殊關係者需於事前自該案件排除，相當於我國的法官迴避。

¹³⁵ 「기피」의漢字為「忌避」，即顧忌而避諱之意，由當事人主動提出聲請，而非事前排除。

¹³⁶ 「회피」의漢字為「迴避」，係由委員自己主動提出迴避。

同權利者或義務者間具有關係之情形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委員與該事案當事人有親族關係或曾有親族關係之情形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3. 委員就該事案曾提供證詞、鑑定、法律諮詢之情形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委員擔任或曾任該事案相關當事人之代理人之情形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5. 委員或委員所屬公共機關·法人或團體等，與提出建議者間存在利害關係之情事
-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② 難以期待委員公正審議・議決時，當事人得對該委員提出忌避聲請，並由保護委員會以議決決定。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 ③ 委員有第1項或第2項事由者，得對該事案迴避。

제 7 조의 12(소위원회)

第 7 條之 12 (小委員會)

- ① 보호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반복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① 為有效執行業務，保護委員會得設立小委員會以審議或議決有關個人情報受輕微侵害或相似・反覆可能之事項等。
- ② 소위원회는 3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小委員會由 3 名委員組成。
- ③ 소위원회가 제 1 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은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¹³⁷ 「사안」의漢字為「事案」，即事件，於韓國法常見於因法律而衍伸問題之案件。

¹³⁸ 「사건」의漢字為「事件」，延續前段提到的事案，均係討論同一個案件或事件。

③ 小委員會依第 1 項作成之審議・議決決定視為保護委員會作成之審議・議決決定。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小委員會會議由組成成員之全員出席，且出席成員全員の贊成以議決。

제 7 조의 13(사무처)

第 7 條之 13 (事務處)

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保護委員會成立事務處以處理保護委員會之事務，除有本法規定外，保護委員會之組織及相關事項以大統領令定之。

제 7 조의 14(운영 등)

第 7 條之 14 (運作等)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除本法或其他法令規定外，保護委員會之運作等必要事項由保護委員會以規則定之。

제 8 조 삭제

第 8 條 刪除

제 8 조의 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第 8 條之 2 (個人情報侵害要因評價)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中央行政機關首長欲藉其所管法令之制定或修正，導入・變更個人情報處理之政策或制度時，應向保護委員會提出評價個人情報侵害要因之要求。

② 보호위원회가 제 1 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의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② 保護委員會受到第 1 項要求，對該法令之個人情報侵害要因予以分析・監督，

並得將為求改善該法令之必要事項向該法令之主管機關首長提出勸告。

③ 제 1 항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關於第 1 項評價個人情報侵害要因之程序與方法必要事項以大統領令定之。

제 9 조(기본계획)

第 9 條 (基本計畫)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3 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① 保護委員會每 3 年與相關中央行政機關首長協議並樹立個人情報保護基本計畫（以下稱「基本計畫」）以保護個人情報及保障個人情報當事人之權益。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基本計畫應包含下列各款事項。

1.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1. 個人情報保護的基本目標與促進方向。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2. 改善與個人情報保護有關之制度及法令

3.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3. 為防止個人情報受侵害之對策

4.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활성화

4. 個人情報保護自律約束之應用

5.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의 활성화

5. 個人情報保護教育·宣傳之應用

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6. 為了個人情報保護而培養專門人才

7.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其他為了個人情報保護之必要事項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為了個人情報保護，國會、法院、憲法裁判所、中央選舉管理委員會等各機關（包含各所屬機關）得樹立・施行基本計畫。

제 10 조(시행계획)

第 10 條（施行計畫）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 ① 中央行政機關首長應依基本計畫，每年編制個人情報保護施行計畫向保護委員會提出，並經保護委員會審議・議決後施行。
-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樹立・施行該施行計畫之必要事項以大統領令定之。

제 11 조(자료제출 요구 등)

第 11 條（資料提出要求等）

- ①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保護委員會得就個人情報處理者遵守法規的現況及個人情報管理實態等，要求個人情報處理者、相關中央主管機關首長¹³⁹、地方自治團體首長暨關係機關・團體等提出資料或陳述意見等，以樹立有效率之基本計畫。
-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과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保護委員會於必要時得對個人情報處理者、相關中央主管機關首長、地方自治團體首長暨關係機關・團體等，實施個人情報管理水準暨實態掌握之調查，以促進個人情報保護政策、成果評價等。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 1 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中央行政機關首長得向所管領域之個人情報處理者要求其提出第 1 項所規定之資料，以樹立・促進有效率的施行計畫。

¹³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直譯為關係中央主管機關之長，與註 132、133 相似，於本法係指與個人情報保護有關聯之中央主管機關，該主管機關之首長。

- ④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依第1項至第3項規定被要求提出資料等之人，如無其他特別事由即應遵循。
- ⑤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第1項至第3項提出資料等之範圍與方法等必要事項以大統領令定之。

제 12 조(개인정보 보호지침)

第 12 條 (個人情報保護指引)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 ① 保護委員會制定有關個人情報處理之基準、個人情報侵害類型與預防措施等，相關標準個人情報保護指引（以下稱「標準指引」），並得對個人情報處理者提倡遵守該指引。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 ② 中央行政機關首長依標準指引就所管領域之個人情報處理與相關個人情報制定保護指引，並得對個人情報處理者提倡遵守該指引。
-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國會、法院、憲法裁判所、中央選舉管理委員會等各機關（包含各所屬機關）得制定個人情報保護指引並施行。

제 13 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第 13 條 (自律約束的促進暨支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為促進及支援個人情報處理者自發之個人情報保護活動，保護委員會應制定下列各款必要施策。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1. 關於個人情報保護之教育·推廣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育成及支援與個人情報保護相關聯之機關・團體
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시행 지원
3. 支援個人情報保護認證標章之導入與施行
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시행 지원
4. 支援個人情報處理者自律性規約之制定・施行
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其他為支援個人情報處理者之自律性個人情報保護活動之必要事項。

제 14 조(국제협력)

第 14 條 (國際合作)

- ① 정부는 국제적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① 政府應制定必要施策以提升個人情報保護在國際環境中之水準。
- ② 정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政府應制定相關施策使個人情報不因移轉至國外而侵害情報當事人的權利。

제 3 장 개인정보의 처리

第 3 章 個人情報的處理

제 1 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第 1 節 個人情報的蒐集、利用、提供等

제 15 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第 15 條 (個人情報的蒐集・利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① 個人情報處理者符合下列任一款時，得蒐集個人情報，並得於蒐集目的範圍內利用。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1. 取得情報當事人同意時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法律有特別規定或為遵守法令上義務而不可避免時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公共機關為執行法定職務而不可避免時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4. 為與情報當事人締約或履行該約而不可避免時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 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情報當事人及其法定代理人陷於無法為意識表示之狀態，或住所不明等而無法取得事前同意，確實有明顯對情報當事人及第 3 方急迫生命、身體、財產利益所必要時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6. 為達成個人情報處理者之正當利益所必要，且該正當利益明顯優先於情報當事人之權利時。此情形僅限於與個人情報處理者正當利益有相當關係且不超過合理範圍時。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個人情報處理者依第 1 項第 1 款取得同意時，應將下列各款向情報當事人告知。當下列任一款有變更時，亦應向情報當事人告知該變更並取得同意。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1. 個人情報的蒐集·利用目的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2. 蒐集個人情報之項目¹⁴⁰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3. 保有暨利用個人情報的期間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4. 有權利拒絕同意之事實，及拒絕同意有不利益時，該不利益之內容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③ 個人情報處理者得依大統領令所定，考量是否對情報當事人產生不利影響、是否採取加密等安全維護必要措施等，於最初蒐集目的有關之合理範圍內，未經情報當事人同意，使用該情報當事人之個人情報。

제 16 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第 16 條（個人情報的蒐集限制）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15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¹⁴⁰ 「항목」의漢字為「項目」，相當於我國個人資料「類別」之意，為維持原條文之意，以下均譯為「項目」。

- ① 個人情報處理者依第 15 條第 1 項任一款蒐集個人情報時，應蒐集該目的內最小必要範圍之個人情報。於此情形下，蒐集個人情報最小化之立證責任¹⁴¹由個人情報處理者負擔。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② 個人情報處理者於取得情報當事人之同意並蒐集個人情報時，應具體向情報當事人告知其得對最小必要範圍以外個人情報之蒐集有拒絕同意之事實，始得蒐集個人情報。
- ③ 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個人情報處理者不得以情報當事人拒絕同意蒐集最小必要範圍以外之個人情報為由而拒絕向情報當事人提供商品或服務。

제 17 조(개인정보의 제공)

第 17 條（個人情報的提供）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① 個人情報處理者符合下列任一款，得向第 3 方提供（包含共同利用，以下同）情報當事人之個人情報。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1. 取得情報當事人的同意時
 2. 제 15 조제 1 항제 2 호·제 3 호·제 5 호 및 제 39 조의 3 제 2 항제 2 호·제 3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依第 15 條第 1 項第 2 款·第 3 款·第 5 款及第 39 條之 3 第 2 項第 2 款·第 3 款規定，於個人情報蒐集目的範圍內提供個人情報時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¹⁴¹ 「입증책임」의漢字為「立證責任」，即舉證責任之意。

- ② 個人情報處理者依前項第 1 款取得同意時，應將下列各款告知情報當事人。
當下列任一款有變更時，亦應告知該變更並取得同意。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1. 個人情報之接收者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2. 個人情報接收者利用該個人情報之目的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個人情報被提供之項目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個人情報接收者保有及利用該個人情報之期間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5. 有權利拒絕同意之事實，及拒絕同意有不利益時，該不利益之內容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 3 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 2 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個人情報處理者有對國外之第 3 方提供個人情報時，應依第 2 項各款向情報當事人告知並取得同意，不得以違反本法內容締結向國外移轉個人情報之契約。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④ 個人情報處理者得依大統領令所定，考量是否對情報當事人產生不利影響、是否採取加密等安全維護必要措施等，於最初蒐集目的有關之合理範圍內，未經情報當事人同意，向第 3 方提供該情報當事人之個人情報。

제 18 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第 18 條（限制個人情報之目的外利用・提供）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 15 조제 1 항 및 제 39 조의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 17 조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 3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個人情報處理者利用個人情報不得逾第 15 條第 1 項及第 39 條之 3 第 1 項、第 2 項等所定之範圍，亦不得將超過第 17 條第 1 項及第 3 項等所定之範圍之情報提供給第 3 方。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 제 4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 1 호·제 2 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 5 호부터 제 9 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 ② 除有不當侵害情報當事人或第 3 方利益之虞外，個人情報處理者符合下列任一款情形，得將個人情報為目的外之利用或提供予第 3 方，不受前項限制。但情報通信服務提供者(符合「情報通信網利用促進暨情報保護等相關法律」第 2 條第 1 項第 3 款所定者¹⁴²，以下同)於處理其使用者(符合「情報通信網利用促進暨情報保護等相關法律」第 2 條第 1 項第 4 款所定者¹⁴³，以下同)之個人情報時，僅限符合下列第 1 款·第 2 款之情形，第 5 款至第 9 款之情形僅限於公共機關。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1. 自情報當事人處取得別途¹⁴⁴同意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其他法律有特別規定之情形

¹⁴² 「情報通信網利用促進暨情報保護等相關法律」第 2 條第 1 項第 3 款之原文為「"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 2 조 제 8 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其中譯為情報通信服務提供者係依「情報通信事業法」第 2 條第 8 項所定，與電力通信事業者共同以營利為目的，利用電力通信事業者的電力通信業務提供情報者或情報提供媒介者。

¹⁴³ 「情報通信網利用促進暨情報保護等相關法律」第 2 條第 1 項第 4 款原文為「"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其中譯為「利用者」指利用情報通信服務提供者所提供服務之人，類似情報通信服務提供者的「用戶」概念。條文中「이용자」的漢字為「利用者」，為避免混淆個人情報之利用，本報告譯為「使用者」以區別。

¹⁴⁴ 「별도」的漢字為「別途」，即另外用途、其他用途之意，這邊的別途同意指目的外利用需額外取得同意。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 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情報當事人及其法定代理人陷於無法為意識表示之狀態，或住所不明等而無法取得事前同意，確實有明顯對情報當事人及第 3 方急迫生命、身體、財產利益所必要時
4. 삭제
4. 刪除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若個人情報不得於目的外利用或向第 3 方提供致無法執行其他法律已規定之業務職責時，保護委員會以審議・議決為表決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為履行條約、其他國際協議，而有對外國政府或國際組織提供之必要
7.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為犯罪之搜查與公訴之提起及維持所必要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法院為執行裁判職務所必要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為執行刑罰及監護、保護處分所必要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2 항제 1 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個人情報處理者依第 2 項第 1 款取得同意時，應將下列各款告知情報當事人。當下列各款之一有變更時，亦應告知該變更並取得同意。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1. 個人情報接收者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2. 個人情報之利用目的（於提供第 3 方之情形，接收者於接收時之利用目

的稱之)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被利用或被提供之個人情報項目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保有暨利用個人情報的期間(於提供第3方之情形, 接收者於接收時之保有暨利用期間稱之)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5. 有權利拒絕同意之事實, 及拒絕同意有不利益時, 該不利益之內容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公共機關依第2項第2款至第6款、第8款及第9款於目的外利用個人情報或向第3方提供時, 保護委員會應告示¹⁴⁵該利用或提供之法律依據、目的暨範圍等相關必要事項, 並刊登於政府公報或官方網站上。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個人情報處理者符合第2項任一款於目的外利用向第3方提供個人情報時, 應對接收者限制利用目的、限制利用方法、及其他相關必要限制事項, 或要求設置必要措施等以維護個人情報之安全。於此情形, 被要求者應設置必要措施以維護個人情報之安全。

제 19 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第 19 條 (限制個人情報接收者之利用·提供)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¹⁴⁵ 「고시」의漢字為「告示」, 即國家機關所發布以向一般人告知之事。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自個人情報處理者處取得之個人情報，除符合下列各款之一，個人情報接收者不得於接收之目的外利用或向第 3 方提供。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1. 自情報當事人處取得別途同意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其他法律有特別規定之情形

제 20 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第 20 條（告知自情報當事人以外蒐集個人情報之蒐集出處等）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① 個人情報處理者處理自情報當事人外蒐集之個人情報時，若情報當事人有要求，應即時將下列各款全部事項告知情報當事人。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1. 個人情報的蒐集出處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個人情報的處理目的

3. 제 37 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3. 依第 37 條有請求停止個人情報處理之權利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17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 1 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就處理個人情報之種類・規模、從業人員暨銷售額規模等予以評估，符合大統領令所定基準之個人情報處理者有依第 17 條第 1 項第 1 款自情報當事人外蒐集個人情報並處理時，應將前項各款所有事項告知情報當事人，不適用前項規定。但個人情報處理者蒐集的情報中，未包含通訊方式等可向情報當

事人告知之方式時，不在此限。

- ③ 제 2 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適用第 2 項本文規定時，告知情報當事人之時機・方法暨程序等必要事項以大統領令定之。
- ④ 제 1 항과 제 2 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④ 符合下列任一款時，不適用第 1 項及第 2 項本文之規定。但僅限於明顯優於情報當事人依本法所享有權利之情形。
 -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 32 조 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1. 符合告知要求之個人情報符合第 32 條第 2 項任一款而被該個人情報檔案所包含時
 -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因告知而引起其他人的生命・身體危害之虞，或對其他人的財產或其他利益受有不當侵害之虞時

제 21 조(개인정보의 파기)

第 21 條（個人情報之銷毀）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當保有個人情報之期間經過、個人情報之處理目的達成等，而不需要個人情報時，個人情報處理者應立即銷毀該個人情報，不得遲延。但依法令而有保存之必要時，不在此限。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1 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個人情報處理者依第 1 項銷毀個人情報時，應設置不得回復或重製之措施。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1 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

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③ 個人情報處理者依第 1 項但書應保存個人情報而未銷毀時，該個人情報或個人情報檔案應與其他個人情報分開儲存・管理。
-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個人情報之銷毀方式與程序等必要事項以大統領令定之。

제 22 조(동의를 받는 방법)

第 22 條（同意取得之辦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 6 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① 個人情報處理者依本法對個人情報之處理需取得情報當事人（包含第 6 項所定之法定代理人。本條以下同）之同意時，應以清楚可辨之方式，將個別同意事項分開呈現，並分別取得情報當事人之同意。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1 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 ② 個人情報處理者以書面（包含「電子文書暨電子交易基本法」第 2 條第 1 項規定之電子文書）取得前項之同意時，個人情報之蒐集・利用目的、欲蒐集・利用個人情報之項目等，就大統領令所定之重要內容，應依保護委員會告示之辦法明確標示使其簡單明瞭。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15 조제 1 항제 1 호, 제 17 조제 1 항제 1 호, 제 23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24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③ 個人情報處理者依第 15 條第 1 項第 1 款、第 17 條第 1 項第 1 款、第 23 條第 1 項第 1 款及第 24 條第 1 項第 1 款規定因處理個人情報而取得情報當事人同

意時，應區別基於履行與情報當事人間契約等目的，而無情報當事人同意仍可處理之個人情報，以及須經情報當事人同意始得處理之個人情報。此時，未經同意即可處理之個人情報，其立證責任由個人情報處理者負擔。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個人情報處理者為向情報當事人宣傳商品或服務，或引誘販售，而欲取得處理個人情報之同意時，應告知使情報當事人明確知悉該情事並取得同意。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 3 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 4 항 및 제 18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個人情報處理者不得以情報當事人拒絕同意第 3 項之選擇同意事項，或拒絕同意第 4 項及第 18 條第 2 項第 1 款為由，拒絕對情報當事人提供商品或服務。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 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⑥ 個人情報處理者欲處理 14 歲以下兒童之個人情報而依本法需取得同意時，應取得該法定代理人之同意。此時，為取得法定代理人同意所最小必要範圍之情報，得未經法定代理人同意直接向該兒童蒐集。
- ⑦ 제 1 항부터 제 6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 6 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除第 1 項至第 6 項明確規定者外，其他有關取得情報當事人同意之細節辦法，及第 6 項所定最小必要範圍之情報等相關必要事項，於考量蒐集個人情報之媒介，並以大統領令定之。

제 2 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第 2 節 個人情報處理限制

제 23 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第 23 條 (敏感情報的處理限制)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個人情報處理者不得處理依大統領令所定有關思想・信仰、工會・政黨之加入・退出、政治傾向、健康、性生活及其他明顯侵害隱私之虞之情報（以下稱「敏感情報」）。但符合下列任一款者，不在此限。
1. 정보주체에게 제 15 조제 2 항 각 호 또는 제 17 조제 2 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1. 向情報當事人告知第 15 條第 2 項各款及第 17 條第 2 項各款之事項，並對其他個人情報之處理個別取得情報當事人之同意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2. 於法令中有要求或准許處理敏感情報時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1 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 29 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個人情報處理者依前項規定處理敏感情報，準用第 29 條規定，為防止敏感情報有遺失、竊取、洩漏、變造及毀損等情事，應採取安全維護必要措施。

제 24 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第 24 條 (限制固有識別情報之處理)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 ① 個人情報處理者除有下列各款情形外，不得處理經大統領令所定之依法得區

別特定個人之固有識別情報¹⁴⁶（以下稱「固有識別情報」）。

1. 정보주체에게 제 15 조제 2 항 각 호 또는 제 17 조제 2 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1. 向情報當事人告知第 15 條第 2 項各款及第 17 條第 2 項各款之事項，並對其他個人情報之處理個別取得情報當事人之同意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2. 法令中有具體要求或准許處理固有識別情報時
- ② 삭제
- ② 刪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1 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個人情報處理者依第 1 項各款規定處理固有識別情報時，為防止固有識別情報有遺失、竊取、洩漏、變造及毀損等情事，應遵循大統領令設置加密等安全維護必要措施。
-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3 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④ 保護委員會應評估處理個人情報之種類、規模、從業人員暨銷售額規模等，根據大統領令所定之基準，對個人情報處理者是否有依第 3 項規定採取安全維護必要措施，並依大統領令所定為定期調查。
-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 4 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保護委員會得依大統領令所定使專門機關依第 4 項進行調查。

제 24 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¹⁴⁶ 「固有識別情報」依韓國新修正之個人情報保護法施行令第 19 條所定，包含住民登錄號碼、護照號碼、駕照號碼，及外國人登錄號碼等。

第 24 條之 2 (住民登錄號碼處理之限制)

- ① 제 24 조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 ① 個人情報處理者除符合下列任一款外，不得處理住民登錄號碼，不適用第 24 條第 1 項規定。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1. 於法律·大統領令·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暨監察院規則中，經具體要求或准許住民登錄號碼之處理時。
 2. 정보주체 또는 제 3 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為免除情報當事人或第 3 人生命、身體、財產利益之急迫危險而顯有必要時
 3. 제 1 호 및 제 2 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3. 依第 1 款及第 2 款規定有不可避免應處理住民登錄號碼時，保護委員會以告示定之。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24 조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為避免住民登錄號碼遺失·竊取·洩漏·偽造·變造及毀損等情事，個人情報處理者應藉由加密措施並安全保管之。於此情形，有關加密適用對象、對象類別適用時機等必要事項，就個人情報處理規模與洩漏時之影響等予以評估，並以大統領令定之，不適用第 24 條第 3 項規定。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1 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個人情報處理者依第 1 項各款處理住民登錄號碼時，應提供情報當事人於線

上網頁註冊會員階段時，得不使用住民登錄號碼亦可註冊會員之方法。

-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3 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 ④ 保護委員會得制定和支援各種措施，包含整備相關法令、樹立計畫、建立必要設備暨系統等，使個人情報處理者得依第 3 項規定提供方法。

제 25 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第 25 條（限制影像情報處理機器之設置・運作）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除下列各款規定之情形，不論何人均不得在公開場所設置・運作影像情報處理機器。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1. 法令中有具體准許之情形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為犯罪預防暨搜查所必要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施設安全暨火災預防所必要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交通管制所必要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交通情報之蒐集・分析暨提供所必要

-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不論何人均不得在供不特定多數人使用之淋浴室、化粧室、發汗室、更衣室等有明確侵害個人隱私之虞之場所・運作影像情報處理機器以觀看場所內部。但以大統領令所定之教導所¹⁴⁷、精神保健設施等根據法令有拘禁或保護他人之設施不在此限。

¹⁴⁷ 「교도소」漢字為「教導所」，即監獄之意。

- ③ 제 1 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 2 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③ 欲依第 1 項各款設置・運作影像情報處理機器之公共機關首長，及欲依第 2 項但書設置・運作影像情報處理機器者，應依大統領令所定之程序舉辦公聽會・說明會等，並聽取相關專家及利害關係人之意見。
- ④ 제 1 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 2 조제 13 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依第 1 項各款設置・運作影像情報處理機器者（以下稱「影像情報處理機器運作者」）應設置以下各款包含告示欄等必要措施，使情報當事人得輕易的認知。但根據「軍事基地暨軍事設施保護法」第 2 條第 2 款之軍事設施、「綜合防衛法」第 2 條第 13 款所定之國家重要設施、及其他依大統領令所定之設施不在此限。
1. 설치 목적 및 장소
 1. 設置目的暨場所
 2. 촬영 범위 및 시간
 2. 攝影範圍暨時間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3. 管理責任者之姓名暨聯絡方式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其他依大統領令所定之事項。
-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 ⑤ 影像情報處理機器運作者不得以不符設置影像情報處理機器之目的而任意操作影像情報處理機器，或照攝其他地方，亦不得使用錄音功能。
-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 29 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 ⑥ 影像情報處理機器運作者應依第 29 條規定設置安全維護必要措施，以避免個人情報遺失・竊取・洩漏・偽造・變造及毀損。
-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30 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⑦ 影像情報處理機器運作者應依大統領令建立影像情報處理機器運作・管理方針。此時，得不依第 30 條個人情報處理方針定之。
-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 ⑧ 影像情報處理機器運作者得將有關設置・運作影像情報處理機器之事務委託第 3 方辦理。但於公共機關之設置・運作影像情報處理機器之相關事務委託時，其程序及條件以大統領令定之。

제 26 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第 26 條（於委託處理個人情報業務之限制）

-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3 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 ① 個人情報處理者有向第 3 方委託個人情報之處理業務時，其文書內容應包含下列各款。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1. 於委託業務履行目的外，處理個人情報禁止之相關事項
 -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2. 有關個人情報之技術性・管理性保護措施之事項
 -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3. 其他為安全管理個人情報而以大統領令定之事項
- ② 제 1 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依第 1 項規定委託個人情報處理業務之個人情報處理者(以下稱「委託者」)應依大統領令所定之辦法¹⁴⁸,使情報當事人可隨時確認該委託業務內容及受託處理個人情報業務者(以下稱「受託者」)。
-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委託者有委託宣傳商品及服務,或引誘販售等業務時,應依大統領令定之辦法向情報當事人告知被委託業務之內容及受託者。當被委託業務之內容及受託者有變更時亦同。
-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 ④ 委託者應依大統領令對受託者施以教育、檢查處理現況等以監督受託者安全地處理個人情報,避免情報當事人之個人情報有遺失·竊取·洩漏·變造及毀損等情事。
-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受託者利用或對第 3 方提供之個人情報,不得逾越個人情報處理者委託之業務範圍。
- 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 ⑥ 受託者於處理與受託業務相關之個人情報過程中,因違反本法致發生損害賠償責任,視為個人情報處理者之所屬職員。
- ⑦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 15 조부터 제 25 조까지, 제 27 조부터 제 31 조까지, 제 33 조부터 제 38 조까지 및 제 59 조를 준용한다.
- ⑦ 第 15 條至第 25 條、第 27 條至第 31 條、第 33 條至第 38 條及第 59 條,於受託者準用。

¹⁴⁸ 依新修正之個人情報保護法施行令第 28 條第 2 項之規定,該辦法係委託第 3 方處理個人情報之個人情報處理者應於其入口網站持續揭示委託內容及受託者。

제 27 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第 27 條 (限制營業讓渡等個人情報之移轉)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① 個人情報處理者有讓渡・合併業務之全部或一部而致有對他人移轉個人情報之情形時，應依大統領令定之辦法，事先向情報當事人告知下列各款事項。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1. 欲移轉個人情報之事實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2. 取得被移轉之個人情報者(以下稱「營業受讓者」)之姓名(如為法人時，以法人名稱稱之)、地址、電話號碼及其他通訊方式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3. 情報當事人不願個人情報被移轉時之相應措施辦法及程序
-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1 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營業受讓者取得被移轉之個人情報時，應立即依大統領令所定之辦法告知情報當事人，不得遲延。但個人情報處理者已依第 1 項事前將移轉事實告知時，不在此限。
- ③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
- ③ 營業受讓者等因營業之讓渡・變更等取得被移轉之個人情報時，僅能依被移轉當時原有目的利用或向第 3 方提供該個人情報。此時，該營業受讓者等視為個人情報處理者。

제 28 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第 28 條（監督個人情報經辦者）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 ① 為確保個人情報在處理過程中得安全管理，個人情報處理者應就受其指揮・監督之職員、派遣勞動者、時薪勞動者等處理個人情報之人（以下稱「個人經辦者」）進行適當的管理・監督。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為使經辦個人情報有適度保障，個人情報處理者應定期對個人情報經辦者實施必要教育。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第 3 節 關於假名情報處理之特別規定

제 28 조의 2(가명정보의 처리 등)

第 28 條之 2 (假名情報的處理等)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① 未經情報當事人的同意，個人情報處理者為統計編制、科學研究、保存公益紀錄等，得依假名情報處理。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1 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 ② 個人情報處理者對第 3 方提供前項假名情報時，不得包含可被用於識別特定個人之情報。

제 28 조의 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第 28 條之 3 (假名情報的結合限制)

- ① 제 28 조의 2 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 ① 即便有第 28 條之 2 之規定，為結合不同個人情報處理者基於統計編制、科學研究及保存公益紀錄等目的處理之假名情報，應由保護委員會或相關中央行政機關首長指定之專門機關執行。
-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 58 조의 2 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個人情報處理者欲將執行機關結合之情報對外輸出，應以假名情報或依第 58 條之 2 規定處理該情報後，取得專門機關負責人的批准。
- ③ 제 1 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절차, 관리·감독, 제 2 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第 1 項之結合程序與方法、專門機關的指定及取消指定之標準·程序、管理·監督，第 2 項之輸出暨批准基準·程序等必要事項，依大統領令定之。

제 28 조의 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第 28 條之 4 (對於假名情報的安全措施義務等)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① 個人情報處理者在處理假名情報時，應依大統領令設置技術上、管理上及物理上之必要安全措施，將可還原辨識特定個人之額外情報分別保管·管理等，以防止該額外情報有遺失·竊取·洩漏·變造及毀損等情事。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 3 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② 個人情報處理者欲處理假名情報時，應根據大統領令規定之事項，填載就假名情報處理之目的、向第 3 方提供時的接收者等相關紀錄並保管，以管理假名情報的處理內容。

제 28 조의 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第 28 條之 5 (處理假名情報時之禁止義務等)

- 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 ① 任何人均不能以識別特定個人為目的而處理假名情報。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 ② 個人情報處理者在處理假名情報過程中，產生識別特定個人之情報時，應即時中止該情報之處理，並應立即將該情報回收·銷毀。

제 28 조의 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第 28 條之 6 (對處理假名情報課賦課徵金等)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28 조의 5 제 1 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

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중 큰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① 個人情報管理者違反第 28 條之 5 第 1 項規定，有以識別特定個人為目的而處理情報時，保護委員會得對其課賦整體銷售總額百分之三以下之課徵金。但無整體銷售總額或計算顯有困難時，得依大統領令規定，以 4 億韓圓或資本額百分之三，課賦兩者之最高金額以下之課徵金。
- ②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 34 조의 2 제 3 항부터 제 5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有關課徵金之課賦·徵收等必要事項，準用第 34 條之 2 第 3 項至第 5 項的規定。

제 28 조의 7(적용범위)

第 28 條之 7 (適用範圍)

가명정보는 제 20 조, 제 21 조, 제 27 조, 제 34 조제 1 항, 제 35 조부터 제 37 조까지, 제 39 조의 3, 제 39 조의 4, 제 39 조의 6 부터 제 39 조의 8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 20 條、第 21 條、第 27 條、第 34 條第 1 項、第 35 條至第 37 條、第 39 條之 3、第 39 條之 4、第 39 條之 6 至第 39 條之 8 等規定於假名情報不適用。

제 4 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第 4 章 個人情報的安全管理

제 29 조(안전조치의무)

第 29 條 (安全措施義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個人情報處理者為防止個人情報有遺失、竊取、洩漏、變造及毀損等情事，應遵循大統領令樹立內部管理計畫、保管存取紀錄等技術上、管理上及物理上之安全維護必要措施。

제 30 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第 30 條 (個人情報處理方針之樹立暨公開)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① 個人情報處理者應將下列各款事項納入並制定個人情報之處理方針(以下稱「個人情報處理方針」)。於此情形，公共機關應對依第 32 條規定須登錄之個人情報檔案制定個人情報處理方針。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 個人情報處理目的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2. 個人情報處理暨保有期間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3. 向第 3 方提供個人情報之相關事項(限符合本情形時定之)

3의 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3之 2. 個人情報之銷毀程序暨銷毀辦法(依第 21 條第 1 項但書應保存個人情報時，包含該保存經過與被保存之個人情報項目)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個人情報處理之委託相關事項（限符合本情形時定之）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5. 情報當事人與法定代理人之權利·義務暨該行使辦法之相關事項
 6. 제 31 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6. 第 31 條規定之個人情報保護責任者之姓名，及個人情報保護業務暨處理相關陳情業務之職員職稱與電話號碼等通訊方式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7. 網路存取情報檔案等以自動方式蒐集個人情報裝置之設置·運作暨該拒絕相關事項（限符合本情形時定之）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8. 其他有關個人情報處理事項以大統領令定之。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個人情報處理者於樹立個人情報處理方針或變更時，應依大統領令定之辦法公開以使情報當事人得輕易確認。
 -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③ 個人情報處理者與情報當事人間締結契約之內容與個人情報處理方針內容不符時，適用有利情報當事人之部分。
 -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 ④ 保護委員會得訂定個人情報保護方針指引並向個人情報處理者倡導遵守該指引。

제 31 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第 31 條（個人情報保護責任者之指定¹⁴⁹）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¹⁴⁹ 即指定個人情報保護責任者。

- ① 個人情報處理者應指定個人情報保護責任者全權負責個人情報處理之相關業務。
-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② 個人情報保護責任者執行下列各款業務。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樹立暨施行個人情報保護計畫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2. 定期調查並改善個人情報處理之狀況及實際處理情形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3. 與處理個人情報相關之投訴處理及被侵害救濟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4. 建立內部控制系統以防止個人情報被洩漏暨誤用·濫用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樹立暨施行個人情報保護教育計畫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6. 保護暨管理·監督個人情報檔案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7. 其他為使個人情報被適當處理而以大統領令定之業務
-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 2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③ 個人情報保護責任者有執行第 2 項各款業務之必要時，得隨時調查個人情報處理現況、處理體系等，或自關係當事人處取得報告。
-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個人情報保護責任者於個人情報保護方面，知悉違反本法或其他相關法令之情事時，應立即採取改善措施，於必要時應將該改善措施向所屬機關首長或團體首長報告。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 2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個人情報保護責任者於執行第 2 項各款業務時，個人情報處理者不得無正當

事由對其施加不利益或使其陷於不利益。

-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個人情報保護責任者之指定條件、業務、資格，其他必要事項以大統領令定之。

제 32 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第 32 條 (個人情報檔案之登錄暨公開)

-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① 公共機關首長有運用個人情報檔案時，應將下列各款事項登錄於保護委員會。登錄事項經變更時亦同。
 -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1. 個人情報檔案的名稱
 -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 2. 個人情報檔案運用法律依據及目的
 -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個人情報檔案中被紀錄之個人情報項目
 -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 4. 個人情報的處理方法
 -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5. 個人情報的保有期間
 -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 6. 個人情報有經常性及反覆性提供時，該提供之接收者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7. 其他以大統領令定之事項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 1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個人情報檔案符合下列任一款，不適用第 1 項。
 -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1. 記錄國家安全、外交上秘密、其他與國家之重大利益相關事項之個人情報檔案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記錄犯罪搜查、公訴之提起暨維持、刑罰暨監護之執行、矯正處分、保護處分、保安觀察處分¹⁵⁰與出入國管理等相關事項之個人情報檔案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記錄依「租稅犯處罰法」暨「關稅法」調查違規行為相關事項之個人情報檔案
 4.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4. 僅限於公共機關內部業務處理而使用之個人情報檔案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5. 依其他法令被秘密分類之個人情報檔案
- ③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제 1 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保護委員會於必要時，得檢討依第 1 項登錄之個人情報檔案事項及內容，並得對該公共機關首長勸告改善。
 - ④ 보호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④ 保護委員會應公開個人情報檔案依第 1 項規定之登錄現況，使任何人均得輕易地閱覽。
 - ⑤ 제 1 항에 따른 등록과 제 4 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關於第 1 項之登錄與第 4 項公開辦法、範圍及程序等必要事項以大統領令定之。
 - ⑥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⑥ 關於國會、法院、憲法裁判所、中央選舉管理委員會（包含其所屬機關）登

¹⁵⁰ 韓國의保安觀察處分主要為預防特種犯罪之再犯而設，受觀察對象於刑執行期滿後以相關行政措施觀察其社會活動態度、生活環境、品行等，與我國的保護管束類似。

錄暨公開個人情報檔案，以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暨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定之。

제 32 조의 2(개인정보 보호 인증)

第 32 條之 2 (個人情報保護認證)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다.
- ① 保護委員會得對個人情報處理者於情報處理暨保護等一連串措施是否合乎本法等為相關認證。
- ② 제 1 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 년으로 한다.
- ② 前項認證有效期間為 3 年。
- ③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 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 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 ③ 保護委員會於符合下列任一款情形時，依大統領令所定得取消依第 1 項取得之認證。但符合下列第 1 款情形者應取消。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 1. 以虛偽或其他負面方法取得個人情報保護認證之情形
 - 2. 제 4 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 2. 有拒絕第 4 項規定之事後管理或妨礙之情形
 - 3. 제 8 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未達第 8 項規定之認證基準時
 -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 4. 違反個人情報保護相關法令，且有重大違反事由之情形
-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실효성 유지를 위하여 연 1 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保護委員會應每年實施一次以上事後管理，以維持個人情報保護之實效性。
-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 1 항에 따른 인증, 제 3 항에 따른 인증 취소, 제 4 항에 따른 사후관리 및 제 7 항에 따른 인증 심사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保護委員會得委由大統領令所定之專門機關執行第 1 項認證、第 3 項取消認證、第 4 項事後管理，及第 7 項認證審查員等相關業務。

- ⑥ 제 1 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⑥ 依第 1 項取得認證者，得以大統領令公告之認證內容作為標示或宣傳。
- ⑦ 제 1 항에 따른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심사를 수행할 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등에 관하여는 전문성과 경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為執行第 1 項認證之必要審查，有關該審查員之資格、取消資格條件等，將考量相關專業性、經歷，及其他必要事項，由大統領令定之。
- ⑧ 그 밖에 개인정보 관리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안전성 확보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제 1 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其他個人情報管理體系、情報當事人管理保障、安全維護措施，是否符合本法第 1 項認證之基準、辦法、程序等必要事項，由大統領令定之。

제 33 조(개인정보 영향평가)

第 33 條（個人情報影響評價）

-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 ① 公共機關首長依大統領令所定之基準運用個人情報檔案而致個人情報有被侵害之虞之情形時，應對其進行評價¹⁵¹（以下稱「影響評價」）以分析危險要因¹⁵²並提出改善事項，再將該結果提交予保護委員會。於此情形，公共機關首長應委託保護委員會指定之機關（以下稱「評價機關」）為該影響評價。
- ②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進行影響評價時應考量下列各款事項。
 -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 1. 被處理之個人情報數量
 - 2. 개인정보의 제 3 자 제공 여부

¹⁵¹ 「평가」의漢字為「評價」，即判斷價值

¹⁵² 得解釋為風險評估。

2. 個人情報對第 3 方提供與否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3. 情報當事人之權利受危害可能性及危險程度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4. 其他以大統領令所定事項
- ③ 보호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保護委員會得對第 1 項影響評價結果提出意見。
 -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 1 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 32 조 제 1 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④ 公共機關首長依第 1 項影響評價而作成之個人情報檔案，並應於依第 32 條第 1 項進行登錄時，將該影響評價結果作為附件。
 - ⑤ 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⑤ 保護委員會應完備有關專家之養成、影響評價基準之開發・推廣等必要措施以應用影響評價。
 - ⑥ 제 1 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평가기준, 영향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有關第 1 項評價機關之指定基準暨指定取消、評價基準、影響評價之辦法・程序等必要事項以大統領令定之。
 - ⑦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⑦ 關於國會、法院、憲法裁判所、中央選舉管理委員會（包含其所屬機關）之影響評價事項，遵循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暨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
 - ⑧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⑧ 公共機關以外之個人情報處理者於運用個人情報檔案而致情報當事人之個人情報有受侵害之虞之情形時，應積極努力以進行影響評價。

제 34 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第 34 條（個人情報洩漏通知等）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個人情報處理者知悉個人情報被洩漏時，應即時將下列各款事實通知該情報當事人。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1. 被洩漏之個人情報項目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2. 被洩漏之時點與該經過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3. 為使因洩漏而致生之侵害最小化，情報當事人可得採取之辦法等相關資訊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4. 個人情報處理者的對應措施暨侵害救濟程序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

5. 情報當事人被侵害發生時，可受理申告¹⁵³等負責職員暨通訊方式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個人情報處理者於個人情報被洩漏時，應完備應變對策及進行必要措施以最小化侵害。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¹⁵⁴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③ 當被洩漏之個人情報達大統領令所定之規模以上時，個人情報處理者應立即將第1項通知及第2項措施結果向保護委員會及大統領令定之專門機關申告

¹⁵³ 「신고」의漢字為「申告」，即申訴或通報之意，就個人資料被侵害事項，我國通常以「通報」為主要用語，本報告為維持原文原意，均譯為申告。

¹⁵⁴ 「복구」的意思為「回復」，主要係回復到被侵害前的樣子，前面條文均翻譯為回復，這邊譯為修補侵害較易理解。

¹⁵⁵。於此情形，保護委員會及大統領令所定之專門機關得為技術支援以防止侵害擴散及修補侵害等。

④ 제 1 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有關第 1 項通知時機、辦法暨程序等必要事項以大統領令定之。

제 34 조의 2(과징금의 부과 등)

第 34 條之 2 (課徵金等)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 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24 조제 3 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個人情報處理者於處理住民登錄號碼有遺失·竊取·洩漏·變造及毀損之情事時，保護委員會得課賦·徵收 5 億元以下之課徵金。但個人情報處理者為避免住民登錄號碼被遺失·竊取·洩漏·變造及毀損，已依第 24 條第 3 項設置安全維護必要措施時，不在此限。

② 보호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保護委員會於第 1 項課賦課徵金時，應評估下列各款事項

1. 제 24 조제 3 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1. 履行第 24 條第 3 項安全維護必要措施之努力程度

2.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주민등록번호의 정도

2. 住民登錄號碼被遺失·竊取·洩漏·變造及毀損之程度

3.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3. 是否履行後續措施以防止侵害擴散

③ 보호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 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如未依第 1 項於繳納期間內繳納課徵金者，自繳納截止日次日始至繳納日前

¹⁵⁵ 這裡的申告與我國的通報意思較為相近。

一日止，保護委員會於課徵金之年利率百分之六範圍內依大統領令定之徵收滯納金。此時，滯納金之徵收期限不得超過 60 個月。

- ④ 보호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 2 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④ 如未依第 1 項於繳納期間內繳納課徵金者，保護委員會應限期催繳，若仍未於該期間內繳納課徵金及第 2 項所定之滯納金，依國稅滯納處分之案例徵收。
- ⑤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關於課徵金之課賦・徵收等其他必要事項以大統領令定之。

제 5 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第 5 章 情報當事人的權利保障

제 35 조(개인정보의 열람)

第 35 條 (個人情報之閱覽)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① 情報當事人得向個人情報處理者要求閱覽其被處理之自身個人情報。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除前項規定外，情報當事人就其個人情報欲對公共機關要求閱覽時，得直接對公共機關要求閱覽，或以大統領令之規定，透過保護委員會要求閱覽。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③ 個人情報處理者因第 1 項及第 2 項而收到閱覽請求時，應依大統領令所定之期間內使該情報當事人得閱覽該個人情報。此時，若於該時間內有不可閱覽之事由時，應立即向情報當事人說明並告知該事由，並得延後閱覽時間，不得遲延。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 ④ 個人情報處理者符合下列任一款情形，得告知情報當事人該事由並限制或拒絕其閱覽之要求。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1. 法律規定禁止或限制閱覽時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有危害其他人之生命・身體之虞，或可能侵害其他人財產與其他利益之虞時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公共機關於執行下列各目之一之職務時有遭遇重大阻礙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1) 租稅之課賦·徵收及返還相關業務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2) 根據「初·中等教育法」暨「高等教育法」設立之各級學校、依「終身教育法」設立之終身教育設施，以及依其他法律設置之高等教育機關中，有關成績評量及選拔錄取者之事項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3) 學歷·體能暨採用等相關事項，資格審查之相關事項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4) 就核定補償金·撫恤金等進行中之評量及判斷之相關事項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5) 根據其他法律而進行中之檢查及調查相關事項
- ⑤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第 1 項至第 4 項規定請求閱覽、限制閱覽、通知等之辦法暨程序之相關必要事項由大統領令定之。

제 36 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第 36 條 (個人情報之更正·刪除)

- ① 제 35 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 ① 情報當事人根據第 35 條閱覽自己個人情報，就該個人情報得向個人資料處理者提出更正或刪除之要求。但如該情報當事人為其他法令明定之蒐集對象時，則不得要求刪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1 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

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② 個人情報處理者接獲情報當事人依前項提出之要求時，除其他法令對個人情報之更正及刪除定有特別程序外，應立即對該情報當事人進行調查並依情報當事人之要求為更正・刪除等必要措施，不得遲延，並應將前揭實施結果告知情報當事人。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2 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個人情報處理者依第 2 項刪除個人情報時，應設置使該情報不會回復或重製之措施。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 1 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④ 情報當事人之要求有第 1 項但書之情形時，個人情報處理者應立即將該內容告知情報當事人，不得遲延。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2 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⑤ 個人情報處理者依第 2 項所定進行調查而有必要時，得向情報當事人請求提交必要之證明文件以確認該被要求更正・刪除事項。
-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第 1 項・第 2 項及第 4 項規定要求更正及刪除、通知之辦法暨程序等相關必要事項由大統領令定之。

제 37 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第 37 條 (個人情報之停止處理等)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 32 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 ① 情報當事人就關於其個人情報之處理，得對個人情報處理者提出停止之要求。

於此情形，如個人情報處理者為公共機關，情報當事人僅得對依第 32 條規定被作為登錄對象之個人情報檔案中之自身個人情報提出停止之請求。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1 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個人情報處理者接獲前項要求時，應立即依情報當事人之要求停止處理個人情報之全部或部分。但有符合下列任一款時，得拒絕情報當事人停止處理之要求。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1. 法律有特別規定或為遵守法令上之義務而不可避免時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有危害其他人之生命・身體之虞，或可能侵害其他人財產與其他利益之虞時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公共機關如未處理個人情報將無法執行其他法律所定之所管職務。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若未處理個人情報將無法提供情報當事人約定之服務等致履行契約有困難，而情報當事人未明確表明解除契約意思時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2 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個人情報處理者依第 2 項但書規定拒絕停止處理之要求時，應立即將該事由告知情報當事人，不得遲延。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個人情報處理者依情報當事人之要求而停止處理之個人情報應立即進行銷毀等必要措施，不得遲延。

- ⑤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依第 1 項至第 3 項所定之停止處理要求，停止處理之拒絕、通知等辦法暨程序等相關必要事項由大統領令定之。

제 38 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第 38 條（權利行使的方法與程序）

- ① 정보주체는 제 35 조에 따른 열람, 제 36 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 37 조에 따른 처리정지, 제 39 조의 7에 따른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 ① 情報當事人依第 35 條閱覽，第 36 條更正・刪除，第 37 條停止處理，第 39 條之 7 撤回同意等之要求（以下稱「閱覽等要求」）文書，依大統領令定之方法・程序，得由代理人提出。
- ② 만 14 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 ② 14 歲以下兒童之法定代理人，可向個人情報處理者對該兒童之個人情報提出閱覽等要求。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個人情報處理者得依大統領令向閱覽要求者請求手續費與郵務費（僅限郵遞副本請求時）。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④ 個人情報處理者應制定具體辦法與程序使情報當事人得為閱覽等要求，且該等辦法及程序應公開使情報當事人得以知悉。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 ⑤ 情報當事人提出閱覽要求等被拒絕而有不服時，個人情報處理者應制定相應之必要程序及介紹，使其得提出異議。

제 39 조(손해배상책임)

第 39 條 (損害賠償責任)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① 個人情報處理者違反本法致情報當事人受有損害時，情報當事人得向個人情報處理者請求損害賠償。此時，若個人情報處理者無法證明其無故意或過失時，無法免責。
- ② 삭제
- ② 刪除
-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 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個人情報處理者因故意或重大過失引起之個人情報遺失·竊取·洩漏·偽造·變造及毀損等情事，對情報當事人發生損害時，法院得於不超過損害金額 3 倍範圍內酌定損害賠償金。但個人情報處理者得證明其無故意或重大過失時，不在此限。
- ④ 법원은 제 3 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法院酌定前項賠償金額時應考慮下列各款事項。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1. 故意或認識損害可能發生之程度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2. 違反行為所引起之損害規模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3. 個人情報處理者因違反行為而可獲得之經濟利益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4. 依違反行為之罰金暨課徵金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5. 違反行為之期間·次數等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6. 個人情報處理者的財產狀態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7. 個人情報處理者就情報當事人的個人情報遺失·竊取·洩漏後，回復該情報之努力程度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個人情報當事人者對情報當事人侵害救濟之努力程度

제 39 조의 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第 39 條之 2 (法定損害賠償的請求)

- ① 제 39 조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① 情報當事人得向個人情報處理者依其故意或過失而致個人情報有遺失·竊取·洩漏·變造及毀損等情事時，於 300 萬韓圓以下範圍內請求相當之損害賠償，不受第 39 條第 1 項限制。於此情況，該個人情報處理者無法舉證證明其無故意或過失之情事，不得免責。
- ② 법원은 제 1 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 1 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法院於依第 1 項提出請求之情況時，可審酌整體辯論之意旨和證據調查的結果，於第 1 項之範圍內認定相當的損害額。
- ③ 제 39 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 1 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 ③ 情報當事人依第 39 條提出損害賠償請求時，得於事實審辯論終結前依第 1 項變更請求。

제 6 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第 6 章 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之處理個人情報等特例

제 39 조의 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의 등에 대한 특례)

第 39 條之 3 (對於同意個人情報的蒐集·利用等特例)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 15 조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① 除第 15 條第 1 項規定外，情報通信服務提供者欲蒐集及利用使用者之個人情報時，應對使用者告知下列全部各款事項並取得同意。欲變更下列任一款事項時亦同。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1. 個人情報蒐集·利用目的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蒐集個人情報的項目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3. 保有·利用個人情報的期間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 ② 情報通信服務提供者於符合下列任一款時，未依前項取得同意仍得蒐集·利用使用者之個人情報。
1.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1. 為履行有關情報通信服務(係指依「情報通信網利用促進暨情報保護等相關法律」第 2 條第 1 項第 2 款所定之情報通信服務¹⁵⁶。以下同)契約

¹⁵⁶ 「情報通信網利用促進暨情報保護等相關法律」第 2 條第 1 項第 2 款之原文為「"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 2 조제 6 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其中譯為利用「電子通信事業法」第 2 條第 6 款所稱之電子通信業提供情報或作為提供情報之媒介所

所必要個人情報，因經濟性・技術性之事由致取得通常性同意明顯困難時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於提供情報通信服務為核定費用所必要時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其他法律有特別規定時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 ③ 情報通信服務提供者不得以使用者拒絕提供最小必要範圍以外之個人情報為由而拒絕提供服務。於此情形，該最小必要範圍之個人情報係指可執行該服務本質功能所必要之情報時。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 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情報通信服務提供者欲自 14 歲以下兒童處取得其個人情報之蒐集・利用・提供等同意，應取得其法定代理人之同意，並依大統領令所定確認法定代理人之同意。
-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 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⑤ 情報通信服務提供者欲對 14 歲以下兒童告知個人情報之處理相關事項時，應使用簡單明瞭之方式及語言使其理解。
- ⑥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만 14 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⑥ 保護委員會為避免 14 歲以下兒童無法清楚認知處理個人情報之危險性及結果、使用者之權利等，應制定保護 14 歲以下兒童個人情報之施策。

제 39 조의 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稱之服務。

第 39 條之 4 (個人情報洩漏等之通知・申告相關特例)

- ① 제 34 조제 1 항 및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 17 조제 1 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 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① 除第 34 條第 1 項及第 3 項外，情報通信服務提供者與依第 17 條第 1 項規定取得使用者之個人情報者（以下稱「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於知悉個人情報之遺失・竊取・洩漏（以下稱「洩漏等」）事實時，應立即告知使用者下列各款事項並向保護委員會及大統領令所定之專門機關申告，無正當事由，該通知・申告應於知悉後 24 小時內為之，不得遲延。但有無法得知使用者之通訊方式等正當事由時，得依大統領令所定措施代替通知。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1. 被洩漏等之個人情報項目
 2.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2. 被洩漏等之發生時點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3. 使用者可採取之措施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4. 情報通信服務提供者之對應措施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5. 可受理利用者諮詢之職員暨通訊方式
- ② 제 1 항의 신고를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② 大統領令所定之專門機關依前項接獲申告，應立即向保護委員會告知該事實，不得遲延。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 1 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보호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 ③ 情報通信服務提供者應向保護委員會說明依第 1 項所定之正當事由。

④ 제 1 항에 따른 통지 및 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關於第 1 項所定之通知暨申告之辦法・程序等必要事項以大統領令定之。

제 39 조의 5(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대한 특례)

第 39 條之 5 (個人情報之保護措施相關特例)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應限制處理使用者個人情報之人數以達處理範圍最小化。

제 39 조의 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第 39 條之 6 (個人情報之銷毀相關特例)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 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為保護使用者之個人情報，於使用者未利用情報通信服務已屆滿 1 年，應依大統領令所定為個人情報之銷毀等必要措施。但前揭期間依其他法令或使用者請求而有不同時，則依該法令或請求。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 1 항의 기간 만료 30 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於前項期間屆滿之 30 日前，應將銷毀個人情報之事實、期間屆滿日暨銷毀個人情報之項目等，依大統領令所定之事項以電子郵件等大統領令所定之辦法告知使用者。

제 39 조의 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第 39 條之 7 (使用者之權利等相關特例)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① 使用者得隨時對情報通信服務提供者撤回個人情報蒐集・利用・提供等同意。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 1 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제 35 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제 36 조에 따른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 ② 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就前項撤回同意、第 35 條閱覽個人情報、第 36 條請求更正等辦法，應相較個人情報蒐集之辦法更易履行。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 1 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若遇第 1 項撤回同意時，應立即對已蒐集之個人情報為銷毀等必要措施，使其不得回復及重製，不得遲延。

제 39 조의 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第 39 條之 8 (個人情報利用內容之通知)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 23 조, 제 39 조의 3 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 17 조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① 符合大統領令所定基準之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應定期向使用者通知其依第 23 條、第 39 條之 3 規定而蒐集之使用者個人情報之利用內容。但未蒐集通訊方式等得對使用者通知之個人情報時，不在此限。
- ② 제 1 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前項對使用者通知之情報種類、通知週期暨辦法、其他於利用內容通知之必要事項，以大統領令定之。

제 39 조의 9(손해배상의 보장)

第 39 條之 9 (損害賠償的保障)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 39 조 및 제 39 조의 2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① 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應採取保險及加入公債或提撥準備金等必要措施，以履行依第 39 條及第 39 條之 2 的損害賠償責任。
- ② 제 1 항에 따른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기준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前項個人情報處理者的加入對象範圍、基準等必要事項，以大統領令定之。

제 39 조의 10(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第 39 條之 10 (被洩漏之個人情報的刪除·阻斷)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應避免住民登錄號碼、銀行帳戶情報、信用卡情報等用戶之個人情報透過情報通信網向大眾洩漏。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雖有前項規定，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收到保護委員會及依大統領令所指定之專門機關請求時，就已洩漏予大眾之個人情報應有刪除·阻斷等必要措施。

제 39 조의 11(국내대리인의 지정)

第 39 條之 11 (國內代理人之指定)

-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① 情報通信服務提供者在國內無住所或營業所，經評估其使用者數量、銷售額等而符合大統領令所定之基準者，應以書面指定下列各款事項之代理人（以下稱「國內代理人」）

1. 제 31 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1. 根據第 31 條個人情報保護責任者之業務

2. 제 39 조의 4 에 따른 통지·신고

2. 根據第 39 條之 4 通知·申告

3. 제 63 조제 1 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3. 根據第 63 條第 1 項提出之有關物品·資料等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 ② 以在國內有住所及營業所者為國內代理人。

- ③ 제 1 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 30 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根據第 1 項指定國內代理人時，應將下列各款事項全部列入依第 30 條所制定之個人情報處理方針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1. 國內代理人之姓名（法人指名稱暨代表人的姓名）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2. 國內代理人之地址（法人指營業所之所在地）、電話號碼暨電子郵件地址

④ 국내대리인이 제 1 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④ 國內代理人於履行第 1 項各款而有違反本法之情形，該違反行為視為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所為。

제 39 조의 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第 39 條之 12（國外移轉個人情報的保護）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① 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就有關使用者個人情報部分，不得以與本法相違背之內容締結國際契約。

② 제 17 조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 3 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 30 조제 2 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雖有第 17 條第 3 項之規定，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如欲向國外提供（包含查詢）·委託處理·保管（在本條以下稱「移轉」）應取得使用者同意。但第 3 項各款全部已依第 30 條第 2 項依大統領令所定之辦法對使用者公開或透過電子郵件告知時，得不進行個人情報委託處理·保管之同意程序。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 2 항 본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如欲依第 2 項本文取得同意，應事先將下列各款事項

全部告知使用者。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1. 移轉個人情報之項目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2. 個人情報被移轉之國家、移轉時間暨移轉方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3. 個人情報之移轉接收者之姓名（法人為該法人之名稱暨情報管理責任者之通訊方式）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4. 個人情報之移轉接收者對個人情報利用目的及保有・利用期間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 2 항 본문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情報通信服務提供者依第 2 項本文所定而取得同意並將個人情報移轉至國外時，應依大統領令所定進行保護措施。
- 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 3 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제 3 국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본다.
- ⑤ 使用者個人情報之移轉接收者有透過第三國移轉個人情報時，準用第 1 項至第 4 項之規定。於此情形，「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被視為「個人情報之移轉接收者」，「個人情報之移轉接收者」被視為「個人情報在第三國之移轉接收者」。

제 39 조의 13(상호주의)

第 39 條之 13 (互惠主義)

제 39 조의 12 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雖符合第 39 條之 12 規定，惟對於限制個人情報向國外轉移之國家之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得依該國標準為相應之限制。但履行條約或其他國際協定所必要，

不在此限。

제 39 조의 14(방송사업자등에 대한 특례)

第 39 條之 14 (對於放送事業者¹⁵⁷等之特例)

「방송법」 제 2 조제 3 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은 조 제 6 호 · 제 9 호 · 제 12 호 및 제 14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시청자"는 "이용자"로 본다.

符合「放送法」第 2 條第 3 款第 1 目至第 5 目及同條第 6 款 · 第 9 款 · 第 12 款及第 14 款者 (於本條以下稱「放送事業者等」) 於處理觀眾之個人情報時, 準用情報通信服務提供者適用之規定。於此情況, 放送事業者等視為情報通信服務提供者及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 觀眾被視為使用者。

제 39 조의 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第 39 條之 15 (課徵金之課徵等相關特例)

①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 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① 情報通信服務提供者有符合下列各款之一之行為時, 保護委員會得依違反行為對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課賦該相關銷售額百分之三以下之課徵金。

1. 제 17 조제 1 항 · 제 2 항, 제 18 조제 1 항 · 제 2 항 및 제 19 조(제 39 조의 14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 · 제공한 경우

1. 違反第 17 條第 1 項 · 第 2 項 · 第 18 條第 1 項 · 第 2 項及第 19 條 (包含依第 39 條之 14 規定準用時), 有個人情報之利用 · 提供時

2. 제 22 조제 6 항(제 39 조의 14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 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¹⁵⁷ 依「放送法」第 2 條第 3 款第 1 目至第 5 目之規定, 放送事業者包含地上波放送事業者 (지상파방송사업자)、綜合有線放送事業者 (종합유선방송사업자)、衛星放送事業者 (위성방송사업자)、放送頻道使用事業者 (방송채널사용사업자)、社區廣播放送事業者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此乃以公益為目的之廣播事業) 等。

2. 違反第 22 條第 6 項 (包含依第 39 條之 14 規定準用時) 未取得法定代理人同意即蒐集 14 歲以下兒童之個人情報
3. 제 23 조제 1 항제 1 호(제 39 조의 14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수집한 경우
3. 違反第 23 條第 1 項第 1 款 (包含依第 39 條之 14 規定準用時) 未取得使用者同意即蒐集敏感情報
4. 제 26 조제 4 항(제 39 조의 14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특례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疏於進行第 26 條第 4 項 (包含依第 39 條之 14 規定準用時) 所定之管理・監督及教育致特別受託者¹⁵⁸有違反本法規定時
5.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 29 조의 조치(내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 39 조의 14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未依第 29 條設置措施 (樹立內部管理計畫除外) 之情形 (包含依第 39 條之 14 規定準用時) 致使用者之個人情報有遺失・竊取・洩漏・偽造・變造及毀損之情形
6. 제 39 조의 3 제 1 항(제 39 조의 14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6. 違反第 39 條之 3 第 1 項 (包含依第 39 條之 14 規定準用時) 未取得使用者同意即蒐集個人情報時
7. 제 39 조의 12 제 2 항 본문(같은 조 제 5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7. 違反第 39 條之 12 第 2 項本文 (包含依同條第 5 項準用時) 未取得使用者同意即向國外提供使用者之個人情報
- ② 제 1 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¹⁵⁸ 特別受託者指第 26 條第 2 項之受託者。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 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根據第 1 項規定被課賦課徵金之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有拒絕提出核算銷售額資料或提出虛假資料時，以與該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規模相似之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之財務報表等會計資料及註冊者數暨使用費用等營業現況資料為證據，推定其銷售額。但無銷售額或核算銷售額有困難時，得課賦依大統領令所定之 4 億韓圓以下之課徵金。
- ③ 보호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保護委員會欲依第 1 項課賦課徵金時，應評估下列各款事項。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1. 違反行為之內容暨程度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2. 違反行為之期間暨次數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3. 依違反行為而取得利益之規模
- ④ 제 1 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 3 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第 1 項課徵金經第 3 項評估後核定，該具體之核定基準與核定程序應以大統領令定之。
- ⑤ 보호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⑤ 根據第 1 項應繳納課徵金而未於繳交期間內繳納者，保護委員會應加徵自繳納期間屆滿次日起算課徵金之百分之六利率之滯納金¹⁵⁹。
- ⑥ 보호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 5 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¹⁵⁹ 「가산금」의漢字為「加算金」，相當於我國滯納金。

따라 징수한다.

- ⑥ 根據第 1 項應繳納課徵金者有未於繳交期間內繳納之情形，保護委員會應定期限催繳，如於該指定期限內仍未繳納課徵金及第 5 項之滯納金，則依國稅滯納處分案例徵收。
- ⑦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 1 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⑦ 有法院判決等事由而有返還第 1 項所課賦之課徵金時，自繳納課徵金之日起至返還當日止之期間內，應評估金融公司之存款利率等，依大統領令定之利率計算並返還滯納金。
- ⑧ 제 7 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 ⑧ 雖符合第 7 項之規定，惟根據法院判決取消該課賦課徵金處分，而判決理由中有課賦新的課徵金時，以當初已繳納之課徵金扣抵新的課徵金，並僅就剩餘額計算返還滯納金¹⁶⁰併予返還。

¹⁶⁰ 「환급가산금」漢字為「還給加算金」，指稅金、滯納金、滯納稅金、徵收金等因誤算致有返還之情事，自誤繳之次日起算利率並加計應返還金併予返還。

제 7 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第 7 章 個人情報紛爭調停委員會

제 40 조(설치 및 구성)

第 40 條 (程序暨組成)

-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① 設置個人情報紛爭調停委員會(以下稱「紛爭調停委員會」)以調停個人情報相關紛爭。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한 2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紛爭調停委員會由1名委員長及20名以內之委員組成，委員由當然委員及委囑¹⁶¹委員組成。
-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 ③ 委囑委員由保護委員會委員長自符合下列任一款者中委囑，當然委員則依大統領令所定之隸屬於國家機關之公務員擔任。
 1.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경험한 사람
 1. 曾任主管個人情報保護業務之中央行政機關高階公務員團之公務員，且現任或曾任職於多數個人情報保護之公共部門暨相關團體，並具有個人情報保護業務之經驗者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現任或曾任於大學或經公認之研究機關副教授以上職位或與之相當職位者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曾任或現任法官・檢察官及律師之人

¹⁶¹ 「위촉」의 漢字為「委囑」，即將一定的事務託付他人之意，與我國委任相似。

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獲得個人情報保護相關之市民社會團體及消費者團體推薦之人
5.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曾任或現任由個人情報處理者組成之事業家團體中之管理人員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委員長由保護委員會委員長自不具公務員身分之委員中委囑。
- ⑤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委員長與委囑委員之任期為兩年，得連任一次。
-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 ⑥ 紛爭調停委員會為有效執行紛爭調停業務，於必要時應依大統領令所定區分調停事件，並由5名以內委員組成調停部予以負責。於此情況，調停部所議決之事項視為紛爭調停委員會議決之事項。
- ⑦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紛爭調停委員會及調停部由過半數在職委員出席進行開議，並以出席委員過半數之贊成為決議。
- ⑧ 보호위원회는 분쟁조정 접수, 사실 확인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⑧ 保護委員會得處理紛爭調停之受理、確認事實等與紛爭調停有關之必要事務。
- ⑨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⑨ 紛爭調停委員會運作之必要事項，本法未規定者以大統領令定之。

제 41 조(위원의 신분보장)

第 41 條（委員的身分保障）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委員除有受褫奪資格以上之刑之宣告或因身心障礙而無法履行職務外，不得違反其意願予以免職或解除職務。

제 42 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第 42 條（委員之除斥・忌避・迴避）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43 조제 1 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① 委員符合下列各款之一者，應自行依第 43 條第 1 項向紛爭調停委員會聲請於紛爭調停事件（於本條以下稱「事件」）之審議・議決中除斥。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 委員或其配偶或曾為配偶者為該事件當事人，或與該事件有共同權利者或義務者關係之情形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委員與該事件當事人有親族關係或曾有親族關係之情形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3. 委員就該事件曾提供證詞、鑑定、法律諮詢之情形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委員擔任或曾任該事件相關當事人之代理人之情形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② 當事人有難以期待委員公正審議・議決時，得對該委員提出忌避聲請。於此情況，委員長應自行對該忌避聲請立即下決定，不得將該聲請交由紛爭調停委員會議決。

- ③ 위원이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③ 委員有第 1 項或第 2 項事由者，得自行迴避該事件之審議・議決。

제43조(조정 신청 등)

第 43 條 (調停之聲請等)

- 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① 有意願就個人情報相關紛爭調停者，得向紛爭調停委員會聲請紛爭調停。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② 紛爭調停委員會受理一方之紛爭調停聲請時，應將該聲請內容向另一方告知。
- ③ 공공기관이 제 2 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 ③ 公共機關依第 2 項收到紛爭調停通知時，若無特別事由應回應該紛爭調停。

제 44 조(처리기간)

第 44 條 (處理時間)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 43 조제 1 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① 紛爭調停委員會應於受理依第 43 條第 1 項聲請紛爭調停之日起 60 內對該聲請進行審查並撰擬調停案。但有不得已之事由時，得由紛爭調停委員會議決後將處理期間延長。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 1 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② 紛爭調停委員會有依第 1 項但書延長處理期間之情形，應將延長期間事由及其他期間延長之相關事項向聲請人告知。

제 45 조(자료의 요청 등)

第 45 條（資料的請求等）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① 紛爭調停委員會依第43條第1項於接收紛爭調停聲請時，得向紛爭當事人請求必要資料以調停紛爭。於此情況，紛爭當事人若無正當理由應依該請求辦理。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紛爭調停委員會認有必要時，得使紛爭當事人以參考人身份出席委員會並聽取其意見。

제 46 조(조정 전 합의 권고)

第 46 條（調停前協議勸告）

분쟁조정위원회는 제 43 조제 1 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紛爭調停委員會依第43條第1項於接收紛爭調停聲請時，應提示內容予當事人，並得勸告調停前協議。

제 47 조(분쟁의 조정)

第 47 條（紛爭之調停）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 ① 紛爭調停委員會得擬定包含下列各款任一事項之調停方案。
1.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1. 調查對象侵害行為之中止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2. 回復原狀、損害賠償、其他必要具體措施
 3.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必要措施以防止相同或相似之侵害再發生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② 紛爭調停委員會如依第 1 項擬定調停方案，應立即向各當事人提出，不得遲

延。

- ③ 제 1 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 ③ 受領第 1 項調停方案之當事人，自受領之日起算 15 天內未告知接受與否，則視為拒絕該調停方案。
- ④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④ 當事人接受調停內容時，紛爭調停委員會撰擬調停書，並應由紛爭調停委員會之委員長與各當事人簽名蓋章。
- ⑤ 제 4 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⑤ 根據第 4 項之調停內容與裁判上調解具有同一效力。

제 48 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第 48 條（拒絕調停與中止）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① 紛爭調停委員會認定該紛爭本質上不適合於紛爭調停委員會進行調停，或該調停之聲請被認定為有不正目的時，得拒絕該調停。於此情形，應將該拒絕調停之事由等向聲請人告知。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② 紛爭調停委員會對聲請調停之事件進行處理程序中，如一方當事人提出訴訟，則應中止該調停並告知當事人。

제 49 조(집단분쟁조정)

第 49 條（集體紛爭調停）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 ① 國家暨地方自治團體、個人情報保護團體暨機關、情報當事人，及個人情報處理者，對多數情報當事人或相同或相似類型發生損害或侵害權利時，得依大統領令所定之事件向紛爭調停委員會聲請或囑託概括性紛爭調停（以下稱「集體紛爭調停」）。
- ②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紛爭調停委員會依前項受到集體紛爭調停之囑託及聲請，由紛爭調停委員會議決，並得依第3項至第7項之規定提出集體紛爭調停程序。於此情形，紛爭調停委員會應於大統領令所定之期間內公告該提出之程序。
-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 정보처리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③ 紛爭調停委員會得受理非集體紛爭調停當事人之情報當事人或個人情報處理者之聲請，使其以當事人身分被納入該紛爭調停。
-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 ④ 紛爭調停委員會得自第1項及第3項所定集體紛爭調停之當事人中，以議決方式選任最適之1名或數名作為代表共同利益之代表當事人。
-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⑤ 紛爭調解委員會得勸告個人情報處理者於接受紛爭調停委員會之集體紛爭調停內容時，對非屬集體紛爭調停之當事人而有受損害之情報當事人撰擬賠償計畫書，並提交予紛爭調解委員會。
- ⑥ 제4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주체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 ⑥ 當集體紛爭調停當事人中有部分情報當事人向法院開啟訴訟程序時，紛爭調

停委員會無須依第48條第2項規定中止該調查程序，只須將開啟訴訟之情報當事人排除於程序之外。

- ⑦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集體紛爭調停之期間自依第2項公告日屆滿之次日起算60日。但有不得已之情事時，得由紛爭調停委員會議決延長處理期間。
- ⑧ 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關於集體紛爭調停之程序等必要事項由大統領令定之。

제 50 조(조정절차 등)

第 50 條 (調停程序等)

- ① 제 43 조부터 제 49 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除第43條至第49條所定規則外，其他紛爭調停辦法、調停程序暨調停業務之處理等必要事項，以大統領令定之。
-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 ② 有關紛爭調停委員會之運作暨紛爭調停程序，本法未定之事項準用「民事調停法」¹⁶²。

¹⁶² 「民事調停法」是韓國專門針對民事案件之調解程序所設計之法典，其立法目的係積極尊重當事人之自主、自律解決紛爭，並妥善、公正、迅速，及有效的解決紛爭。

제 8 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第 8 章 個人情報團體訴訟

제 51 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第 51 條 (團體訴訟的對象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49 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 결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當個人情報處理者拒絕進行第 49 條之集團紛爭調停，或對集團紛爭調停之結果不予承認時，符合下列任一款之團體者得向法院就權利侵害行為之禁止・中止聲請救濟訴訟（以下稱「團體訴訟」）。

1. 「소비자기본법」 제 29 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1. 依「消費者基本法」第 29 條規定在公平交易委員會註冊且下列各目均符合之消費者團體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1) 團體章程係經常性以增進情報當事人權益為主要目的之團體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 천명 이상일 것

(2) 正式會員人數達 1 千名以上之團體

다. 「소비자기본법」 제 29 조에 따른 등록 후 3 년이 경과하였을 것

(3) 依「消費者基本法」第 29 條規定於註冊後經過 3 年之團體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 2 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2. 依「非營利民間團體支援法」第 2 條規定且下列各目均符合之非營利民間團體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 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1) 自同一法律上或事實上原因被害之 100 名以上情報當事人處，取得提起團體訴訟請求之團體

나.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 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2) 團體章程明示以個人情報保護為目的，且最近 3 年以上均有保護活動事實之團體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 천명 이상일 것

(3) 通常組成員超過 5000 名以上之團體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4) 在中央行政機關註冊之團體

제 52 조(전속관할)

第 52 條（專屬管轄）

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① 由該團體訴訟被告之主要辦事處或營業所所在地之法院管轄，若無主要辦事處或營業所時，由被告之主要業務負責人住所所在地之地方法院本院合議庭管轄。

② 제 1 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② 外國事業者有適用前項情形時，以該事業在大韓民國之主要辦事處・營業所或業務負責人之住所定之。

제 53 조(소송대리인의 선임)

第 53 條（訴訟代理人之選任）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團體訴訟之原告應選任律師作為訴訟代理人。

제 54 조(소송허가신청)

第 54 條（訴訟許可聲請）

①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欲開啟團體訴訟之團體應向法院提出書狀及記載下列各款事項之訴訟許可聲請書。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1. 原告暨其訴訟代理人

2. 피고

2. 被告
 3.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3. 情報當事人權利被侵害之內容
- ② 제 1 항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前項之訴訟許可聲請書應併附下列各款資料。
1. 소제기단체가 제 51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1. 說明該起訴團體已具備第 51 條各款任一條件之資料
 2.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證明個人情報處理者拒絕調停或對調停結果不予承認之文件

제 55 조(소송허가요건 등)

第 55 條 (訴訟許可條件等)

-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 ① 具備下列各款條件時，法院裁定准予提起團體訴訟。
1.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을 것
 1. 個人情報處理者拒絕紛爭調停委員會之調停或對調停結果不予承認
 2. 제 54 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2. 依第 54 條提出之訴訟許可聲請書其記載事項無缺漏
- ②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② 得即時對團體訴訟之許可或不許可之裁定提起抗告。

제 56 조(확정판결의 효력)

第 56 條 (確定判決の效力)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 51 조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原告之請求被判決駁回確定時，符合第 51 條之其他團體不得以同一事由再開團體訴訟。但符合下列任一款時不在此限。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1. 與該事由相關聯之國家·地方自治團體或國家·地方自治團體所成立之機關，
在確定判決後有新證據出現時
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2. 駁回判決係因原告故意所致

제 57 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第 57 條(「民事訴訟法」之適用等)

- ①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 ① 團體訴訟於本法無特別規定時，適用「民事訴訟法」之規定。
- ② 제 55 조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 4 편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依第 55 條提出之團體訴訟獲許可判決時，得依「民事執行法」第 4 篇為保全處分。
- ③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③ 關於團體訴訟程序之必要事項以大法院規則定之。

제 9 장 보칙

第 9 章 補則

제 58 조(적용의 일부 제외)

第 58 條（部分適用除外）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 3 장부터 제 7 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個人情報符合下列各款之一者，不適用第 3 章至第 7 章。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1. 公共機關處理之個人情報中依「統計法」而蒐集之個人情報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2. 以國家安全保障之情報分析為目的而蒐集或被要求提供之個人情報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3. 為確保公眾衛生等公共之安全與秩序，因緊急必要而臨時性處理之個人情報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4. 媒體、宗教團體、政黨為了實現取材·報導、宣教、推薦候選人等固有目的而蒐集·利用之個人情報

② 제 25 조제 1 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제 15 조, 제 22 조, 제 27 조제 1 항·제 2 항, 제 34 조 및 제 37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對於依第 25 條第 1 項各款已公開設置·運作場所之影像情報處理機器所處理之個人情報，不適用第 15 條、第 22 條、第 27 條第 1 項·第 2 項、第 34 條及第 37 條之規定。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 15 조, 제 30 조 및 제 31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個人情報處理者為經營同窗會、同好會等聯誼團體而處理個人情報時，不適用第 15 條、第 30 條及第 31 條之規定。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1 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個人情報處理者根據第 1 項各款處理個人情報時，應為達成目的而於必要範圍內以最短時間處理最少之個人情報，並應設置技術性・管理性暨物理性之必要保護措施、有關處理個人情報之申訴，及其他為妥適處理個人情報之必要措施等，以使個人情報得安全被管理。

제 58 조의 2(적용제외)

第 58 條之 2 (適用除外)

이 법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以合理之時間・費用・技術予以評估，當使用其他情報也無法識別個人之情報，即不適用本法。

제 59 조(금지행위)

第 59 條 (禁止行為)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現在或曾經處理個人情報者不得為下列各款任一行為。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1. 以虛假或其他不正手段或方式取得個人情報或得到關於處理同意之行為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2. 漏洩¹⁶³業務上所知之個人情報或無權限卻使他人提供之行為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3. 無正當權限或逾越許可權限而毀損、滅失、變更、偽造、或洩漏他人個人情

¹⁶³ 「누설」的漢字為「漏洩」，即洩漏，惟因本法其他條文用字「유출」即流出之意，譯為洩漏，本報告為予以區別，仍維持漏洩的用字，以下同。

제 60 조(비밀유지 등)

第 60 條 (秘密維持等)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現在或曾經從事下列各款業務者，不得對他人漏洩職務上已知之秘密或以職務外之目的利用該秘密。但其他法律有特別規定時不在此限。

1. 제7조의8 및 제7조의9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1. 第7條之8及第7條之9所定之保護委員會之業務

1 의 2. 제 32 조의 2 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업무

1 之 2 第 32 條之 2 所定個人情報保護認證之業務

2. 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2. 第33條所定之影響評價業務

3. 제40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3. 第40條所定之紛爭調停委員會之紛爭調停業務

제 61 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第 61 條 (意見提出暨改善勸告)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이나 조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保護委員會如認為法令或條例之內容對個人情報保護有影響而必須進行審議・議決，得對關係機關提出意見。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保護委員會如認定為保護個人情報所必要，得對個人情報處理者就個人情報處理實態勸告改善。於此情形，被勸告之個人情報處理者應誠摯地努力執行該等勸告，並將措施結果告知保護委員會。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③ 相關中央行政機關首長如認定為保護個人情報所必要·依所適用法律得對個人情報處理者就個人情報處理實態勸告改善。於此情形，被勸告之個人情報處理者應誠摯地努力執行該等勸告，並將措施結果告知相關中央行政機關首長。
- ④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 ④ 中央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國會、法院、憲法裁判所、中央選舉管理委員會得對其等所屬機關暨所屬公共機關就個人情報保護提出相關意見或指導·查檢。

제 62 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第 62 條 (侵害事實之申告¹⁶⁴等)

-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① 個人情報處理者於處理個人情報時，個人情報之權利或利益受侵害之人得將該被侵害事實向保護委員會提出申告。
- ② 보호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保護委員會得依大統領令指定專門機關以有效履行前項所定申告之受理·處理等相關業務。於此情形，該專門機關應設置·運作個人情報侵害申告中心（以下稱「申告中心」）。
-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申告中心執行下列各款業務。
 -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상담
 - 1. 受理·諮詢與處理個人情報相關之申告
 - 2. 사실의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 2. 事實之調查·確認暨聽取關係者之意見

¹⁶⁴ 這裡的申告與我國的申訴意思相近。

3.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업무에 딸린 업무

3. 第 1 款及第 2 款所定業務之附隨業務

- ④ 보호위원회는 제 3 항제 2 호의 사실 조사·확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공무원법」 제 32 조의 4 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제 2 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 ④ 為有效進行第 3 項第 2 款之事實調查·確認等業務，保護委員會於必要時得將其依國家公務員法第 32 條之 4 所定之所屬公務員派駐於第 2 項所定之專門機關。

제 63 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第 63 條 (資料提出要求暨稽查)

-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① 個人情報處理者符合下列各款情形之一者，保護委員會得要求其提出相關物品·書類等資料。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1. 發覺有違反本法所定之事項或得知有嫌疑之時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2. 接獲違反本法之申告或陳情¹⁶⁵時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其他為保護情報當事人之個人情報所必要以大統領令定之事項
-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1 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② 若個人情報處理者未依前項提出資料或被證實有違反本法時，保護委員會應使所屬公務員得出入該個人情報處理者暨與違法事實有關人員之事務所或工作場所調查業務狀況、帳簿或書類等。於此情形下，執行調查之公務員應

¹⁶⁵ 「민원」漢字為「民願」或「民怨」，主要是人民的願望或怨望，本條文在此與我國陳情意思相近，故譯為陳情。

持有並向相關人員出示有調查權之證明。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 1 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에 대하여 제 2 항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
- ③ 相關中央行政機關首長得依其適用之法律，向個人情報處理者依第 1 項規定要求提出資料，或依第 2 項規定向個人情報處理者暨與違法事實有關人員執行調查。
- ④ 보호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검사권한을 수행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한다)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보호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이 해당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於發覺有違反本法所定之事項或得知有嫌疑之時，保護委員會得向中央行政機關首長（指取得所屬中央行政機關指揮・監督並執行調查權之法人）劃定可對個人情報處理者請求調查之具體範圍，於必要時保護委員會所屬之公務員得提出參與共同調查之請求。於此情形下，除有其他特別事由，被要求之相關中央行政機關首長應遵循之。
- ⑤ 보호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검사권한을 수행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한다)에게 제 4 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거나, 처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⑤ 保護委員會得向中央行政機關首長（若法人取得該中央行政機關指揮・監督並執行調查權，則指該法人）請求提出依第 4 項規定之調查結果而對相關之個人情報處理者之糾正措施或相關處罰意見。
- ⑥ 제 4 항 및 제 5 항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就第 4 項及第 5 項之辦法與程序等相關事項以大統領令定之。
- ⑦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⑦ 為預防及有效因應侵害事故，保護委員會得會同相關中央行政機關首長以查

檢個人情報保護實態。

- ⑧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제출 받거나 수집한 서류·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⑧ 依第 1 項及第 2 項取得或蒐集之文件·資料等，除本法有除外規定，保護委員會與相關中央行政機關首長不得向第 3 方提供或對一般大眾公開。
- ⑨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⑨ 保護委員會與相關中央行政機關首長應採行制度性·技術性之補正措施，以確保透過情報通信網接收資料等或蒐集之資料等電子化後，個人情報·營業秘密等不會被流出。

제 64 조(시정조치 등)

第 64 條 (糾正措施等)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① 保護委員會認定有相當證據可判斷個人情報被侵害，且若擱置不理有造成難以回復損害之虞，得對違反本法者（中央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國會、法院、憲法裁判所、中央選舉管理委員會等除外）為下列各款之命令。
 - 1.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 1. 個人情報侵害行為之中止
 - 2.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 2. 個人情報處理之暫時性停止
 -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3. 其他為個人情報之保護暨侵害預防所必要之措施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相關中央行政機關首長認定有相當證據可判斷個人情報被侵害，且若擱置不理有造成難以回復損害之虞，得依所適用法律對個人情報處理者為第 1 項各款之命令。
- ③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地方自治團體、國會、法院、憲法裁判所、中央選舉管理委員會，就其等管轄機關暨所管公共機關有違反本法時，得為第 1 項各款之命令。
- ④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④ 中央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國會、法院、憲法裁判所、中央選舉管理委員會等，有違反本法時，保護委員會得勸告該機關之首長採取第 1 項各款措施。於此情形，受勸告之機關若無特別事由即應遵守。

제 65 조(고발 및 징계권고)

第 65 條 (告發暨懲戒勸告)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 ① 當個人情報處理者違反本法等與個人情報保護相關之法規，並有相當理由得認定犯罪嫌疑時，保護委員會得將該違反內容向有搜查權之機關告發。
- ② 보호위원회는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를 징계할 것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有違反本法等與個人情報保護相關法規之行為，並有相當理由足以認定時，保護委員會得勸告個人情報處理者對該有責者(包含代表人暨應負責之職員)予以懲戒。於此情形，受到勸告之人應遵守該勸告並將結果通報保護委員會。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발을 하거나 소속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相關中央行政機關首長依所適用法律對個人情報處理者依第1項告發或得對所管轄機關·團體等之首長依第2項提出懲戒勸告。於此情形，受到第2項勸告之人應遵守該勸告並將結果通報相關中央行政機關首長。

제 66 조(결과의 공표)

第 66 條（結果之公布）

- ① 보호위원회는 제 61 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 64 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 65 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 75 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の内容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 ① 保護委員會得公布其依第 61 條提出改善勸告、第 64 條為糾正措施命令、第 65 條告發或懲戒勸告及第 75 條課以過怠料之內容及結果。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제 1 항에 따른 공표를 할 수 있다.
- ② 相關中央行政機關首長得依管轄法律之規定，公布前項所定內容。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第 1 項及第 2 項之公布辦法、基準暨程序等以大統領令定之。

제 67 조(연차보고)

第 67 條（年度報告）

- ① 보호위원회는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최 전까지 국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① 保護委員會應每年自相關機關等處取得已製成之有關樹立及施行個人情報保護施策之報告書，並於定期會開議¹⁶⁶前向國會提出（包含透過情報通信網提出）
- ② 제 1 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¹⁶⁶ 指國會的定期會。

② 依前項製成之報告書內容應包含下列各款。

1.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및 그 구제현황
1. 情報當事人の權利侵害暨其具體現況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결과
2. 關於個人情報處理之實態調查等之結果
3.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추진현황 및 실적
3. 個人情報保護施策之促進現況暨實績
4. 개인정보 관련 해외의 입법 및 정책 동향
4. 有關個人情報之海外立法暨政策動向
5.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의 제정·개정 현황
5. 制定・修訂與處理住民登錄號碼相關法律・大統領令・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暨監察院規則之現況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시책에 관하여 공개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
6. 其他有關個人情報保護施策公開或應保護之事項

제 68 조(권한의 위임·위탁)

第 68 條（權限之委任・委託）

- ① 이 법에 따른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① 保護委員會或相關中央行政機關首長依本法所定之權限得部分委任或委託予依大統領令所定之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或大統領令所定之專門機關。
- ② 제 1 항에 따라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依第 1 項規定取得保護委員會或相關中央行政機關首長之權限委託或委任之機關，應將受任或受託業務之處理結果通報予保護委員會或相關中央行政機關。

關首長。

- ③ 보호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③ 保護委員會依第 1 項所定而將部分權限對專門機關委任或委託時，為該專門機關執行業務所必要得提供經費捐助。

제 69 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第 69 條（罰則適用時之公務員擬制）

- ① 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① 保護委員會中不具公務員身分之委員暨職員，有適用「刑法」及其他法之罰則時，視為公務員。
- ②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 129 조부터 제 132 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② 從事保護委員會或相關中央行政機關首長之權限委託業務之關係機關，該機關所屬之職員有適用「刑法」第 129 條至 132 條規定時，視為公務員。

제 10 장 벌칙

第 10 章 罰則

제 70 조(벌칙)

第 70 條 (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符合下列各款之一者，處 10 年以下有期徒刑，併科 1 億韓圓以下罰金。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1. 以妨害個人情報處理業務為目的而向公共機關變更或刪除處理中的個人情報，導致公共機關執行業務有中斷・癱瘓等重大障礙者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
2. 藉由虛偽或其他不正手段或方法取得他人處理中之個人情報後，意圖營利及以不正目的向第 3 方提供者，以及該教唆・斡旋¹⁶⁷之人

제 71 조(벌칙)

第 71 條 (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符合下列各款之一者，處 5 年以下有期徒刑，併科 5 千萬韓圓以下罰金。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 不符第 17 條第 1 項第 2 款並違反同條項第 1 款，未取得情報當事人同意即將個人情報向第 3 方提供者，以及明知前揭事由仍接收該個人情報者
2. 제18조제1항·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

¹⁶⁷ 「알선」漢字為「斡旋」，即對他人的事提供幫助或媒介之意。韓國有所謂的斡旋罪，例如明知是贓物仍提供買賣周轉，即屬一種斡旋罪。

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違反第 18 條第 1 項・第 2 項（包含依第 39 條之 14 規定準用時）、第 19 條、第 26 條第 5 項、第 27 條第 3 項，以及第 28 條之 2，利用個人情報或向第 3 方提供者，以及明知前揭事由並仍以不正目的接收該個人情報者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3. 違反第 23 條第 1 項，處理敏感情報者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4. 違反第 24 條第 1 項，處理固有識別情報者
- 4 의 2. 제 28 조의 3 을 위반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
- 4 之 2. 違反第 28 條之 3，處理個人情報或向第 3 方提供者
- 4 의 3. 제 28 조의 5 제 1 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 4 之 3. 違反第 28 條之 5 第 1 項，為識別特定個人為目的而進行假名情報處理者
- 4 의 4. 제 36 조제 2 항(제 27 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와 제 39 조의 14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제 38 조제 2 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 3 자에게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 4 之 4. 違反第 36 條第 2 項（包含依第 27 條自情報通信服務提供者處受領被移轉之個人情報者，及依第 39 條之 14 規定準用時），未為更正・刪除等必要措施（包含依第 38 條第 2 項閱覽等要求之必要措施）而利用個人情報或向第 3 方提供之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
- 4 의 5. 제 39 조의 3 제 1 항(제 39 조의 14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4 之 5. 違反第 39 條之 3 第 1 項（包含依第 39 條之 14 規定準用時）未取得使用者同意仍蒐集個人情報者
- 4 의 6. 제 39 조의 3 제 4 항(제 39 조의 14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 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

보를 수집한 자

4之6. 違反第39條之3第4項(包含依第39條之14規定準用時)未取得法定代理人同意或未確認法定代理人是否曾經同意而蒐集14歲以下兒童之個人情報者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5. 違反第59條第2款洩洩業務上已知悉之個人情報或未經授權即提供給他人利用者, 以及明知前揭事由卻仍以營利或不正目的而取得個人情報者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6. 違反第59條第3款有毀損、滅失、變更、偽造或洩漏他人之個人情報

제 72 조(벌칙)

第 72 條 (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符合下列各款之一者, 處3年以下有期徒刑, 併科3千萬韓圓以下罰金。

1. 제 25 조제 5 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1. 違反第25條第5項之設置影像情報處理機器目的並以其他目的任意操作影像情報處理機器, 或拍攝其他地方¹⁶⁸者, 以及使用錄音功能者

2. 제 59 조제 1 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違反第59條第1款以虛假或其他負面手段或方法而取得個人情報或獲得個人情報處理之相關同意者, 以及明知前揭事由卻仍以營利或不正目的而得到該個人情報者

3. 제 60 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¹⁶⁸ 此條文所稱拍攝其他地方, 意指原有的拍攝場所是A地方, 卻故意移轉鏡頭改拍攝B地方。

에 이용한 자

3. 違反第 60 條洩洩職務上可知之秘密或利用於職務目的外者

제 73 조(벌칙)

第 73 條 (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符合下列各款之一者，處 2 年以下有期徒刑，併科 2 千萬韓圓以下罰金。

1. 제 23 조제 2 항, 제 24 조제 3 항, 제 25 조제 6 항, 제 28 조의 4 제 1 항 또는 제 29 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1. 違反第 23 條第 2 項、第 24 條第 3 項、第 25 條第 6 項、第 28 條之 4 第 1 項，以及第 29 條，未設置安全維護必要措施致個人情報遭到遺失·竊取·洩漏·偽造·變造及毀損者

1 의 2. 제 21 조제 1 항(제 39 조의 14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과기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1 之 2. 違反第 21 條第 1 項 (包含依第 39 條之 14 規定準用時)，未銷毀個人情報之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

2. 제 36 조제 2 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 3 자에게 제공한 자

2. 違反第 36 條第 2 項，未設置更正·刪除等必要措施，而持續利用個人情報或向第 3 方提供者

3. 제 37 조제 2 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한 자

3. 違反第 37 條第 2 項，未停止個人情報的處理而持續利用或向第 3 方提供者

제 74 조(양벌규정)

第 74 條 (兩罰規定)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70 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法人之代表人、法人或個人之代理人、使用人，以及其他從業員，就關於該法人或個人業務有為第 70 條所定之行為時，除對該行為人處罰外，對該法人或個人課處 7 千萬韓圀以下之罰金。但法人或個人為防止該違反行為已於業務上盡相當之注意及監督且無懈怠之情形，不在此限。
-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71 조부터 제 73 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 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法人之代表人、法人或個人之代理人、使用人，以及其他從業員，就關於該法人或個人業務有為第 71 條至第 73 條所定之任一違反行為時，除對該行為人處罰外，對該法人或個人應科以該條文之罰金刑。但法人或個人為防止該違反行為已於業務上盡相當之注意及監督且無懈怠之情形，不在此限。

제 74 조의 2(몰수·추징 등)

第 74 條之 2 (沒收・追徵等)

제 70 조부터 제 73 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得沒收犯第 70 條至第 73 條所定任一罪者與該違反行為相關而取得之商品或其他利益，若有無法沒收之情事時，得追徵其價額。於此情形，沒收或追徵得附加於其他罰則中併予科處。

제 75 조(과태료)

第 75 條 (過怠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① 有下列各款行為之一者，課賦 5 千萬韓圀以下之過怠料。
1. 제 15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1. 違反第 15 條第 1 項蒐集個人情報者
 2. 제 22 조제 6 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2. 違反第 22 條第 6 項未取得法定代理人之同意者

3. 제 25 조제 2 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3. 違反第 25 條第 2 項設置·運作影像情報處理機器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有下列各款行為之一者，課賦 3 千萬韓圓以下之過怠料。

1. 제 15 조제 2 항, 제 17 조제 2 항, 제 18 조제 3 항 또는 제 26 조제 3 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 違反第 15 條第 2 項、第 17 條第 2 項、第 18 條第 3 項或第 26 條第 3 項未對情報當事人告知應告知事項者

2. 제 16 조제 3 항 또는 제 22 조제 5 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違反第 16 條第 3 項或第 22 條第 5 項，拒絕提供商品或服務者

3. 제 20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3. 違反第 20 條第 1 項或第 2 項，未將同項各款事實告知情報當事人者

4. 제 21 조제 1 항·제 39 조의 6(제 39 조의 14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違反第 21 條第 1 項·第 39 條之 6 (包含依第 39 條之 14 規定準用時)未為銷毀個人情報等必要措施者

4 의 2. 제 24 조의 2 제 1 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4 之 2. 違反第 24 條之 2 第 1 項處理住民登錄號碼者

4 의 3. 제 24 조의 2 제 2 항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之 3. 違反第 24 條之 2 第 2 項未履行加密措施者

5. 제 24 조의 2 제 3 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5. 違反第 24 條之 2 第 3 項未對情報當事人提出得不利用其住民登錄號碼之方法者

6. 제 23 조제 2 항, 제 24 조제 3 항, 제 25 조제 6 항, 제 28 조의 4 제 1 항 또는 제 29 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違反第 23 條第 2 項、第 24 條第 3 項、第 25 條第 6 項、第 28 條之 4 第 1 項或第 29 條未設置安全維護必要措施者

7. 제 25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7. 違反第 25 條第 1 項設置・運作影像情報處理機器者
- 7 의 2. 제 28 조의 5 제 2 항을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회수·파기하지 아니한 자
- 7 之 2. 違反第 28 條之 5 第 2 項產生識別特定個人之情報卻未中止利用或將該情報毀損・銷毀者
- 7 의 3. 제 32 조의 2 제 6 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 7 之 3. 違反第 32 條之 2 第 6 項未曾取得認證或將虛偽之認證內容作為標示或宣傳者
8. 제 34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8. 違反第 34 條第 1 項未將同項各款事實告知情報當事人者
9. 제 34 조제 3 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9. 違反第 34 條第 3 項未申告措施結果者
10. 제 35 조제 3 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10. 違反第 35 條第 3 項限制閱覽或拒絕者
11. 제 36 조제 2 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1. 違反第 36 條第 2 項未設置更正・刪除等必要措施者
12. 제 37 조제 4 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2. 違反第 37 條第 4 項未對被停止處理之個人情報為銷毀等必要措施者
- 12 의 2. 제 39 조의 3 제 3 항(제 39 조의 14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 12 之 2. 違反第 39 條之 3 第 3 項(包含依第 39 條之 14 規定準用時)拒絕提供服務者
- 12 의 3. 제 39 조의 4 제 1 항(제 39 조의 14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 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자
- 12 之 3. 違反第 39 條之 4 第 1 項(包含依第 39 條之 14 規定準用時)未向

使用者・保護委員會暨專門機關通知或申告，或無正當事由於 24 小時經過後始通知或申告者

12 의 4. 제 39 조의 4 제 3 항을 위반하여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2 之 4. 違反第 39 條之 4 第 3 項未說明或虛偽不實者

12 의 5. 제 39 조의 7 제 2 항(제 39 조의 14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동의 철회·열람·정정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12 之 5. 違反第 39 條之 7 第 2 項（包含依第 39 條之 14 規定準用時）未提供個人情報之撤回同意・閱覽・更正之辦法者

12 의 6. 제 39 조의 7 제 3 항(제 39 조의 14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와 제 27 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12 之 6. 違反第 39 條之 7 第 3 項（包含依第 39 條之 14 規定準用時及依第 27 條自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處而受領被移轉之個人情報者），未設置必要措施之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

12 의 7. 제 39 조의 8 제 1 항 본문(제 39 조의 14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12 之 7. 違反第 39 條之 8 第 1 項本文（包含依第 39 條之 14 規定準用時）未通知個人情報之利用內容

12 의 8. 제 39 조의 12 제 4 항(같은 조 제 5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2 之 8. 違反第 39 條之 12 第 4 項（包含依同條第 5 項規定準用時）未設置保護措施者

13. 제 64 조제 1 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3. 未遵從第 64 條第 1 項之糾正命令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有下列各款行為之一者，課賦2千萬韓圀以下之過怠料。

1. 제 39 조의 9 제 1 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 違反第 39 條之 9 第 1 項未有保險或加入公債、提撥準備金等必要措施者
2. 제 39 조의 11 제 1 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違反第 39 條之 11 第 1 項未指定國內代理人者
3. 제 39 조의 12 제 2 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 39 조의 12 제 3 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국외에 처리위탁·보관한 자
3. 違反第 39 條之 12 第 2 項但書公開第 39 條之 12 第 3 項各款全部事項者，或未對使用者告知即將使用者之個人情報向國外委託處理・保管者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有下列各款行為之一者，課賦1千萬韓圓以下之過怠料。
1. 제 21 조제 3 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
1. 違反第 21 條第 3 項未對個人情報分開儲存・管理者
2. 제 22 조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2. 違反第 22 條第 1 項至第 4 項之規定取得同意者
3. 제 25 조제 4 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違反第 25 條第 4 項未設置告示欄等必要措施者
4. 제 26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4. 違反第 26 條第 1 項委託業務之文書內容未包含同項各款所定者
5. 제 26 조제 2 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5. 違反第 26 條第 2 項未公開委託業務之內容及受託者
6. 제 27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6. 違反第 27 條第 1 項或第 2 項未對情報當事人告知移轉個人情報之事實
- 6 의 2. 제 28 조의 4 제 2 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 6 之 2. 違反第 28 條之 4 第 2 項未製作紀錄並保管者

7. 제 30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7. 違反第 30 條第 1 項或第 2 項未制定個人情報處理方針或未公開該處理方針者
 8. 제 31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8. 違反第 31 條第 1 項未指定個人情報保護責任者
 9. 제 35 조제 3 항 · 제 4 항, 제 36 조제 2 항 · 제 4 항 또는 제 37 조제 3 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9. 違反第 35 條第 3 項 · 第 4 項、第 36 條第 2 項 · 第 4 項或第 37 條第 3 項應告知情報當事人之事項未告知者
 10. 제 63 조제 1 항에 따른 관계 물품 · 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 未依第 63 條第 1 項提出物品 · 文件等資料或以虛假方式提出者
 11. 제 63 조제 2 항에 따른 출입 ·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對第 63 條第 2 項所定之出入 · 查檢有拒絕 · 妨礙或忌避者
- ⑤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 · 징수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한다.
- ⑤ 第 1 項至第 4 項規定之過怠料以大統領令所定由保護委員會與相關中央行政機關首長課賦或徵收。於此情形，相關中央行政機關首長對所管轄領域之個人情報處理者課賦 · 徵收過怠料。

제 76 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第 76 條 (適用過怠料相關規定之特例)

제 75 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 34 조의 2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適用第 75 條所定之過怠料相關規定時，對已依第 34 條之 2 被課賦課徵金之行為不得課賦過怠料。

부칙

附則

제 1 조(시행일)

第 1 條 (施行日)

이 법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本法自公布之日起 6 個月後施行。

제 2 조(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第 2 條 (有關委員任期過渡措施)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보호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이 법 시행 전일 만료된 것으로 본다.

依舊法被任命之保護委員會委員，以本法施行日之前一日視為任期屆滿日。

제 3 조(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第 3 條 (因權能調整而有關所管事務等過渡措施)

① 이 법 시행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1 조제 1 항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보호위원회가 승계한다.

① 「放送通信委員會之設置暨運作相關法律」第 11 條第 1 項所定之放送通信委員會之所管事務中關於個人情報保護事務，本法施行時依本法由保護委員會承繼¹⁶⁹。

②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 7 조의 8 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는 보호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本法施行時，依舊法行政安全部部長所管之事務中，屬新法第 7 條之 8 修正規定之事務，本法施行時依本法由保護委員會承繼。

③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위와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보호위원회의 행위 또는 보호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¹⁶⁹ 「승계」的漢字為「承繼」，即承接繼承之意。

- ③ 新法施行前行政安全部部長執行之告示・行政處分，其他行政安全部部長之行為，以及對行政安全部部長聲請・申告，此揭所管事務依新法規定，自行政安全部部長移權予保護委員會之事項或行為，本法施行後依本法視為保護委員會之行為或對保護委員會之行為。
- ④ 이 법 시행 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신고 등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행위 중 그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행위 또는 보호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 ④ 新法施行前放送通信委員會執行之告示・行政處分，其他對放送通信委員會為之行為與申告等，此揭所管事務依新法規定，自放送通信委員會移權予保護委員會之事項或行為，本法施行後依本法視為保護委員會之行為或對保護委員會之行為。
- ⑤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⑤ 本法施行時，依舊法隸屬行政安全部・放送通信委員會之公務人員中依大統領令定之公務員，該公務員依新法視為隸屬於保護委員會之公務員。

제 4 조(보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第 4 條（有關保護委員會過渡措施）

-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행위나 보호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행위나 보호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 ① 本法施行時，依舊法保護委員會之行為或對保護委員會之行為，本法施行後依本法視為保護委員會之行為或對保護委員會之行為。

제 5 조(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第 5 條（有關個人情報保護之管理體系及認證機關等過渡措施）

- ① 이 법 시행 당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 47 조의 3 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 제 32 조의 2 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① 「情報通信網利用促進暨情報保護等相關法律」(以下稱「情報通信網法」) 第 47 條之 3¹⁷⁰所定取得認證機關及審查機關指定者，本法施行後依本法視為本法第 32 條之 2 被指定之專門機關。
- ② 이 법 시행 당시 「정보통신망법」 제 47 조의 3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거나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이 법 제 32 조의 2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거나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 ② 「情報通信網法」第 47 條之 3 取得個人情報管理體系認證或被賦予審查認證資格者，本法施行後依本法視為本法第 32 條之 2 取得個人情報管理體系認證或被賦予審查認證資格者。

제 6 조(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第 6 條 (有關權限委任・委託過渡措施)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전문기관은 이 법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것으로 본다.

本法施行時，依舊法受行政安全部部長委任部分權限之特別市市長、廣域市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特別自治市長或專門機關，本法施行後依本法視為受保護委員會委任部分權限。

제 7 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第 7 條 (有關罰則暨過怠料過渡措施)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本法施行前之行為，適用行為時之罰則暨過怠料。

¹⁷⁰ 舊情報通信網法第 47 條之 3 係規定對個人情報保護管理系統之認證，主要內容係放送通信委員會針對在通信網路中，設立具備管理上、物理上保護措施之綜合性管理系統及認證措施，以持續及具體活用個人情報之蒐集、利用、處理等行為；現因應本次修法，該條業已刪除。

제 8 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第 8 條（有關課賦課徵金過渡措施）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本法施行前已既遂之行為，課賦課徵金適用行為時之規定。

제 9 조(다른 법률의 개정)

第 9 條（其他法律之修正）

-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1 조제 1 항제 2 호 중 "개인정보보호윤리"를 "인터넷 윤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으로 한다.

- ① 有關設置暨運作放送通信委員會之部分法律併同修正如下。

第 11 條第 1 項第 2 款中「個人情報保護倫理」修正為「網際網路倫理、建構健全的網際網路利用環境」。

-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9 조의 2 제 4 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로 한다.

- ② 有關利用暨保護信用情報之部分法律併同修正如下。

第 39 條之 2 第 4 項中「向行政安全部部長」修正為「向個人情報保護委員會」。

- ③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4 조제 1 항 중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를 "전자정부"로 한다.

- ③ 情報組織法之部分併同修正如下。

第 34 條第 1 項中「電子政府、個人情報保護」修正為「電子政府」。

- ④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 조의 5 제 6 항제 1 호 중 "관계 행정기관(「개인정보 보호법」 제 7 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을 "관계 행정기관"으로 한다.

- ④ 住民登錄法之部分併同修正如下。

第7條之5第6項第1款中「相關行政機關（包含『個人情報保護法』第7條之保護委員會）」修正為「相關行政機關」。

제 10 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第 10 條（與其他法律之關係）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이 법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승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의 사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보호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행정안전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보호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 本法施行時，其他法律（包含本法施行前已公布但未屆施行日之法律）中有依本法規定由保護委員會承繼之有關放送通信委員會暨行政安全部之事務，該法律引用「放送通信委員會」或「放送通信委員會委員長」時，該法律規定之內容視為引用「保護委員會」或「保護委員會委員長」、該法律引用「放送通信委員會所屬公務員」時，視為引用「保護委員會所屬公務員」、或該法律引用「行政安全部」或「行政安全部部長」時，依該法律規定之內容視為引用「保護委員會」或「保護委員會委員長」、該法律引用「行政安全部所屬公務員」時，視為引用「保護委員會所屬公務員」。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통신망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本法施行時，其他法律引用「情報通信網法」或該法之規定而本法有該規定時，視為引用本法及該規定。

參、韓國個人情報保護法之新法及修正重點對照表

新法（2020 年 8 月 5 日施行）	修正重點
第 2 條（定義） 本法用詞，定義如下： 1. 個人情報：指與自然人有關之情報且符合下列任一目 (1) 姓名、住民登錄號碼，及藉由影像而可得辨識個人之情報。 (2) 即使某一情報無法特定個人，但可透過結合其他情報輕易識別者。此情況需合理考量可否輕易結合其他情報、獲取其他情報之可能性等，識別個人所需要的時間、費用、技術等。 (3) 屬前揭 1、2 目之個人情報並依本條 1 之 2 款進行假名處理，且不使用，結合其他可供還原識別之額外資訊，就無法識別特定個人之情報（以下稱「假名情報」）。 1 之 2. 假名處理：指藉由除去部分個人情報，或取代個人情報之一部、全部等方法，在沒有其他額外情報之情形下，就無法識別特定個人而為之情報處理。 2. 處理：指個人情報的蒐集、產生、連結、連動、紀錄、儲存、保留、加工、	1. 第 1 款舊法就個人情報之定義為「與自然人有關之姓名、住民登錄號碼，及藉由影像而可得辨識個人之情報（包含某一情報雖無法特定個人，但是可以透過結合其他情報輕易辨識特定個人之情報）」；本次修法除保留舊法之定義外，另限縮可結合其他情報輕易辨識特定個人之情報範圍，需合理考量可否輕易結合其他情報、獲取其他情報之可能性，以及識別個人所需要的時間、費用、技術等要素。 2. 新增第 1 之 2 款。 3. 新增第 8 款。

編輯、檢索、輸出、更正、回復、利用、提供、公開、銷毀，及其他相似行為。 3. 情報當事人：指藉由處理之情報得識別特定之人，且可為該情報當事人之人。 4. 個人情報檔案：指為便於檢索個人情報而按照一定規則排列或組成之個人情報集合物。 5. 個人情報處理者：指以運用個人情報檔案為目的，自己或透過他人處理個人情報之公共機關、法人、團體及個人。 6. 公共機關：指下列各目所示之機關： (1) 國會、法院、憲法裁判所、處理中央選舉管理委員會行政事務之機關、中央行政機關（包含隸屬於大統領與國務總理之機關）暨其轄下之機關、地方自治團體。 (2) 其餘依大統領令而定之國家機關及公共團體。 7. 影像情報處理機器：指在特定空間設置並持續拍攝人及事物之影像，或該影像透過有線、無線網路傳送，而以大統領令所定之裝置。 8. 科學研究：指技術研發與實證、基礎	
--	--

研究、應用研究暨民間投資研究等，適用科學方法之研究。	
第 3 條（個人情報保護原則） ①個人情報處理者應明確個人情報之處理目的，並應在該目的之必要範圍內，適法且正當地蒐集最小限度之個人情報。 ②個人情報處理者應在個人情報處理目的之必要範圍內適當地處理個人情報，不得將個人情報於目的外使用。 ③個人情報處理者應在個人情報處理目的之必要範圍內保障個人情報的準確性、完整性及最新性。 ④個人情報處理者應考量情報當事人權利受侵害之可能性與危險程度，依個人情報之處理方法及種類等，安全地管理個人情報。 ⑤個人情報處理者應公開包含個人情報處理方針等與個人情報處理有關事項，並保障包含閱覽請求權等情報當事人之權利。 ⑥個人情報處理者應以對情報當事人隱私最小侵害之方式處理個人情報。 ⑦個人情報處理者藉由匿名或假名處理個人情報即可達成個人情報之蒐	第 7 項舊法僅有匿名處理，新法增訂假名處理。

集目的時，得以匿名處理時應以匿名處理，而匿名處理仍無法達成目的時，應盡可能以假名處理。 ⑧個人情報處理者應遵守並落實本法及相關法規所定之責任與義務，致力於獲得情報當事人之信賴。	
第 7 條（個人情報保護委員會） ①個人情報保護委員會（以下稱「保護委員會」）由國務總理管轄，以獨立執行個人情報保護之相關事務。 ②依「政府組織法」第 2 條規定，保護委員會為中央行政機關。但符合下列各款事項時，不適用「政府組織法」第 18 條規定。 1.第 7 條之 8 第 3 款與第 4 款之事務。 2.第 7 條之 9 第 1 項審議、決議事項中符合第 1 款者。 ③刪除 ④刪除 ⑤刪除 ⑥刪除 ⑦刪除 ⑧刪除 ⑨刪除	1. 舊法第 1 項為「個人情報保護委員會」係指為審議・議決與個人情報相關事項，而設置於大統領轄下之委員會，具有獨立執行職掌業務之權限。 2. 第 2 項增訂保護委員會之組織法源依據。 3. 舊法第 3 項至第 9 項刪除；其中舊法第 3 項及第 4 項主要内容係委員身分、第 5 項委員任期、第 6 項委員會開議、第 7 項委員會議決方式、第 8 項委員會事務局、第 9 項空白授權。
第 7 條之 2（保護委員會的組成等） ①保護委員會置委員 9 人，其中常任委	本條新增。

員 2 名(委員長 1 名、副委員長 1 名)。 ②保護委員會之委員自符合下列各款具有個人情報保護豐富經驗與專業知識之人中，由國務總理提名委員長及副委員長，由委員長提名 2 名委員，由大統領所屬政黨或與所屬政黨結盟之團體推薦 2 名委員，由其他結盟團體推薦 3 名委員，再由大統領任命或委囑之。 1. 現在承辦個人情報保護業務之 3 級以上公務員（包含隸屬於高階公務員團之公務員），或過去曾承辦該職務之人 2. 現任或曾任法官、檢察官、律師之職務 10 年以上者 3. 在公共機構或團體（包括由個人情報處理者組成的團體）任職 3 年以上，或曾在該機關或團體承辦個人情報保護業務 3 年以上並獲得機構或團體推薦之人 4. 現在或曾在「高等教育法」第 2 條第 1 款所定之學校擔任副教授以上職位或相當職位 5 年以上，且具備個人情報領域專門知識之人。 ③委員長與副委員長被任命為政務職公務員。	
--	--

④即使無政府組織法第 10 條之適用，委員長、副委員長、以及根據第 7 條之 13 設立之事務處處長，仍屬政府委員。	
第 7 條之 3（委員長） ①委員長代表保護委員會，主持保護委員會會議，並統籌所管事務。 ②委員長因不得已之事由而無法執行職務時，由副委員長代行職務，委員長、副委員長皆因不得已之事由而無法執行職務時，由委員會事先指定之委員代行委員長之職務。 ③委員長就關於保護委員會之所管事務，得出席國會並陳述意見，若國會要求時，應出席並為報告或答辯。 ④委員長得出席國務會議並發言，並得就所管事務向國務總理提出議案。	本條新增。
第 7 條之 4（委員之任期） ①委員任期為三年，得連任一次。 ②委員缺位時，應盡速任命或委囑新委員，不得拖延。受任命或委囑之新委員，其任期將重新起算。	本條新增。
第 7 條之 5（委員的身分保障） ①委員除符合下列任一款情形外，不得違反其意願予以免職或解職。 1.長期身心障礙致無法執行職務之情	本條新增。

形 2.符合第 7 條之 7 缺格事由之情形 3.依本法或他法有職務上義務違反之情形 ②委員依法律與良心而獨立執行職務。	
第 7 條之 6（禁止兼職等） ①委員在職期間不得兼任下列各職或從事與職務有關之營利業務。 1.國會議員或地方議員 2.國家公務員或地方公務員 3.其他依大統領令所定之職位 ②與第 1 項有關之營利業務依大統領令而定。 ③委員不得參與政治活動。	本條新增。
第 7 條之 7（缺格事由） ①符合下列任一款者，不得擔任委員。 1.非大韓民國國民 2.符合「國家公務員法」第 33 條所定之任一款者 3.根據「政黨法」第 22 條之黨員 ②委員符合前項任一款情形時，當然解職。但於「國家公務員法」第 33 條第 2 款僅限受破產宣告之人未依「債務人回生暨破產相關法律」於免責期間內提出免責聲請，或被判定不予免責，或確認免責後被取消者適用；或	本條新增。

同法第 33 條第 5 款僅限有依「刑法」第 129 條至第 132 條、「性暴力犯罪之懲罰等相關特例法」第 2 條、「兒童・青少年之性保護相關法律」第 2 條第 2 款，以及因職務上相關而犯「刑法」第 355 條及第 356 條等各該條文所定之罪，並限於受緩刑以上刑之宣告者。	
第 7 條之 8（保護委員會的所管事務） 保護委員會執行下列各款之所管事務 1. 有關改善個人情報保護法令之事項 2. 有關樹立・執行個人情報保護政策・制度・計畫之事項 3. 關於對情報當事人的權利侵害調查及其處分之事項 4. 有關個人情報處理之陳情處理・權利救濟及個人情報相關之紛爭調停 5. 為保護個人情報而與國際機構或國外個人情報保護機構交流・合作 6. 調查・研究，教育及宣傳與個人情報保護相關之法令・政策・制度・實態等相關事項 7. 對有關個人情報保護技術開發之支援・推廣暨專門人才養成之相關事項 8. 依本法及其他法令所定屬保護委員會事務之事項	本條新增。

第 7 條之 9（保護委員會的審議・議決事項等） ①保護委員會審議・議決下列各款事項。 1. 關於第 8 條之 2 評價個人情報侵害要因之事項。 2. 關於第 9 條基本計畫與第 10 條施行計畫之事項。 3. 與個人情報相關之政策、制度暨有關修正法令之事項。 4. 個人情報處理之相關公共機關間的意見調整事項。 5. 有關個人情報保護法令的解析・運用等相關事項 6. 依第 18 條第 2 項第 5 款有關利用・提供個人情報之相關事項 7. 依第 33 條第 3 項影響評價結果之相關事項 8. 依第 28 條之 6、第 34 條之 2、第 39 條之 15 課賦課徵金之相關事項 9. 依第 61 條提出意見暨勸告改善之相關事項 10. 依第 64 條糾正措施等相關事項 11. 依第 65 條告發暨懲戒勸告之相關事項 12. 依第 66 條公布處理結果之相關事項	本條新增。
---	--------------

13. 依第 75 條課賦過怠料之相關事項 14. 制定・修訂暨廢止所管法令暨保護委員會規則之相關事項 15. 由保護委員會委員長或委員 2 名以上於會議中提交與個人情報保護之關聯事項 16. 另依本法或其他法令所定之由保護委員會審議・議決之事項 ②保護委員會為審議・議決第 1 項各款之事項，於必要時得採行下列各款措施。 1.關係公務員向具備個人情報保護專門知識者或市民社會團體暨相關事業者聽取意見 2.要求對關係機關提出資料或調查事實 ③依第 2 項第 2 款被要求之關係機關，如無其他特別事由即應遵循。 ④保護委員會有審議・議決第 1 項第 3 款之事項時，得對關係機關為改善勸告。 ⑤保護委員會得審查第 4 項之勸告內容是否已履行	
第 7 條之 10（會議） ①於委員長認有必要時，或現任委員 4 分之 1 以上要求時，由委員長召集保	本條新增。

護委員會之會議。 ②委員長或2名以上委員得向保護委員會提出議案。 ③保護委員會之會議，以過半數現任委員出席進行開議，並以出席委員過半數之贊成為議決。	
第7條之11（委員的除斥・忌避・迴避） ①委員符合下列各款之一者，應自審議・議決中除斥。 1.該事案當事人為委員或其配偶或曾為配偶者，或與該事件有關之共同權利者或義務者間具有關係之情形 2.委員與該事案當事人有親族關係或曾有親族關係之情形 3.委員就該事案曾提供證詞、鑑定、法律諮詢之情形 4.委員擔任或曾任該事案相關當事人之代理人之情形 5.委員或委員所屬公共機關・法人或團體等，與提出建議者間存在利害關係之情事 ②難以期待委員公正審議・議決時，當事人得對該委員提出忌避聲請，並由保護委員會以議決決定。 ③委員有第1項或第2項事由者，得對	本條新增。

該事案迴避。	
第 7 條之 12（小委員會） ①為有效執執行業務，保護委員會得設立小委員會以審議或議決有關個人情報受輕微侵害或相似・反覆可能之事項等。 ②小委員會由 3 名委員組成。 ③小委員會依第 1 項作成之審議・議決決定視為保護委員會作成之審議・議決決定。 ④小委員會會議由組成成員之全員出席，且出席成員全員の贊成以議決。	本條新增。
第 7 條之 13（事務處） 保護委員會成立事務課賦處理保護委員會之事務，除有本法規定外，保護委員會之組織及相關事項以大統領令定之。	本條新增。
第 7 條之 14（運作等） 除本法或其他法令規定外，保護委員會之運作等必要事項由保護委員會以規則定之。	本條新增。
第 8 條 刪除	第 8 條舊法為保護委員會之功能，本次修法因已於第 7 條以下將保護委員會功能重新並完整規範，故刪除本條。
第 11 條（資料提出要求等） ①保護委員會得就個人情報處理者遵	第 2 項舊法原屬行政安全部部長職權事項，修正為保護委員

守法規的現況及個人情報管理實態，要求個人情報處理者、相關中央主管機關首長、地方自治團體首長暨關係機關・團體等提出資料或陳述意見等，以樹立有效率之基本計畫。 ②保護委員會於必要時得對個人情報處理者、相關中央主管機關首長、地方自治團體首長暨關係機關・團體等，實施個人情報管理水準暨實態掌握之調查，以促進個人情報保護政策、成果評價等。 ③中央行政機關首長得向所管領域之個人情報處理者要求其提出第1項所規定之資料，以樹立・促進有效率的施行計畫。 ④依第1項至第3項規定被要求提出資料等之人，如無其他特別事由即應遵循。 ⑤第1項至第3項提出資料等之範圍與方法等必要事項以大統領令定之。	會職掌。
第12條（個人情報保護指引） ①保護委員會制定有關個人情報處理之基準、個人情報侵害類型與預防措施等，相關標準個人情報保護指引（以下稱「標準指引」），並得對個人情報處理者提倡遵守該指引。	第1項舊法原屬行政安全部部長職權事項，修正為保護委員會職掌。

②中央行政機關首長依標準指引就所管領域之個人情報處理與相關個人情報制定保護指引，並得對個人情報處理者提倡遵守該指引。 ③國會、法院、憲法裁判所、中央選舉管理委員會等各機關（包含各所屬機關）得制定個人情報保護指引並施行。	
第 13 條（自律約束的促進暨支援） 為促進及支援個人情報處理者自發之個人情報保護活動，保護委員會應制定下列各款必要施策。 1.關於個人情報保護之教育・推廣 2.育成及支援與個人情報保護相關聯之機關・團體 3.支援個人情報保護認證標章之導入與施行 4.支援個人情報處理者自律性規約之制定・施行 5.其他為支援個人情報處理者之自律性個人情報保護活動之必要事項。	本條各款於舊法原屬行政安全部部長職權事項，修正為保護委員會職掌。
第 15 條（個人情報的蒐集・利用） ①個人情報處理者符合下列任一款時，得蒐集個人情報，並得於蒐集的範圍內利用。 1.取得情報當事人同意時	新增第 3 項。

2.法律有特別規定或為遵守法令上義務而不可避免時 3.公共機關為執行法定職務而不可避免時 4.為與情報當事人締約或履行該約而不可避免時 5.情報當事人及其法定代理人陷於無法為意識表示之狀態，或住所不明等而無法取得事前同意，確實有明顯對情報當事人及第 3 方急迫生命、身體、財產利益所必要時 6.為達成個人情報處理者之正當利益所必要，且該正當利益明顯優先於情報當事人的權利時。此情形僅限於與個人情報處理者正當利益有相關關係且不超過合理範圍時。 ②個人情報處理者依第 1 項第 1 款取得同意時，應將下列各款向情報當事人告知。當下列任一款有變更時，亦應向情報當事人告知該變更並取得同意。 1.個人情報的蒐集・利用目的 2.蒐集個人情報之項目 3.保有暨利用個人情報的期間 4.有權利拒絕同意之事實，及拒絕同意有不利益時，該不利益之內容	
---	--

③個人情報處理者得依大統領令所定，考量是否對情報當事人產生不利影響、是否採取加密等安全維護必要措施等，於最初蒐集目的有關之合理範圍內，未經情報當事人同意，使用該情報當事人之個人情報。	
第 17 條（個人情報的提供） ①個人情報處理者符合下列任一款，得向第 3 方提供（包含共同利用，以下同）情報當事人之個人情報。 1.取得情報當事人的同意時 2.依第 15 條第 1 項第 2 款・第 3 款・第 5 款及第 39 條之 3 第 2 項第 2 款・第 3 款規定，於個人情報蒐集目的範圍內提供個人情報時 ②個人情報處理者依前項第 1 款取得同意時，應將下列各款告知情報當事人。當下列任一款有變更時，亦應告知該變更並取得同意。 1.個人情報之接收者 2.個人情報接收者利用該個人情報之目的 3.個人情報被提供之項目 4.個人情報接收者保有及利用該個人情報之期間 5.有權利拒絕同意之事實，及拒絕同	1. 新法第 1 項第 2 款增列符合第 39 條之 3 第 2 項第 2 款，得於蒐集目的範圍內將個人情報提供第 3 方。 2. 新增第 4 項。

意有不利益時，該不利益之內容 ③個人情報處理者有對國外之第3方提供個人情報時，應依第2項各款向情報當事人告知並取得同意，不得以違反本法內容締結向國外移轉個人情報之契約。 ④個人情報處理者得依大統領令所定，考量是否對情報當事人產生不利影響、是否採取加密等安全維護必要措施等，於最初蒐集目的有關之合理範圍內，未經情報當事人同意，向第3方提供該情報當事人之個人情報。	
第18條（限制個人情報之目的外利用・提供） ①個人情報處理者利用個人情報不得逾第15條第1項及第39條之3第1項、第2項等所定之範圍，亦不得將超過第17條第1項及第3項等所定之範圍之情報提供給第3方。 ②除有不當侵害情報當事人或第3方利益之虞外，個人情報處理者符合下列任一款情形，得將個人情報為目的外之利用或提供予第3方，不受前項限制。但情報通信服務提供者（符合「情報通信網利用促進暨情報保護等相關法律」第2條第1項第3款所定者，	1. 新法第1項配合修法增列第39條之3第1項、第2項所定之範圍為利用個人情報之限制範圍。 2. 新法第2項但書增加情報通信服務提供者於處理使用者之個人情報時規定；刪除舊法同項第4款「有統計編制暨學術研究等利用目的之必要，將無法可得特定個人之情報提供時」之規定。 3. 第4項舊法原屬行政安全部部長職權事項，修正為保護委員會職掌。

以下同)於處理其使用者(符合「情報通信網利用促進暨情報保護等相關法律」第2條第1項第4款所定者,以下同)之個人情報時,僅限符合下列第1款・第2款之情形,第5款至第9款之情形僅限於公共機關。 1.自情報當事人處取得別途同意 2.其他法律有特別規定之情形 3.情報當事人及其法定代理人陷於無法為意思表示之狀態,或住所不明等而無法取得事前同意,確實有明顯對情報當事人及第3方急迫生命、身體、財產利益所必要時。 4.刪除 5.若個人情報不得於目的外利用或向第3方提供致無法執行其他法律已規定之業務職責時,保護委員會以審議・議決為表決 6.為履行條約、其他國際協議,而有對外國政府或國際組織提供之必要 7.為犯罪之搜查與公訴之提起及維持所必要 8.法院為執行裁判職務所必要 9.為執行刑罰及監護、保護處分所必要 ③個人情報處理者依第2項第1款取得	
--	--

同意時，應將下列各款告知情報當事人。當下列各款之一有變更時，亦應告知該變更並取得同意。 1.個人情報接收者 2.個人情報之利用目的（於提供第 3 方之情形，接收者於接收時之利用目的稱之） 3.被利用或被提供之個人情報項目 4.保有暨利用個人情報的期間（於提供第 3 方之情形，接收者於接收時之保有暨利用期間稱之） 5.有權利拒絕同意之事實，及拒絕同意有不利益時，該不利益之內容 ④公共機關依第 2 項第 2 款至第 6 款、第 8 款及第 9 款於目的外利用個人情報或向第 3 方提供時，保護委員會應告示該利用或提供之法律依據、目的暨範圍等相關必要事項，並刊登於政府公報或官方網站上。 ⑤個人情報處理者符合第 2 項任一款於目的外利用向第 3 方提供個人情報時，應對接收者限制利用目的、限制利用方法、及其他相關必要限制事項，或要求設置必要措施等以維護個人情報之安全。於此情形，被要求者應設置必要措施以維護個人情報之	
--	--

安全。	
第 22 條（同意取得之辦法） ①個人情報處理者依本法對個人情報之處理需取得情報當事人（包含第 6 項所定之法定代理人。本條以下同）之同意時，當事人應以清楚可辨之方式，將個別同意事項分開呈現，並分別取得情報當事人之同意。 ②個人情報處理者以書面（包含「電子文書暨電子交易基本法」第 2 條第 1 項規定之電子文書）取得前項之同意時，個人情報之蒐集・利用目的、欲蒐集・利用個人情報之項目等，就大統領令所定之重要內容，應依保護委員會告示之辦法明確標示使其簡單明瞭。 ③個人情報處理者依第 15 條第 1 項第 1 款、第 17 條第 1 項第 1 款、第 23 條第 1 項第 1 款及第 24 條第 1 項第 1 款規定因處理個人情報而取得情報當事人同意時，應區別基於履行與情報當事人間契約等目的，而無情報當事人同意仍可處理之個人情報，以及須經情報當事人同意始得處理之個人情報。此時，未經同意即可處理之個人情報，其立證責任由個人情報處	第 2 項舊法原屬行政安全部部長職權事項，修正為保護委員會職掌。

理者負擔。 ④個人情報處理者為向情報當事人宣傳商品或服務，或引誘販售，而欲取得處理個人情報之同意時，應告知使情報當事人明確知悉該情事並取得同意。 ⑤個人情報處理者不得以情報當事人拒絕同意第3項之選擇同意事項，或拒絕同意第4項及第18條第2項第1款為由，拒絕對情報當事人提供商品或服務。 ⑥個人情報處理者欲處理14歲以下兒童之個人情報而依本法需取得同意時，應取得該法定代理人之同意。此時，為取得法定代理人同意所最小必要範圍之情報，得未經法定代理人同意直接向該兒童蒐集。 ⑦除第1項至第6項明確規定者外，其他有關取得情報當事人同意之細節辦法，及第6項所定最小必要範圍之情報等相關必要事項，於考量蒐集個人情報之媒介，並以大統領令定之。	
第24條（限制固有識別情報之處理） ①個人情報處理者除有下列各款情形外，不得處理經大統領令所定之依法得區別特定個人之固有識別情報（以	第4項及第5項舊法原屬行政安全部部長職權事項，修正為保護委員會職掌。

下稱「固有識別情報」)。 1.向情報當事人告知第 15 條第 2 項各款及第 17 條第 2 項各款之事項，並對其他個人情報之處理個別取得情報當事人之同意 2.法令中有具體要求或准許處理固有識別情報時 ②刪除 ③個人情報處理者依第 1 項各款規定處理固有識別情報時，為防止固有識別情報有遺失、竊取、洩漏、變造及毀損等情事，應遵循大統領令設置加密等安全維護必要措施。 ④保護委員會應評估處理個人情報之種類・規模、從業人員暨銷售額規模等，根據大統領令所定之基準，對個人情報處理者是否有依第 3 項規定採取安全維護必要措施，並依大統領令所定為定期調查。 ⑤保護委員會得依大統領令所定使專門機關依第 4 項進行調查。	
第 24 條之 2(住民登錄號碼處理之限制) ①個人情報處理者除符合下列任一款外，不得處理住民登錄號碼，不適用第 24 條第 1 項規定。 1.於法律・大統領令・國會規則・大	第 1 項第 3 款及第 4 項等舊法原屬行政安全部部長職權事項，修正為保護委員會職掌。

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暨監察院規則中，經具體要求或准許住民登錄號碼之處理時。

2.為免除情報當事人或第 3 人生命、身體、財產利益之急迫危險而顯有必要時。

3.依第 1 款及第 2 款規定有不可避免應處理住民登錄號碼時，保護委員會以告示定之。

②為避免住民登錄號碼遺失・竊取・洩漏・偽造・變造及毀損等情事，個人情報處理者應藉由加密措施並安全保管之。於此情形，有關加密適用對象、對象類別適用時機等必要事項，就個人情報處理規模與洩漏時之影響等予以評估，並以大統領令定之，不適用第 24 條第 3 項規定。

③個人情報處理者依第 1 項各款處理住民登錄號碼時，應提供情報當事人於線上網頁註冊會員階段時，得不使用住民登錄號碼亦可註冊會員之方法。

④保護委員會得制定和支援各種措施，包含整備相關法令、樹立計畫、建立必要設備暨系統等，使個人情報處理者得依第 3 項規定提供方法。

第 28 條之 2（假名情報的處理等） ①未經情報當事人的同意，個人情報處理者為統計編制、科學研究、保存公益紀錄等，得依假名情報處理。 ②個人情報處理者對第 3 方提供前項假名情報時，不得包含可被用於識別特定個人之情報。	本條新增。
第 28 條之 3（假名情報的結合限制） ①即便有第 28 條之 2 之規定，為結合不同個人情報處理者基於統計編制、科學研究及保存公益紀錄等目的處理之假名情報，應由保護委員會或相關中央行政機關首長指定之專門機關執行。 ②個人情報處理者欲將執行機關結合之情報對外輸出，應以假名情報或依第 58 條之 2 規定處理該情報後，取得專門機關負責人的批准。 ③第 1 項之結合程序與方法、專門機關的指定及取消指定之標準・程序、管理・監督，第 2 項之輸出暨批准基準・程序等必要事項，依大統領令定之。	本條新增。
第 28 條之 4（對於假名情報的安全措施義務等） ①個人情報處理者在處理假名情報時，應依大統領令設置技術上、管理	本條新增。

上及物理上之必要安全措施，將可還原辨識特定個人之額外情報分別保管・管理等，以防止該額外情報有遺失・竊取・洩漏・變造及毀損等情事。 ②個人情報處理者欲處理假名情報時，應根據大統領令規定之事項，填載就假名情報處理之目的、向第3方提供時的接收者等相關紀錄並保管，以管理假名情報的處理內容。	
第28條之5(處理假名情報時之禁止義務等) ①任何人均不能以識別特定個人為目的而處理假名情報。 ②個人情報處理者在處理假名情報過程中，產生可識別特定個人之情報時，應即時中止該情報之處理，並應立即將該情報回收・銷毀。	本條新增。
第28條之6(對處理假名情報課賦課徵金等) ①個人情報管理者違反第28條之5第1項規定，有以識別特定個人為目的而處理情報時，保護委員會得對其課賦整體銷售總額百分之三以下之課徵金。但無整體銷售總額或計算顯有困難時，得依大統領令規定，以4億韓圓或資本額百分之三，課賦兩者之最	本條新增。

高金額以下之課徵金。 ②有關課徵金之課賦・徵收等必要事項，準用第 34 條之 2 第 3 項至第 5 項的規定。	
第 28 條之 7（適用範圍） 第 20 條、第 21 條、第 27 條、第 34 條第 1 項、第 35 條至第 37 條、第 39 條之 3、第 39 條之 4、第 39 條之 6 至第 39 條之 8 等規定於假名情報不適用。	本條新增
第 30 條（個人情報處理方針之樹立暨公開） ①個人情報處理者應將下列各款事項納入並制定個人情報之處理方針（以下稱「個人情報處理方針」）。於此情形，公共機關應對已依第 32 條規定而須登錄對象之個人情報檔案制定個人情報處理方針。 1.個人情報處理目的 2.個人情報處理暨保有期間 3.向第 3 方提供個人情報之相關事項（限符合本情形時定之） 3 之 2.個人情報之銷毀程序暨銷毀辦法（依第 21 條第 1 項但書應保存個人情報時，包含該保存經過與被保存之個人情報項目）	1. 新增第 1 項第 3 之 2 款。 2. 第 4 項舊法原屬行政安全部部長職權事項，修正為保護委員會職掌。

4.個人情報處理之委託相關事項（限符合本情形時定之） 5.情報當事人與法定代理人之權利・義務暨該行使辦法之相關事項 6.第31條規定之個人情報保護責任者之姓名，及個人情報保護業務暨處理相關陳情業務之職員職稱與電話號碼等通訊方式 7.網路存取情報檔案等以自動方式蒐集個人情報裝置之設置・運作暨該拒絕相關事項（限符合本情形時定之） 8.其他有關個人情報處理事項以大統領令定之 ②個人情報處理者於樹立個人情報處理方針或變更時，應依大統領令定之辦法公開以使情報當事人得輕易確認。 ③個人情報處理者與情報當事人間締結契約之內容與個人情報處理方針內容不符時，適用有利情報當事人部分。 ④保護委員會得訂擬定個人情報保護方針指引並向個人情報處理者倡導遵守該指引。	
第32條（個人情報檔案之登錄暨公開）	第1項、第3項及第4項等舊

①公共機關首長有運用個人情報檔案時，應將下列各款事項登錄於保護委員會。登錄事項經變更時亦同。 1.個人情報檔案的名稱 2.個人情報檔案運用法律依據及目的 3.個人情報檔案中被紀錄之個人情報項目 4.個人情報的處理方法 5.個人情報的保有期間 6.個人情報有經常性及反覆性提供時，該提供之接收者 7.其他以大統領令定之事項 ②個人情報檔案符合下列任一款，不適用第1項。 1.記錄國家安全、外交上秘密、其他與國家之重大利益相關事項之個人情報檔案 2.記錄犯罪搜查、公訴之提起暨維持、刑罰暨監護之執行、矯正處分、保護處分、保安觀察處分與出入國管理等相關事項之個人情報檔案 3.記錄依「租稅犯處罰法」暨「關稅法」調查違規行為相關事項之個人情報檔案 4.僅限於公共機關內部業務處理而使用之個人情報檔案	法原屬行政安全部部長職權事項，修正為保護委員會職掌。
--	-----------------------------------

5.依其他法令被秘密分類之個人情報檔案 ③保護委員會於必要時，得檢討依第 1 項登錄之個人情報檔案事項及內容，並得對該公共機關首長勸告改善。 ④保護委員會應公開個人情報檔案依第 1 項規定之登錄現況，使任何人均得輕易地閱覽。 ⑤關於第 1 項之登錄與第 4 項公開辦法、範圍及程序等必要事項以大統領令定之。 ⑥關於國會、法院、憲法裁判所、中央選舉管理委員會（包含其所屬機關）登錄暨公開個人情報檔案，以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暨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定之。	
第 32 條之 2（個人情報保護認證） ①保護委員會得對個人情報處理者於情報處理暨保護等一連串措施是否合乎本法等為相關認證。 ②前項認證有效期間為 3 年。 ③保護委員會於符合下列任一款情形時，依大統領令所定得取消依第 1 項取得之認證。但符合下列第 1 款情形者應取消。	第 1 項、第 3 項各款、第 4 項及第 5 項等舊法原屬行政安全部部長職權事項，修正為保護委員會職掌。

1.以虛偽或其他負面方法取得個人情報保護認證之情形 2.有拒絕第 4 項規定之事後管理或妨礙之情形 3.未達第 8 項規定之認證基準時 4.違反個人情報保護相關法令，且有重大違反事由之情形 ④保護委員會應每年實施一次以上事後管理，以維持個人情報保護之實效性。 ⑤保護委員會得委由大統領令所定之專門機關執行第 1 項認證、第 3 項取消認證、第 4 項事後管理，及第 7 項認證審查員等相關業務。 ⑥依第 1 項取得認證者，得以大統領令公告之認證內容作為標示或宣傳。 ⑦為執行第 1 項認證之必要審查，有關該審查員之資格、取消資格條件等，將考量相關專業性、經歷，及其他必要事項，由大統領令定之。 ⑧其他個人情報管理體系、情報當事人管理保障、安全維護措施，是否符合本法第 1 項認證之基準、辦法、程序等必要事項，由大統領令定之。	
第 33 條（個人情報影響評價） ①公共機關首長依大統領令所定之基	1. 第 1 項及第 5 項舊法原屬行政安全部部長職權事項，修

準運用個人情報檔案而致個人情報有被侵害之虞之情形時，應對其進行評價（以下稱「影響評價」）以分析危險要因並提出改善事項，再將該結果提交予保護委員會。於此情形，公共機關首長應委託保護委員會指定之機關（以下稱「評價機關」）為該影響評價。 ②進行影響評價時應考量下列各款事項。 1.被處理之個人情報數量 2.個人情報對第3方提供與否 3.情報當事人之權利受危害可能性及危險程度 4.其他以大統領令所定事項 ③保護委員會得對第1項影響評價結果提出意見。 ④公共機關首長依第1項影響評價而作成之個人情報檔案，並應於依第32條第1項進行登錄時，將該影響評價結果作為附件。 ⑤保護委員會應完備有關專家之養成、影響評價基準之開發・推廣等必要措施以應用影響評價。 ⑥有關第1項評價機關之指定基準暨指定取消、評價基準、影響評價之辦	正為保護委員會職掌。 2.新法第3項除將原屬行政安全全部部長職權事項，修正為保護委員會職掌外，並將舊法原「行政安全全部部長得對第1項影響評價結果，經保護委員會對影響評價審議或議決通過後，提出意見。」修正為「保護委員會得對第1項影響評價結果提出意見」。
---	---

法・程序等必要事項以大統領令定之。 ⑦關於國會、法院、憲法裁判所、中央選舉管理委員會（包含其所屬機關）之影響評價事項，遵循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暨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 ⑧公共機關以外之個人情報處理者於運用個人情報檔案而致情報當事人之個人情報有受侵害之虞之情形時，應積極努力以進行影響評價。	
第 34 條（個人情報洩漏通知等） ①個人情報處理者知悉個人情報被洩漏時，應即時將下列各款事實通知該情報當事人。 1.被洩漏之個人情報項目 2.被洩漏之時點與該經過 3.為使因洩漏而致生之侵害最小化，情報當事人可得採取之辦法等相關資訊 4.個人情報處理者的對應措施暨侵害救濟程序 5.情報當事人被侵害發生時，可受理申告等負責職員暨通訊方式 ②個人情報處理者於個人情報被洩漏時，應完備應變對策及進行必要措施	第 3 項前段與後段舊法原屬行政安全部部長職權事項，修正為保護委員會職掌。

以最小化侵害。 ③當被洩漏之個人情報達大統領令所定之規模以上時，個人情報處理者應立即將第1項通知及第2項措施結果向保護委員會及大統領令定之專門機關申告。於此情形，保護委員會及大統領令所定之專門機關得為技術支援以防止侵害擴散及修補侵害等。 ④有關第1項通知時機、辦法暨程序等必要事項以大統領令定之。	
第34條之2（課徵金等） ①個人情報處理者於處理住民登錄號碼有遺失・竊取・洩漏・變造及毀損之情事時，保護委員會得課賦・徵收5億元以下之課徵金。但個人情報處理者為避免住民登錄號碼被遺失・竊取・洩漏・變造及毀損，已依第24條第3項設置安全維護必要措施時，不在此限。 ②保護委員會於第1項課賦課徵金時，應評估下列各款事項 1.履行第24條第3項安全維護必要措施之努力程度 2.住民登錄號碼被遺失・竊取・洩漏・變造及毀損之程度 3.是否履行後續措施以防止侵害擴散	第1項、第2項、第3項及第4項等舊法原屬行政安全部部長職權事項，修正為保護委員會職掌。

③如未依第 1 項於繳納期間內繳納課徵金者，自繳納截止日次日始至繳納日前一日止，保護委員會於課徵金之年利率百分之六範圍內依大統領令定之徵收滯納金。此時，滯納金之徵收期限不得超過 60 個月。 ④如未依第 1 項於繳納期間內繳納課徵金者，保護委員會應限期催繳，若仍未於該期間內繳納課徵金及第 2 項所定之滯納金，依國稅滯納處分之案例徵收。 ⑤關於課徵金之課賦・徵收等其他必要事項以大統領令定之。	
第 35 條（個人情報之閱覽） ①情報當事人得向個人情報處理者要求閱覽其被處理之自身個人情報。 ②除前項規定外，情報當事人就其個人情報欲對公共機關要求閱覽時，得直接對公共機關要求閱覽，或以大統領令之規定，透過保護委員會要求閱覽。 ③個人情報處理者因第 1 項及第 2 項而收到閱覽請求時，應依大統領令所定之期間內使該情報當事人得閱覽該個人情報。此時，若於該時間內有不可閱覽之事由時，應立即向情報當事	第 2 項舊法原屬行政安全部部長職權事項，修正為保護委員會職掌。

人說明並告知該事由，並得延後閱覽時間，不得遲延。 ④個人情報處理者符合下列任一款情形，得告知情報當事人該事由並限制或拒絕其閱覽之要求。 1.法律規定禁止或限制閱覽時 2.有危害其他人之生命・身體之虞，或可能侵害其他人財產與其他利益之虞時 3.公共機關於執行下列各目之一之職務時有遭遇重大阻礙 (1) 租稅之課賦・徵收及返還相關業務 (2) 根據「初・中等教育法」暨「高等教育法」設立之各級學校、依「終身教育法」設立之終身教育設施，以及依其他法律設置之高等教育機關中，有關成績評量及選拔錄取者之事項 (3) 學歷・體能暨採用等相關事項，資格審查之相關事項 (4) 就核定補償金・撫恤金等進行中之評量及判斷之相關事項 (5) 根據其他法律而進行中之檢查及調查相關事項 ⑤第 1 項至第 4 項規定請求閱覽、限制	
---	--

閱覽、通知等之辦法暨程序之相關必要事項由大統領令定之。	
第 38 條（權利行使的方法與程序） ①情報當事人依第 35 條閱覽，第 36 條更正・刪除，第 37 條停止處理，第 39 條之 7 撤回同意等之要求（以下稱「閱覽等要求」）文書，依大統領令定之方法・程序，得由代理人提出。 ②14 歲以下兒童之法定代理人，可向個人情報處理者對該兒童之個人情報提出閱覽等要求。 ③個人情報處理者得依大統領令向閱覽請求者要求手續費與郵務費（僅限郵遞副本請求時）。 ④個人情報處理者應制定具體辦法與程序使情報當事人得為閱覽等要求，且該等辦法及程序應公開使情報當事人得以知悉。 ⑤情報當事人提出閱覽要求等被拒絕而有不服時，個人情報處理者應制定相應之必要程序及介紹，使其得提出異議。	第 1 項舊法原屬行政安全部部長職權事項，修正為保護委員會職掌。
第 39 條之 3（對於同意個人情報的蒐集・利用等特例） ①除第 15 條第 1 項規定外，情報通信服務提供者欲蒐集及利用使用者之	本條新增。

個人情報時，應對使用者告知下列全部各款事項並取得同意。欲變更下列任一款事項時亦同。 1.個人情報蒐集・利用目的 2.蒐集個人情報的項目 3.保有・利用個人情報的期間 ②情報通信服務提供者於符合下列任一款時，未依前項取得同意仍得蒐集・利用使用者之個人情報。 1.為履行有關情報通信服務（係指依「情報通信網利用促進暨情報保護等相關法律」第2條第1項第2款所定之情報通信服務。以下同）契約所必要個人情報，因經濟性・技術性之事由致取得通常性同意明顯困難時 2.於提供情報通信服務為核定費用所必要時 3.其他法律有特別規定時 ③情報通信服務提供者不得以使用者拒絕提供最小必要範圍以外之個人情報為由而拒絕提供服務。於此情形，該最小必要範圍之個人情報係指可執行該服務本質功能所必要之情報時。 ④情報通信服務提供者欲自 14 歲以下	
--	--

兒童處取得其個人情報之蒐集・利用・提供等同意，應取得其法定代理人之同意，並依大統領令所定確認法定代理人之同意。 ⑤情報通信服務提供者欲對 14 歲以下兒童告知個人情報之處理相關事項時，應使用簡單明瞭之方式及語言使其理解。 ⑥保護委員會為避免 14 歲以下兒童無法清楚認知處理個人情報之危險性及結果、使用者之權利等，應制定保護 14 歲以下兒童個人情報之措施。	
第 39 條之 4（個人情報洩漏等之通知・申告相關特例） ①除第 34 條第 1 項及第 3 項外，情報通信服務提供者與依第 17 條第 1 項規定取得使用者之個人情報者（以下稱「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於知悉個人情報之遺失・竊取・洩漏（以下稱「洩漏等」）事實時，應立即告知使用者下列各款事項並向保護委員會及大統領令所定之專門機關申告，無正當事由，該通知・申告應於知悉後 24 小時內為之，不得遲延。但有無法得知使用者之通訊方式等正當事由時，得依大統領令所定措施	本條新增。

代替通知。 1.被洩漏等之個人情報項目 2.被洩漏等之發生時點 3.使用者可採取之措施 4.情報通信服務提供者之對應措施 5.可受理利用者諮詢之職員暨通訊方式 ②大統領令所定之專門機關依前項接獲申告，應立即向保護委員會告知該事實，不得遲延。 ③情報通信服務提供者應向保護委員會說明依第 1 項所定之正當事由。 ④關於第 1 項所定之通知暨申告之辦法・程序等必要事項以大統領令定之。	
第 39 條之 5 (個人情報之保護措施相關特例) 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應限制處理使用者個人情報之人數以達處理範圍最小化。	本條新增。
第 39 條之 6 (個人情報之銷毀相關特例) ①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為保護使用者之個人情報，於使用者未利用情報通信服務已屆滿 1 年，應依大統領令所定為個人情報之銷毀等必要措施。但前揭期間依其他法令或使用者	本條新增。

請求而有不同時，則依該法令或請求。 ②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於前項期間屆滿之 30 日前，應將銷毀個人情報之事實、期間屆滿日暨銷毀個人情報之項目等，依大統領令所定之事項以電子郵件等大統領令所定之辦法告知使用者。	
第 39 條之 7(使用者之權利等相關特例) ①使用者得隨時對情報通信服務提供者撤回個人情報蒐集・利用・提供等同意。 ②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就前項撤回同意、第 35 條閱覽個人情報、第 36 條請求更正等辦法，應相較個人情報蒐集之辦法更易履行。 ③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若遇第 1 項撤回同意時，應立即對已蒐集之個人情報為銷毀等必要措施，使其不得回復及重製，不得遲延。	本條新增。
第 39 條之 8(個人情報利用內容之通知) ①符合大統領令所定基準之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應定期向使用者通知其依第 23 條、第 39 條之 3 規定而蒐集之使用者個人情報之利用內容。但未蒐集通訊方式等得對使用者通知	本條新增。

之個人情報時，不在此限。 ②前項對使用者通知之情報種類、通知週期暨辦法、其他於利用內容通知之必要事項，以大統領令定之。	
第 39 條之 9（損害賠償的保障） ①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應採取保險及加入公債或提撥準備金等必要措施，以履行依第 39 條及第 39 條之 2 的損害賠償責任。 ②前項個人情報處理者的加入對象範圍、基準等必要事項，以大統領令定之。	本條新增。
第 39 條之 10（被洩漏之個人情報的刪除・阻斷） ①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應避免住民登錄號碼、銀行帳戶情報、信用卡情報等用戶之個人情報透過情報通信網向大眾洩漏。 ②雖有前項規定，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收到保護委員會及依大統領令所指定之專門機關請求時，就已洩漏予大眾之個人情報應有刪除・阻斷等必要措施。	本條新增。
第 39 條之 11（國內代理人之指定） ①情報通信服務提供者在國內無住所或營業所，經評估其使用者數量、銷	本條新增。

售額等而符合大統領令所定之基準者，應以書面指定下列各款事項之代理人（以下稱「國內代理人」） 1.根據第 31 條個人情報保護責任者之業務 2.根據第 39 條之 4 通知・申告 3.根據第 63 條第 1 項提出之有關物品・資料等 ②以在國內有住所及營業所者為國內代理人。 ③根據第 1 項指定國內代理人時，應將下列各款事項全部列入依第 30 條所制定之個人情報處理方針 1.國內代理人之姓名（法人指名稱暨代表人的姓名） 2.國內代理人之地址（法人指營業所之所在地）、電話號碼暨電子郵件地址 ④國內代理人於履行第 1 項各款而有違反本法之情形，該違反行為視為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所為。	
第 39 條之 12（國外移轉個人情報的保護） ①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就有關使用者個人情報部分，不得以與本法相違背之內容締結國際契約。	本條新增。

- ②雖有第 17 條第 3 項之規定，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如欲向國外提供（包含查詢）・委託處理・保管（在本條以下稱「移轉」）應取得使用者同意。但第 3 項各款全部已依第 30 條第 2 項依大統領令所定之辦法對使用者公開或透過電子郵件告知時，得不進行個人情報委託處理・保管之同意程序。
- ③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如欲依第 2 項本文取得同意，應事先將下列各款事項全部告知使用者。
- 1.移轉個人情報之項目
 - 2.個人情報被移轉之國家、移轉時間暨移轉方法
 - 3.個人情報之移轉接收者之姓名（法人為該法人之名稱暨情報管理責任者之通訊方式）
 - 4.個人情報者接收者對個人情報利用目的及保有・利用期間
- ④情報通信服務提供者依第 2 項本文所定而取得同意並將個人情報移轉至國外時，應依大統領令所定進行保護措施。
- ⑤使用者個人情報之移轉接收者有透過第三國移轉個人情報時，準用第 1

項至第 4 項之規定。於此情形，「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被視為「個人情報之移轉接收者」，「個人情報之移轉接收者」被視為「個人情報在第三國之移轉接收者」。	
第 39 條之 13（互惠主義） 雖符合第 39 條之 12 規定，惟對於限制個人情報向國外轉移之國家之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得依該國標準為相應之限制。但履行條約或其他國際協定所必要，不在此限。	本條新增。
第 39 條之 14（對於放送事業者等之特例） 符合「放送法」第 2 條第 3 款第 1 目至第 5 目及同條第 6 款・第 9 款・第 12 款及第 14 款者（於本條以下稱「放送事業者等」）於處理觀眾之個人情報時，準用情報通信服務提供者適用之規定。於此情況，放送事業者等視為情報通信服務提供者及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觀眾被視為使用者。	本條新增。
第 39 條之 15（課徵金之課徵等相關特例） ①情報通信服務提供者有符合下列各款之一之行為時，保護委員會得依違反行為對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課	本條新增。

賦該相關銷售額百分之三以下之課徵金。 1.違反第 17 條第 1 項・第 2 項・第 18 條第 1 項・第 2 項及第 19 條（包含依第 39 條之 14 規定準用時），有個人情報之利用・提供時 2.違反第 22 條第 6 項（包含依第 39 條之 14 規定準用時）未取得法定代理人同意即蒐集 14 歲以下兒童之個人情報 3.違反第 23 條第 1 項第 1 款（包含依第 39 條之 14 規定準用時）未取得使用者同意即蒐集敏感情報 4.疏於進行第 26 條第 4 項（包含依第 39 條之 14 規定準用時）所定之管理・監督及教育致特別受託者有違反本法規定時 5.未依第 29 條設置措施（樹立內部管理計畫除外）之情形（包含依第 39 條之 14 規定準用時）致使用者之個人情報有遺失・竊取・洩漏・偽造・變造及毀損之情形 6.違反第 39 條之 3 第 1 項（包含依第 39 條之 14 規定準用時）未取得使用者同意即蒐集個人情報時 7.違反第 39 條之 12 第 2 項本文（包	
---	--

含依同條第 5 項準用時) 未取得使用者同意即向國外提供使用者之個人情報 ②根據第 1 項規定被課賦課徵金之情報 通信服務提供者等，有拒絕提出核算銷售額資料或提出虛假資料時，以與該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規模相似之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之財務報表等會計資料及註冊者數暨使用費用等營業現況資料為證據，推定其銷售額。但無銷售額或核算銷售額有困難時，得課賦依大統領令所定之 4 億韓圓以下之課徵金。 ③保護委員會欲依第 1 項課賦課徵金時，應評估下列各款事項。 1.違反行為之內容暨程度 2.違反行為之期間暨次數 3.依違反行為而取得利益之規模 ④第 1 項課徵金經第 3 項評估後核定，該具體之核定基準與核定程序應以大統領令定之。 ⑤根據第 1 項應繳納課徵金而未於繳交期間內繳納者，保護委員會應加徵自繳納期間屆滿次日起算課徵金之百分之六年利率之滯納金。 ⑥根據第 1 項應繳納課徵金者有未於繳	
---	--

交期間內繳納之情形，保護委員會應定期限催繳，如於該指定期限內仍未繳納課徵金及第 5 項之滯納金，則依國稅滯納處分案例徵收。 ⑦有法院判決等事由而有返還第 1 項所課賦之課徵金時，自繳納課徵金之日起至退還當日止之期間內，應評估金融公司之存款利率等，依大統領令定之利率計算並返還滯納金。 ⑧雖符合第 7 項之規定，惟根據法院判決取消該課賦課徵金處分，而判決理由中有課賦新的課徵金時，以當初已繳納之課徵金扣抵新的課徵金，並僅就剩餘額計算返還滯納金併予返還。	
第 7 章 個人情報紛爭調停委員會	舊法「個人情報紛爭調停委員會」原規定於第 6 章，配合新法增訂「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之處理個人情報等特例」章節，因此原章節移列第 7 章。
第 8 章 個人情報團體訴訟	舊法「個人情報團體訴訟」原規定於第 7 章，配合新法增訂章節而移列第 8 章。
第 9 章 補則	舊法「補則」原規定於第 8 章，配合新法增訂章節而移列第 9 章。
第 58 條之 2（適用除外）	本條新增。

以合理之時間・費用・技術予以評估，當使用其他情報也無法識別個人之情報，即不適用本法。	
第 60 條（秘密維持等） 現在或曾經從事下列各款業務者，不得對他人漏洩職務上已知之秘密或以職務外之目的利用該秘密。但其他法律有特別規定時不在此限。 1.第 7 條之 8 及第 7 條之 9 所定之保護委員會之業務 1 之 2.第 32 條之 2 所定個人情報保護認證之業務 2.第 33 條所定之影響評價業務 3.第 40 條所定之紛爭調停委員會之紛爭調停業務	1. 第 1 款舊法原規定為「第 8 條」，修正為「第 7 之 8 款及第 7 之 9 款」。 2. 新增第 1 之 2 款。
第 61 條（意見提出暨改善勸告） ①保護委員會如認為法令或條例之內容對個人情報保護有影響而必須進行審議・議決，得對關係機關提出意見。 ②保護委員會如認定為保護個人情報所必要，得對個人情報處理者就個人情報處理實態勸告改善。於此情形，被勸告之個人情報處理者應誠摯地努力執行該等勸告，並將措施結果告知保護委員會。	1. 第 1 項除舊法原屬行政安全部部長職權事項，修正為保護委員會職掌外；並將舊法「行政安全部部長如認為法令或條例之內容對個人情報保護有影響之必須，得經保護委員會審議或議決通過後，對關係機關提出意見」，修正為「保護委員會如認為法令或條例之內容對個人情報保護有影響而必須進行審

③相關中央行政機關首長如認定為保護個人情報所必要，依所適用法律得對個人情報處理者就個人情報處理實態勸告改善。於此情形，被勸告之個人情報處理者應誠摯地努力執行該等勸告，並將措施結果告知相關中央行政機關首長。 ④中央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國會、法院、憲法裁判所、中央選舉管理委員會，得對其等所屬機關暨所屬公共機關就個人情報保護提出相關意見或指導・查檢。	議・議決，得對關係機關提出意見」。 2. 第 2 項前段及後段舊法原屬行政安全部部長職權事項，修正為保護委員會職掌。
第 63 條（資料提出要求暨稽查） ①個人情報處理者符合下列各款情形之一者，保護委員會得要求其提出相關物品・書類等資料。 1.發覺有違反本法所定之事項或得知有嫌疑之時 2.接獲違反本法之申告或陳情時 3.其他為保護情報當事人之個人情報所必要以大統領令定之事項 ②若個人情報處理者未依前項提出資料或被證實有違反本法時，保護委員會應使所屬公務員得出入該個人情報處理者暨與違法事實有關人員之事務所或工作場所以調查業務狀	1. 第 1 項、第 2 項、第 4 項至第 7 項等舊法原屬行政安全部部長職權事項，修正為保護委員會職掌。 2. 新增第 8 項及第 9 項。

況、帳簿或書類等。於此情形下，執行調查之公務員應持有並向相關人員出示有調查權之證明。 ③相關中央行政機關首長得依其適用之法律，向個人情報處理者依第 1 項規定要求提出資料，或依第 2 項規定向個人情報處理者暨與違法事實有關人員執行調查。 ④於發覺有違反本法所定之事項或得知有嫌疑之時，保護委員會得向中央行政機關首長（指取得所屬中央行政機關指揮・監督並執行調查權之法人）劃定可對個人情報處理者請求調查之具體範圍，於必要時保護委員會所屬之公務員得提出參與共同調查之請求。於此情形下，除有其他特別事由，被要求之相關中央行政機關首長應遵循之。 ⑤保護委員會得向中央行政機關首長（若法人取得該中央行政機關指揮・監督並執行調查權，則指該法人）請求提出依第 4 項規定之調查結果而對相關聯之個人情報處理者之糾正措施或相關處罰意見。 ⑥就第 4 項及第 5 項之辦法與程序等相關事項以大統領令定之。	
--	--

⑦為預防及有效因應侵害事故，保護委員會得會同相關中央行政機關首長以查檢個人情報保護實態。 ⑧依第 1 項及第 2 項取得或蒐集之文件・資料等，除本法有除外規定，保護委員會與相關中央行政機關首長不得向第 3 方提供或對一般大眾公開。 ⑨保護委員會與相關中央行政機關首長應採行制度性・技術性之補正措施，以確保透過情報通信網接收資料等或蒐集之資料等電子化後，個人情報・營業秘密等不會被流出。	
第 64 條（糾正措施等） ①保護委員會認定有相當證據可判斷個人情報被侵害，且若擱置不理有造成難以回復損害之虞，得對違反本法者（中央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國會、法院、憲法裁判所、中央選舉管理委員會等除外）為下列各款之命令。 1.個人情報侵害行為之中止 2.個人情報處理之暫時性停止 3.其他為個人情報之保護暨侵害預防所必要之措施 ②相關中央行政機關首長認定有相當	第 1 項舊法原屬行政安全部部長職權事項，修正為保護委員會職掌。

證據可判斷個人情報被侵害，且若擱置不理有造成難以回復損害之虞，得依所適用法律對個人情報處理者為第 1 項各款之命令。 ③地方自治團體、國會、法院、憲法裁判所、中央選舉管理委員會，就其等管轄機關暨所管公共機關有違反本法時，得為第 1 項各款之命令。 ④中央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國會、法院、憲法裁判所、中央選舉管理委員會等，有違反本法時，保護委員會得勸告該機關之首長採取第 1 項各款措施。於此情形，受勸告之機關若無特別事由即應遵守。	
第 65 條（告發暨懲戒勸告） ①當個人情報處理者違反本法等與個人情報保護相關之法規，並有相當理由得認定犯罪嫌疑時，保護委員會得將該違反內容向有搜查權之機關告發。 ②有違反本法等與個人情報保護相關法規之行為，並有相當理由足以認定時，保護委員會得勸告個人情報處理者對該有責者（包含代表人暨應負責之職員）予以懲戒。於此情形，受到勸告之人應遵守該勸告並將結果通	第 1 項及第 2 項舊法原屬行政安全部部長職權事項，修正為保護委員會職掌；第 2 項「通報行政安全部部長」修正為「通報保護委員會」。

報保護委員會。 ③相關中央行政機關首長依所適用法律對個人情報處理者依第 1 項告發或得對所管轄機關・團體等之首長依第 2 項提出懲戒勸告。於此情形，受到第 2 項勸告之人應遵守該勸告並將結果通報相關中央行政機關首長。	
第 66 條（結果之公布） ①保護委員會得公布其依第 61 條提出改善勸告、第 64 條為糾正措施命令、第 65 條告發或懲戒勸告及第 75 條課以過怠料之內容及結果。 ②相關中央行政機關首長得依管轄法律之規定，公布前項所定內容。 ③第 1 項及第 2 項之公布辦法、基準暨程序等以大統領令定之。	第 1 項除將舊法原屬行政安全部部長職權事項，修正為保護委員會職掌外；刪除舊法後段「得經保護委員會對影響評價審議或議決通過後公布」。
第 68 條（權限之委任・委託） ①保護委員會或相關中央行政機關首長依本法所定之權限得部分委任或委託予依大統領令所定之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或大統領令所定之專門機關。 ②依第 1 項規定取得保護委員會或相關中央行政機關首長之權限委託或委任之機關，應將受任或受託業務之處理結果通報予保護委員會或相關中	本條各項於舊法原屬行政安全部部長職權事項，修正為保護委員會職掌。

央行政機關首長。 ③保護委員會依第1項所定而將部分權限對專門機關委任或委託時，為該專門機關執行業務所必要得提供經費捐助。	
第69條（罰則適用時之公務員擬制） ①保護委員會中不具公務員身分之委員暨職員，有適用「刑法」及其他法之罰則時，視為公務員。 ②從事保護委員會或相關中央行政機關首長之權限委託業務之關係機關，該機關所屬之職員有適用「刑法」第129條至132條規定時，視為公務員。	本條舊法內容刪除，重新增訂。
第10章 罰則	舊法「罰則」原規定於第9章，配合新法增訂章節而移列第10章。
第71條（罰則） 符合下列各款之一者，處5年以下有期徒刑，併科5千萬韓圀以下罰金。 1.不符第17條第1項第2款並違反同條項第1款，未取得情報當事人同意即將個人情報向第3方提供者，以及明知前揭事由仍接收該個人情報者 2.違反第18條第1項・第2項（包含依第39條之14規定準用時）、第1	1. 第2款增訂「(包含依第39條之14規定準用時)」，及「第28條之2」。 2. 新增第4之2款至第4之6款。

9 條、第 26 條第 5 項、第 27 條第 3 項，以及第 28 條之 2，利用個人情報或向第 3 方提供者，以及明知前揭事由並仍以不正目的接收該個人情報者 3.違反第 23 條第 1 項，處理敏感情報者 4.違反第 24 條第 1 項，處理固有識別情報者 4 之 2.違反第 28 條之 3，處理個人情報或向第 3 方提供者 4 之 3.違反第 28 條之 5 第 1 項，為識別特定個人為目的而進行假名情報處理者 4 之 4.違反第 36 條第 2 項(包含依第 27 條自情報通信服務提供者處受領被移轉之個人情報者，及依第 39 條之 14 規定準用時)，未為更正・刪除等必要措施(包含依第 38 條第 2 項閱覽等要求之必要措施)而利用個人情報或向第 3 方提供之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 4 之 5.違反第 39 條之 3 第 1 項(包含依第 39 條之 14 規定準用時)未取得使用者同意仍蒐集個人情報者 4 之 6.違反第 39 條之 3 第 4 項(包含依	
---	--

第 39 條之 14 規定準用時) 未取得法定代理人同意或未確認法定代理人是否曾經同意而蒐集 14 歲以下兒童之個人情報者 5.違反第 59 條第 2 款洩洩業務上已知悉之個人情報或未經授權即提供給他人利用者，以及明知前揭事由卻仍以營利或不正目的而取得個人情報者 6.違反第 59 條第 3 款有毀損、滅失、變更、偽造或洩漏他人之個人情報	
第 73 條（罰則） 符合下列各款之一者，處 2 年以下有期徒刑，併科 2 千萬韓圓以下罰金。 1.違反第 23 條第 2 項、第 24 條第 3 項、第 25 條第 6 項、第 28 條之 4 第 1 項，以及第 29 條，未設置安全維護必要措施致個人情報遭到遺失・竊取・洩漏・偽造・變造及毀損者 1 之 2.違反第 21 條第 1 項（包含依第 39 條之 14 規定準用時），未銷毀個人情報之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 2.違反第 36 條第 2 項，未設置更正・刪除等必要措施，而持續利用個人情報或向第 3 方提供者 3.違反第 37 條第 2 項，未停止個人情報	1. 第 1 款增訂「第 28 條之 4 第 1 項」。 2. 新增第 1 之 2 款。

的處理而持續利用或向第 3 方提供者	
第 75 條（過怠料） ①有下列各款行為之一者，課賦 5 千萬韓圓以下之過怠料。 1.違反第 15 條第 1 項蒐集個人情報者 2.違反第 22 條第 6 項未取得法定代理人之同意者 3.違反第 25 條第 2 項設置・運作影像情報處理機器者 ②有下列各款行為之一者，課賦 3 千萬韓圓以下之過怠料。 1.違反第 15 條第 2 項、第 17 條第 2 項、第 18 條第 3 項或第 26 條第 3 項未對情報當事人告知應告知事項者 2.違反第 16 條第 3 項或第 22 條第 5 項，拒絕提供商品或服務者 3.違反第 20 條第 1 項或第 2 項，未將同項各款事實告知情報當事人者 4.違反第 21 條第 1 項・第 39 條之 6（包含依第 39 條之 14 規定準用時）未為銷毀個人情報等必要措施者 4 之 2.違反第 24 條之 2 第 1 項處理住民登錄號碼者 4 之 3.違反第 24 條之 2 第 2 項未履行加密措施者	1. 第 2 項第 4 款增訂「第 39 條之 6（包含依第 39 條之 14 規定準用時）」，並將舊法「未為銷毀個人情報」修正為「未為銷毀個人情報等必要措施者」。 2. 第 2 項第 6 款增訂「第 28 條之 4 第 1 項」。 3. 新增第 2 項第 7 之 2 款。 4. 舊法第 2 項第 7 之 2 款修正為第 7 之 3 款。 5. 新增第 2 項第 12 之 2 款至第 2 項第 12 之 8 款。 6. 舊法第 3 項修正為第 4 項。 7. 舊法第 4 項修正為第 5 項。 8. 新增第 4 項第 6 之 2 款。 9. 第 5 項（即舊法第 4 項）前段之第 3 項修正為第 4 項；舊法原屬行政安全部部長職權事項，修正為保護委員會職掌。

5.違反第 24 條之 2 第 3 項未對情報當事人提出得不利用其住民登錄號碼之方法者 6.違反第 23 條第 2 項、第 24 條第 3 項、第 25 條第 6 項、第 28 條之 4 第 1 項或第 29 條未設置安全維護必要措施者 7.違反第 25 條第 1 項設置・運作影像情報處理機器者 7 之 2.違反第 28 條之 5 第 2 項產生識別特定個人之情報卻未中止利用或將該情報毀損・銷毀者 7 之 3.違反第 32 條之 2 第 6 項未曾取得認證或將虛偽之認證內容作為標示或宣傳者 8.違反第 34 條第 1 項未將同項各款事實告知情報當事人者 9.違反第 34 條第 3 項未申告措施結果者 10.違反第 35 條第 3 項限制閱覽或拒絕者 11.違反第 36 條第 2 項未設置更正・刪除等必要措施者 12.違反第 37 條第 4 項未對被停止處理之個人情報為銷毀等必要措施者	
---	--

12 之 2.違反第 39 條之 3 第 3 項（包含依第 39 條之 14 規定準用時）拒絕提供服務者 12 之 3.違反第 39 條之 4 第 1 項（包含依第 39 條之 14 規定準用時）未向使用者・保護委員會暨專門機關通知或申告，或無正當事由於 24 小時經過後始通知或申告者 12 之 4.違反第 39 條之 4 第 3 項未說明或虛偽不實者 12 之 5.違反第 39 條之 7 第 2 項（包含依第 39 條之 14 規定準用時）未提供個人情報之撤回同意・閱覽・更正之辦法者 12 之 6.違反第 39 條之 7 第 3 項（包含依第 39 條之 14 規定準用時及依第 27 條自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處而受領被移轉之個人情報者），未設置必要措施之情報通信服務提供者等 12 之 7.違反第 39 條之 8 第 1 項本文（包含依第 39 條之 14 規定準用時）未通知個人情報之利用內容 12 之 8.違反第 39 條之 12 第 4 項（包	
---	--

含依同條第 5 項規定準用時) 未設置保護措施者 13.未遵從第 64 條第 1 項之糾正命令者 ③有下列各款行為之一者，課賦 2 千萬韓圀以下之過怠料。 1.違反第 39 條之 9 第 1 項未有保險或加入公債、提撥準備金等必要措施者 2.違反第 39 條之 11 第 1 項未指定國內代理人者 3.違反第 39 條之 12 第 2 項但書公開第 39 條之 12 第 3 項各款全部事項者，或未對使用者告知即將使用者之個人情報向國外委託處理・保管者 ④有下列各款行為之一者，課賦 1 千萬韓圀以下之過怠料。 1.違反第 21 條第 3 項未對個人情報分開儲存・管理者 2.違反第 22 條第 1 項至第 4 項之規定取得同意者 3.違反第 25 條第 4 項未設置告示欄等必要措施者 4.違反第 26 條第 1 項委託業務之文書內容未包含同項各款所定者	
---	--

5.違反第 26 條第 2 項未公開委託業務之內容及受託者 6.違反第 27 條第 1 項或第 2 項未對情報當事人告知移轉個人情報之事實 6 之 2.違反第 28 條之 4 第 2 項未製作紀錄並保管者 7.違反第 30 條第 1 項或第 2 項未制定個人情報處理方針或未公開該處理方針者 8.違反第 31 條第 1 項未指定個人情報保護責任者 9.違反第 35 條第 3 項・第 4 項、第 36 條第 2 項・第 4 項或第 37 條第 3 項應告知情報當事人之事項未告知者 10.未依第 63 條第 1 項提出物品・文件等資料或以虛假方式提出者 11.對第 63 條第 2 項所定之出入・查檢有拒絕・妨礙或忌避者 ⑤第 1 項至第 4 項規定之過怠料以大統領令所定由保護委員會與相關中央行政機關首長課賦或徵收。於此情形，相關中央行政機關首長對所管轄領域之個人情報處理者課賦・徵收過怠料。	
--	--

附表

1. 原始情報

個人(原始)情報

姓名	出生年月日	手機號碼	公司電話	住家電話	地址	職業	家庭成員	儲蓄平均餘額	貸款總額
洪吉南	67年1月3日	010-9999-3333	055-747-0088	055-2345-6789	慶尚南道昌原市馬山區 合浦洞123號	國會議員	配偶 兒子1 女兒1	4,567,900元	45,896,789元

2. 錯誤的假名處理

(錯誤的) 假名情報處理

姓名	出生年月日	手機號碼	公司電話	住家電話	地址	職業	家庭成員	儲蓄平均餘額	貸款總額
- *刪除	- *刪除	ajeejkc93 *加密化	- *刪除	- *刪除	慶尚南道昌原市馬山區 *範圍化	國會議員	配偶 兒子1 女兒1	4,567,900元	45,896,789元

3. 正確的假名處理

(正確的) 假名情報處理

姓名	出生年月日	手機號碼	公司電話	住家電話	地址	職業	家庭成員	儲蓄平均餘額	貸款總額
- *刪除	- *刪除	ajeejkc93 *加密化	- *刪除	- *刪除	慶尚南道昌原市馬山區 *範圍化	- *刪除	配偶 兒子1 女兒1	4,567,900元	45,896,789元

4. 匿名情報處理

匿名情報處理

姓名	出生年月日	手機號碼	公司電話	住家電話	地址	職業	家庭成員	儲蓄平均餘額	貸款總額
- *刪除	- *刪除	- *刪除	- *刪除	- *刪除	慶尚南道昌原市馬山區 *範圍化	- *刪除	親屬3名	400萬元 ~500萬元	4000萬元 ~5000萬元

附錄：參考文獻（依韓文字母順序排列）

一、期刊雜誌

1. 강달천 (2020), *데이터 3 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전망*, KISA REPORT, 2020 VOL.2, 14-19.

二、新聞

1. 김지선 기자. (2020.01.09).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보호체계 일원화, EU 적정성 평가 통과 기대. *전자신문*, <https://m.etnews.com/20200109000353> (2020.06.08)
2. 김창섭 기자. (2020.04.01). ‘데이터 3 법’입법 예고...개인정보 활용한 新산업 기대. *SBSCNBC*,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78391> (2020.04.09)
3. 채새롬 기자. (2018.06.17). EU 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평가 위해 법 개정시급.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0615116600017> (2020.06.08)

三、網路資源

1. 개인정보보호정책과. (2020). 데이터 3 법 구체화를 위한 행정입법 신속 추진한다- EU 적정성 결정도 법 시행과 동시에 타결토록 국제협력 강화. Retrieved from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08&nttId=75374 (2020.06.08)
2.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2020). 가명전보, 보다 안전하게 도입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3 법 시행령 입법예고. Retrieved from <https://m.blog.naver.com/mopaspr/2>

21881239138 (2020.06.09)

3.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3). ICT 시사용어 300. Retrieved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87055&cid=59277&categoryId=59280> (2020.06.08)
4. 행정안전위원회. (202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Retrieved from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Y9A1T1D2G5C1D8U1C3A3N5L7A6C1 (2020.06.05)

四、相關法典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2008.02.29)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020.08.04)
3. 방송법(2019.12.10)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0.02.04)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0.02.04)
6.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1986.05.12)
7. 정부조직법(2020.08.11)